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Ⅱ)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Ⅱ)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6. 11



2016. 11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Ⅱ)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6. 11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심층평가
협약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학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구자은(수원대학교 교수)

2016년 1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요 약

I. 추진배경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8조의 4)는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써 해당 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12월 신설된 제도임
 - 그 이전에는 세액공제제도로 시행되다 폐지되기도 했으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해주시기도 했으나 우리사주조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 새롭게 확대 도입됐음
 -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인출시 100% 비과세하는 조항을 신설했음

-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성장과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도입했으나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그러나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0년 217억원 수준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15년(잠정) 547억원으로 연평균 20%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2015년 11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동 과세특례제도를 2015년 임의심층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층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먼저 우리사주조합 관련 기존문헌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들의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기업의 생산성 제

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업재무자료와 함께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의 협조자료를 활용하여 타당성 및 효과성에 관한 주요 분석을 수행함

- 고용노동부의 협조 자료인 우리사주 도입기업 리스트와 KISVALUE의 기업재무자료를 결합하여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도입한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 효과분석을 수행함
-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상기 가용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보완함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의견 및 제도 개선사항을 제언함

II.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황

□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은 2015년말 기준 총 2,832개, 조합원은 약 130만명 수준으로 파악됨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우리사주조합 설립현황을 살펴보면, 조합은 약 664개로 전체 법인의 23.4%의 비중을 차지하며, 조합원 수는 약 93만명, 71.4%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우리사주조합은 2015년말 기준 825개(29.1%)이고, 조합원 수는 12만명(9.2%) 수준임
- 비상장법인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1,343개로 전체 기업 중 47.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조합원 수는 25만명으로 전체의 19.3%에 불과함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성과제고 및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해 출자, 배정, 인출, 배당, 양도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일몰조항 없이 운영되고 있음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아래의 표와 같이 단계별로 매우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음
- 조세지출 규모는 2010년 217억원 수준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15년(잠정) 547억원으로 연평균 20%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약 >

단계	특례 사항				
<p align="center">◆ 출연·출자시 ◆</p>	<p>① 조합원 출자분: 연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조특법 88의4 제1항) ② 법인 출연분: 전액 손비인정(법인세령 제19조 16호) ③ 대주주 등 출연분: 중소기업액의 30% 한도 특례기부금 (조특법 88의4 제13항) ④ 출연 받은 우리사주조합: 증여세 비과세(상증령 제35조 제3항)</p>				
<p align="center">◆ 운용시 지원 ◆</p>	<p>조합보유 자사주 또는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비과세하고,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하는 시점에 소득세 과세(조특법 제88의4 제2항)</p>				
<p align="center">◆ 배정시 처리 ◆</p> <p>(조특법 제88조의4 제3항, 제8항)</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512 857 611 1037">조합원 출연분</td> <td data-bbox="611 857 1370 1037"> ① 소득공제분: 배정시 과세이연 ② 미공제분: [시가의 70% - 취득원가]를 과세 </td> </tr> <tr> <td data-bbox="512 1037 611 1216">법인 출연분</td> <td data-bbox="611 1037 1370 1216"> ① 한도이내: 과세이연 ② 한도초과: [매입가액 - 한도액]를 과세 * 한도: max(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 500만원) </td> </tr> </table>	조합원 출연분	① 소득공제분: 배정시 과세이연 ② 미공제분: [시가의 70% - 취득원가]를 과세	법인 출연분	① 한도이내: 과세이연 ② 한도초과: [매입가액 - 한도액]를 과세 * 한도: max(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 500만원)
조합원 출연분	① 소득공제분: 배정시 과세이연 ② 미공제분: [시가의 70% - 취득원가]를 과세				
법인 출연분	① 한도이내: 과세이연 ② 한도초과: [매입가액 - 한도액]를 과세 * 한도: max(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 500만원)				
<p align="center">◆ 인출시 처리 ◆</p> <p>(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p>	<p>① 배정시 과세이연분: 근로소득세 과세 ②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후 인출: 50% 상당액 비과세 ③ 4년 이상 보유 후 인출: 75% 상당액 비과세 ④ 6년 이상 보유 후 인출: 100% 상당액 비과세 (2016년 시행, 중소기업 우리사주에 한함)</p>				
<p align="center">◆ 배당시 처리 ◆</p> <p>(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p>	<p>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 후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고 액면가액 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함</p>				
<p align="center">◆ 양도시 처리 ◆</p> <p>(조특법 제88조의4 제14항)</p>	<p>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과 증권금융회사 예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함(양도차익 3,000만원 한도)</p>				

자료: 『2016 조세편람』, (주)영화조세통람, 2016

Ⅲ. 주요 쟁점과 평가방향

-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의 성과제고 및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할 때에만 동 과세 특례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시행
 - 고용노동부 협조자료와 기업재무자료를 결합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우리사주제도의 효과를 DID 분석방법으로 수행
 - 만약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기 이전과 이후,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성과제고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세지출을 통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은 확보되기 어려움
 - 국세청 협조자료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 재산형성에 미치는 우리사주제도의 효과를 평가
 - 주식가격이 손쉽게 관측되어지는 상장회사의 경우 우리사주의 실현수익률이 대체적으로 낮다는 것이 기존 연구결과들의 주된 결론임
 - 국세청의 과세대상 인출주식 매입가와 현재가 자료를 협조 받아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별 수익률을 검토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상장유형별 수익률을 검토하고자 함
 - 경영진 및 근로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미치는 효과성 평가를 보완함
 -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 및 제도 개선사항을 평가

- 조세지원제도가 정책목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궁극적 지향점이나 가용한 자료의 한계로 충분히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러한 한계는 조세특례 심층평가가 도입되는 시점부터 우려되었던 바이며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부처들의 협조를 비롯한 설문조사 활용 등으로 다소나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을 깊이 있게 평가하기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주요 특례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함

- (타당성 검토) 기본적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자 함
 - 우리나라 현재의 우리사주조합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동 조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의 성과제고라는 정책목표가 조세정책으로 달성될 수 있는 정책목표인지부터 검토함
 - 또한 수직적 과세형평성 저해와 같은 현재의 제도로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효과성 평가) 동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은 실증분석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고자 함
 - 조세지원제도가 우리사주 실시 기업의 생산성과 해당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가용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앞에서 수행한 우리사주제도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얼마나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수행
 - 실증분석을 통해 확보한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와 과세특례제도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성적으로나마 동 과세특례제도가 우리사주제도의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이상의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함

IV. 타당성 평가

- 현금보다 덜 선호되는 위험자산인 우리사주를 근로자들에게 취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조세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 도입비율은 우리사주제도가 성숙된 유럽국가들과 비교하여 크게 낮지 않지만 지분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
 - 상장기업 중 우리사주제도 도입 기업 비율은 2015년 78% 수준으로 유럽 31개국 평균 92.5%보다 다소 낮은 수준

- 우리사주 지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1.2%로 집계되나 유럽 31개국 평균 2015년 3.0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최근 우리사주 취득가액의 50% 이상이 보장되는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자체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조세정책으로 수행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우리사주제도 자체의 제도적 변화와 함께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몰기한 신설 필요
- 조합원 출연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는 고소득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 소득공제의 경우 출자단계에서는 고소득층의 높은 실효세율에 의해 공제효과가 크지만 배정 및 인출단계에서 일정부분 과세되므로 수직적 형평성 저해효과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평가
- 배당소득 비과세 효과 역시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 계층에 76%가 귀착되지만 연간 배당소득 규모는 300억원 안팎이고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2018년까지 비과세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V. 효과성 평가

- 우리사주제도 도입 기업의 생산성 제고 효과와 근로자 재산형성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남
- DID 분석결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효과는 약 15% 수준으로 추정되고 비상장기업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는 비상장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우리사주의 수익률은 2014년 실현수익 기준 2~4년 보유기간이 가장 크고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높은 상장기업 중심으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
 - 국세청 협조자료에 따르면, 모든 보유기간별 수익률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2~4년 보유의 경우 280%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 시현
 - 2014년 평균 88.3%의 수익률을 시현한 조합원 수는 2,271명에 불과

- 고용노동부 자료를 이용한 경우, 코스피, 코스닥, 기타(비상장)의 우리사주 예상 수익률은 각각 65.9%, 23.7%, 1.5% 수준으로 상장기업 중심으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영진과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 재산형성에 우리사주제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으나 각 단계별 조세지원제도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제도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파악됨
 - 출연, 인출, 배당, 양도시 주요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로 나타남
 -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41명의 조합원 중 34.1%는 ‘과세특례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사주의 수익률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해서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응답(51.2%)이 가장 많았으나 이는 조세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VI. 종합평가의견 및 제도 개선방안

- 대체적으로 현행 특례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인정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 수준의 조세지원을 유지하되 다음을 고려할 필요
 - 동 특례제도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적인 정책수단이므로 우리사주제도 자체의 제도적 보완 등 여건 변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특례제도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도입할 필요
 - 우리사주제도 자체의 수정보완을 통한 환금성 강화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조세지원제도를 통한 우리사주의 세후 수익률 제고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주요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지원제도의 역할은 보조적인 것이므로 우리사주제도 자체의 개선에 따라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기한을 설정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 우리사주제도 자체의 변화 및 여타 저축지원제도의 개편방향을 고려하여 다음의 세부적 제도개선을 고려할 필요
 -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제도의 점진적 정상과세계획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과세로 전환할 필요
 - 제도의 단순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특례제도 활용도 제고
 - 우리사주의 보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전 과생결합상품 거래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필요
 - 비상장기업 주식의 환금성을 확대하기 위해 환매수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을 고려할 필요

목 차

I. 추진 배경	15
II.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황	19
1. 우리사주제도 개요	21
가. 도입목적 및 주요 변천	21
나.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현황	22
2.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요	25
가. 현행 제도	25
나. 과세특례제도 변천	31
다. 조세지출 현황	33
III. 주요 쟁점과 평가방향	35
1. 기존연구 검토	37
가. 국내연구	37
나. 국외연구	43
2. 주요국과의 과세특례제도 비교	45
가. 조합의 이자비용 및 종업원의 차입에 따른 이익	46
나. 출연금에 대한 손비여부 및 한도	47
다. 종업원의 우리사주 저가취득	47
라. 우리사주의 배정시점 과세 여부	48
마. 우리사주의 배당	48
바.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출시점의 과세	48
사. 양도시 과세혜택	49
3. 쟁점사항 및 평가방향	51
가. 기업의 성과제고에 미치는 영향	51

나.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미치는 영향	51
다. 평가 방향	52
IV. 타당성 평가	55
1.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	57
가. 위험자산인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조세지원	57
나. 우리사주제도 도입 현황에 대한 평가	60
2. 수직적 과세형평성 훼손 가능성	63
가. 출연금 소득공제 혜택의 귀착	64
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귀착	66
3. 정책수행방법의 적절성	68
4. 타당성 평가 요약	69
V. 효과성 평가	71
1.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73
가. 우리사주제도 도입 전과 후의 비교	74
나. 우리사주제도 미도입 기업과의 DID 분석	80
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생산성 제고효과	85
2.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미치는 효과	90
가.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른 재산형성 효과	90
나. 설문조사 결과	92
3.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근로자 설문 결과	94
가. 출연단계 소득공제 혜택	94
나. 인출시 비과세 혜택	95
다. 보유시 배당소득 비과세	96
라. 양도시 비과세	97
마. 과세특례제도 활용 못한 이유	98
4. 효과성 평가 요약	98

VI. 종합평가의견 및 제도 개선방안	101
참고문헌	108
부록 I. 주요국의 우리사주 관련 과세특례제도	113
부록 II. 설문조사 개요 및 문항	149

<표 V-15> 보유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96
<표 V-16> 양도시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97
<부표 I-1> 지주회의 성격과 참가자 소득구분	126
<부표 I-2> 영국의 종업원지주제도의 종류 및 특징	131
<부표 I-3> 우리나라의 유형별 인출시 과세	135
<부표 I-4> 우리나라제도 과세특례의 국가별 비교	145

그림 목 차

[그림 II-1] 연도별 우리사주조합 설립 현황	24
[그림 II-2] 연도별 우리사주조합원 현황	25
[그림 IV-1] 상장회사들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비율 국제비교	61
[그림 IV-2] 우리나라 우리사주 지분율 분포: 2014년	63
[그림 V-1]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 변화: 경영진 응답	85
[그림 V-2]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노사관계 변화: 경영진 응답	86
[그림 V-3]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주인의식 제고: 근로자 응답	87
[그림 V-4]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 근로자 응답	89
[그림 V-5]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 재산형성: 근로자 응답	93
[그림 V-6] 출연시 소득공제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94
[그림 V-7] 인출시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95
[그림 V-8] 보유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96
[그림 V-9] 양도시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97
[그림 V-10] 과세특례제도 미활용 이유: 근로자 응답	98
[부도 I-1] 일본의 신탁형종업원지주 인센티브플랜	122

I. 추진 배경



I. 추진 배경

- 2015년부터 당해 일몰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연평균 특례금액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수행하는 의무심층평가 이외에 다음의 경우 임의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분야별 일괄 평가가 필요한 사항,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임의심층평가의 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

- 기획재정부는 2015년 11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2015년 임의심층평가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8조의 4) 제도도 이에 포함
 - 동 제도는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써 해당 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12월 신설된 제도임
 - 그 이전에는 세액공제제도로 시행되다 폐지되기도 했으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해주기도 했으나 우리사주조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확대 도입됐음
 - 최근에는 중소기업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인출 시 100% 비과세하는 조항을 신설했음
 -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성장과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도입했으나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 동 제도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우리사주제도 본연의 정책목적 달성을 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타 기대하지 않았던 부작용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

- 한편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0년 217억원 수준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15년(잠정) 547억원으로 연평균 20%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과제에 대한 심층평가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할 필요
 - 기획재정부 훈령 제187호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업재무자료와 함께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의 협조 자료를 활용하여 일차적 분석을 수행하고 보완적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본 심층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이러한 타당성 분석과 효과성 분석에 앞서 관련 기존문헌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들의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비교함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세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 도입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발생하는지 여부를 국세청 협조자료를 이용하여 평가
 - 고용노동부의 협조자료인 우리사주 도입기업 리스트와 KISVALUE의 기업재무 자료를 결합하여 기업생산성 제고 효과분석을 수행하고 설문조사를 활용
 -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보완적으로 설문조사를 활용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의견 및 제도 개선사항을 제언함

Ⅱ.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황



Ⅱ.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황

1. 우리사주제도 개요

가. 도입목적 및 주요 변천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주식소유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노사협력문화를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자본 및 금융자본의 집중문제를 주식이라는 형태로 분산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음
 - 우리나라는 아래에서보는 바와 같이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시 신규발행 주식의 일정비율을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했음
 - 이후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근로자에게 배정하도록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왔으나 일반적으로 우리사주지분율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19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공적 제도로서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된 이후 몇 차례의 주요 개편이 있었음¹⁾
 - 최초 도입 당시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시 신규발행 주식의 10%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
 - 1972년 말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기업공개촉진법」 제정으로 일반공모의 경우에도 근로자 우선배정을 허용하게 되어 비상장기업의 기업공개 예정인 경우 공개주식의 10%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됨

1) 우리사주지원센터, 『우리사주제도의 이해』, 2014년에서 발췌·요약함

- 1974년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중업 원지주제도 확대 실시 방안’에 따라 다음을 시행
 - ① 비공개법인 유상증자시 10% 우선배정
 - ② 근로자 취득 주식의 관리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 ③ 근로자 취득 주식 의무예탁제 시행(상장주식 1년간, 비공개법인주식 상장 시까지)
 - ④ 저축금액의 5%를 세액공제(연혁법령 「소득세법」 제74조 저축세액공제)
 - 1984년 중업원 지주제도 확산을 위해 우선배정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저축금액 세액공제율도 15%로 확대
 - 당시 「소득세법」 제74조 저축세액공제는 5%의 세액공제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1984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우리사주취득 시의 세액공제를 새로 신설 하여 세액공제율을 15%로 확대하고 두 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은 배제
- 이후 몇 차례의 의무예탁기간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제도 개편이 있었고 2002년 시행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동 제도의 현재 틀을 마련
- 1988년 예탁기간이 3년 경과된 경우 특별인출을 허용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예탁 기간을 1년에서 퇴직시점까지로 확대했으나 1993년 특별인출 2년 및 예탁기간 7년으로 축소한 후 1999년 의무예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음
 - 2002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회사 및 주주의 무상출연과 차입형 우리사주제도가 허용됐으나 우선배정 위주로 운영되어 조합원의 재산손실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2005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도입됐음
 - 2010년 말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수급관계회사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한도를 폐지
 - 2014년 말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했고 2015년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제도 및 대여제도를 도입

나.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현황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

-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1절 우리사주제도, 제32조~제49조에서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에서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의 우선배정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러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설립된 우리사주조합들의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말 기준 우리사주조합은 총 2,832개, 조합원은 약 130만명 수준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우리사주조합 설립현황을 살펴보면, 조합은 약 664개로 전체 법인의 23.4% 비중을 차지하며, 조합원 수는 약 93만명, 71.4%로 높은 비중을 보임

<표 II -1> 우리사주조합 설립현황

(단위: 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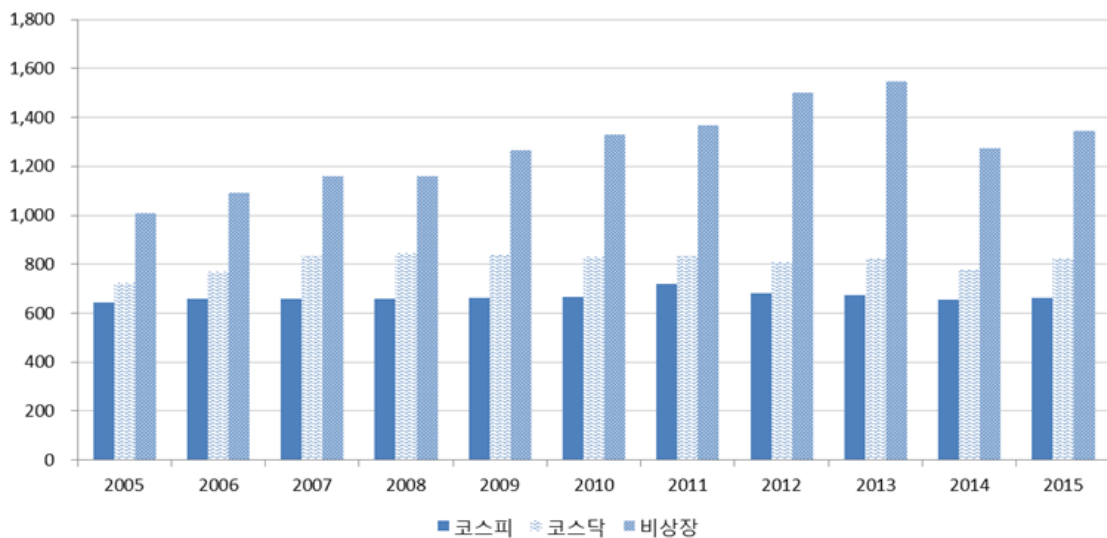
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기타법인		계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조합	조합원
2005년	645 (27.1)	725,084 (70.4)	722 (30.4)	91,955 (8.9)	1,009 (42.5)	212,770 (20.7)	2,376 (100.0)	1,029,809 (100.0)
2006년	657 (26.1)	737,834 (70.8)	768 (30.5)	98,797 (9.5)	1,089 (43.3)	205,787 (19.7)	2,514 (100.0)	1,042,418 (100.0)
2007년	660 (24.9)	759,062 (70.2)	831 (31.4)	108,839 (10.1)	1,159 (43.7)	213,220 (19.7)	2,650 (100.0)	1,081,121 (100.0)
2008년	659 (24.7)	764,490 (70.5)	845 (31.7)	107,187 (9.9)	1,160 (43.5)	213,228 (19.7)	2,664 (100.0)	1,084,905 (100.0)
2009년	664 (24.0)	817,171 (70.5)	837 (30.2)	108,300 (9.3)	1,267 (45.8)	232,994 (20.1)	2,768 (100.0)	1,158,465 (100.0)
2010년	668 (23.6)	849,887 (71.4)	829 (29.3)	109,871 (9.2)	1,329 (47.0)	230,747 (19.4)	2,826 (100.0)	1,190,505 (100.0)
2011년	720 (24.6)	880,876 (72.2)	832 (28.5)	113,002 (9.3)	1,369 (46.9)	226,415 (18.6)	2,921 (100.0)	1,220,293 (100.0)
2012년	680 (22.8)	877,385 (70.4)	805 (27.0)	114,040 (9.2)	1,502 (50.3)	254,470 (20.4)	2,987 (100.0)	1,245,895 (100.0)
2013년	675 (22.2)	898,533 (70.4)	823 (27.0)	118,491 (9.3)	1,545 (50.8)	258,899 (20.3)	3,043 (100.0)	1,275,923 (100.0)
2014년	653 (24.1)	906,717 (72.1)	779 (28.8)	114,444 (9.1)	1,274 (47.1)	235,718 (18.8)	2,706 (100.0)	1,256,879 (100.0)
2015년	664 (23.4)	930,067 (71.4)	825 (29.1)	120,228 (9.2)	1,343 (47.4)	251,698 (19.3)	2,832 (100.0)	1,301,993 (100.0)

자료: 한국증권금융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우리사주조합은 2015년 말 기준 825개(29.1%)이고, 조합원 수는 12만명(9.2%) 수준임
 - 비상장법인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1,343개로 전체 기업 중 47.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조합원 수는 25만명으로 전체의 19.3%에 불과함
- 연도별 우리사주조합 설립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 꾸준히 설립이 증가하다가 2013년 정점을 기록하고 최근에는 조합이 다소 감소하였음
- 우리사주조합은 2005년 2,376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3,043개로 정점을 기록함
 - 2014년 우리사주조합이 2,706개로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2,832개 수준
 - 우리사주조합은 비상장법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 우리사주조합이 감소하는 추세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 II -1] 연도별 우리사주조합 설립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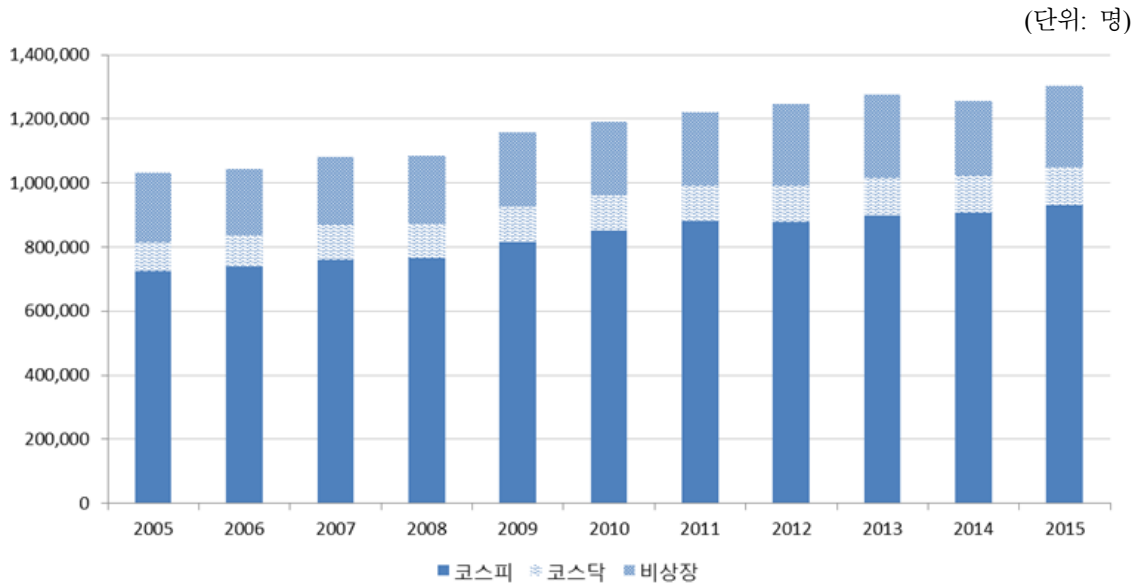


자료: 한국증권금융

- 연도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은 조합과 마찬가지로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2014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05년 우리사주조합원은 1,029,809명이고, 2013년에는 1,275,923명으로 최대를 기록함

- 2014년 우리사주조합원은 1,256,879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다시 1,301,993명으로 증가
- 우리사주조합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그림 II -2] 연도별 우리사주조합원 현황



자료: 한국증권금융

2.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개요

가. 현행 제도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회사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등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지원제도로 구성됨
 -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 출연시 연간 400만원 이내 소득공제,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인출시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
 - 기업은 우리사주조합 출연시 자사주 장부가액·금품은 전액 손비 인정, 우리사주 운영비 지원시 복리후생비로 손비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는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조합원(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함

-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88의4 ①)**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해당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이는 일종의 과세이연으로 추후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에 합산과세됨
 - **조합원의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회사로부터 시가의 70% 해당액보다 저가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시가의 70%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우리사주 취득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 단,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 시에는 취득가액이 시가의 70%와 액면가 중 저가보다 낮을 때 과세함(조특법시행령 §82의4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7)

- **우리사주 배정시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③·④)**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하거나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조특법 §88의4 ③)**
 - **회사, 대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된 우리사주(출연금에 의한 매입 포함)가 조합원 계정에 배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봄(조특법 §88의4 ④)**
 - 이때 한도는 조합원이 해당 회사에서 직전 연도에 받은 연간 급여 총액의 20% 또는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함
 -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된 우리사주는 매입가액 또는 시가의 70%의 가액에 대하여 배정 당시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함

-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조특법 §88의4 ⑨)**
 -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약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 **조합원이 소액주주일 것**
 -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²⁾ 이하일 것**

2)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 비과세(조특법 §88의4 ⑤·⑥)**
 - 조합원이 인출하는 주식 중 취득시 과세되지 아니한 우리사주(과세인출주식)³⁾는 인출시점에 조합원의 소득으로 과세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차등 적용
 - 2년 미만 보유한 우리사주의 인출시 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인출 시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50% 비과세
 -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75% 비과세
 - 중소기업에 한하여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를 비과세하도록 2015년 개정됨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⑬)**
 -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도록 함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손금산입 적용시 한도액: 당해 과세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 × 30%

- **양도소득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⑭)**
 -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면 해당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단, 3천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
 - ② 보유한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 ③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

-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조특법 §88의4 ②)**

3) 소득공제를 받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및 회사 출연주식 중 조합원 배정 시 과세되지 않은 우리사주 등

<표 II -2>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약

단계	특례 사항	
◆ 출연·출자시 ◆	① 조합원 출자분: 연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② 법인 출연분: 전액 손비인정(법인세령 제19조 16호) ③ 대주주 등 출연분: 중소기업의 30% 한도 특례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 제13항) ④ 출연받은 우리사주조합: 증여세 비과세(상증령 제35조 제3항)	
◆ 운용시 지원 ◆	조합보유 자사주 또는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비과세하고,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하는 시점에 소득세 과세(조특법 제88조의4 제2항)	
◆ 배정시 처리 ◆ (조특법 제88조의4 제3항, 제8항)	조합원 출연분	① 소득공제분: 배정시 과세이연 ② 미공제분: [시가의 70% - 취득원가]를 과세
	법인 출연분	① 한도이내: 과세이연 ② 한도초과: [매입가액-한도액]를 과세 * 한도: max(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 500만원)
◆ 인출시 처리 ◆ (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	① 배정시 과세이연분: 근로소득세 과세 ②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후 인출: 50% 상당액 비과세 ③ 4년 이상 보유 후 인출: 75% 상당액 비과세 ④ 6년 이상 보유 후 인출: 100% 상당액 비과세 (2016년 시행, 중소기업 우리사주에 한함)	
◆ 배당시 처리 ◆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 후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고 액면가액 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함	
◆ 양도시 처리 ◆ (조특법 제88조의4 제14항)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과 증권금융회사 예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비과세 함(양도차익 3,000만원 한도)	

자료: 『2016 조세편람』, (주)영화조세통람, 2016

- 매우 복잡한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서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사례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함
 -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1,000만원 출연하고,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1,000만원을 출연하여 총 2,000만원의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이 2,000주를 배정받는 경우를 가정
 - 배정시점에 주당 시가 15,000원의 주식을 10,000원에 저가 취득
 - 주당 5,000원의 이익, 총액 1,000만원 이익
 - 인출시점에 주당 시가 20,0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
 - 양도시점에 대한 주당 시가를 25,000원으로 가정하고 양도소득 과세베이스를 계산할 수 있으나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므로 아래의 표에 제시된 양도시점의 과세베이스는 비상장 법인에 한해 적용됨

〈표 II -3〉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계산 사례

구분	출연시	배정시(시가 15,000원)	인출시(시가 20,000원)			양도차익 (시가 25,000원)
			2년 미만 보유	4년 미만 보유	4년 이상 보유	
조합원	400만원 소득공제	과세없음	400만원 근로소득과세 min(매입가액, 시가)	200만원 과세	100만원 과세	양도차익 1,500만원 과세 (25,000-10,000) *1,000주
	600만원 근로소득과세	저가취득분 30만원 근로소득 과세 (15,000원*70%*600주-600만원)	과세없음	과세없음	과세없음	
회사1 (총급여액 3,000만원)	1,000만원 손비 인정	600만원 과세없음 max(500만원, 총급여의20%)	600만원 근로소득과세 min(매입가액, 시가)	300만원 과세	150만원 과세	양도차익 2,500만원 과세 25,000*1,000주
	1,000만원 손비 인정	한도초과분 400만원 근로소득 과세 max(500만원, 총급여의20%)	과세없음	과세없음	과세없음	
회사2 (총급여액 5,000만원)	1,000만원 손비 인정	1,000만원 과세없음 max(500만원, 총급여의 20%)	1,000만원 근로소득과세 min(매입가액, 시가)	500만원 과세	250만원 과세	양도차익 2,500만원 과세
		한도초과분 없음	-	-	-	-

나. 과세특례제도 변천

- 현재 출연·출자단계에서부터 양도시의 비과세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과세특례제도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과 함께 2001년 말 전면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과거 저축지원세제(소득세법 제74조)가 1974년에 신설되며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저축금액 또는 취득을 위한 대출금 상환을 위한 저축금액에 대해 5% 세액공제하던 제도가 운영된 바 있음⁴⁾
 - 1984년 「감면규제법」 제7조의2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새로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15%로 확대하고 소득세법상 저축지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은 배제
 - 동 세액공제제도는 1995년까지 운용되다가 폐지
 - 또한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특례제도를 2007년까지 운용하기도 했음⁵⁾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를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액면가액 합계액의 500만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조세특례제한법 제93조)
 - 상속세 공제금액에 비하여 금액이 미미하여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였으며 2008년부터 폐지됨

-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2002. 1. 1.부터 새로운 우리사주제도(ESOP)를 도입하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강화함
 - 종업원·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하여 연금소득과세체계와 마찬가지로 「출연시 소득공제·비과세, 인출시 과세」 적용
 - 기업출연분(기업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기업이 직접 출연한 주식)의 배정시 과세이연한도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도초과분은 배정 즉시 과세)⁶⁾
 -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에게 자사주 배정을 위한 단순한 매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운용단계 수익은 비과세
 - 종업원의 자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3년 이상 보유 후 인출하는 자사주는 소득세 최저세율 수준(9%)으로 분리과세

4) 노용진 외(2001), PP. 22~24

5) 노용진 외(2001), PP. 21~22

6) 3년 이상 자사주 보유 후 인출시 소득세 최저세율(9%)로 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과다하게 배분하는 것을 방지

- 우리사주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종업원출연금 소득공제의 한도를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함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의 출연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공제한도금액을 종전의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함(법 제88조의4 제1항 및 동조 제12항 신설)

〈표 II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조특법 제88조의4) 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1. 12.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출연금 소득공제의 한도를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함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 ■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3년 이상 보유 시 인출금액의 50%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 ■ 퇴직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면 해당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2006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3~5년: 50%, 5년 이상: 75% 비과세)
2007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2~4년: 50%, 4년 이상: 75% 비과세)
2016	중소기업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인출시 100% 비과세 조항 신설

- 2004년 이후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일정 보유기간을 만족할 경우 소득세 부담을 경감함
 - 종전에는 당해 자사주에 해당하는 인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되, 9%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7)

- 2004.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금의 50%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시 세부담을 경감함
- 2004년 퇴직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면 해당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함(2004.7.26.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퇴직종업원이 인출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과세형평 차원에서 3천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
 - ② 보유한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 ③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일 것
- 2006년 이후 인출하는 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시 인출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2007년 1월 1일 이후 보유기간을 1년 단축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시 인출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2016년부터 중소기업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한 이후 인출하는 경우 100% 상당액을 비과세

다. 조세지출 현황

- 조세지출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동 제도에 의해 유발되는 조세지출 규모는 아래와 같이 2010년 217억원 수준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15년(잠정) 547억원으로 연평균 20%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7)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84조(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동 조항의 조세지출 규모는 출연단계에서 발생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규모로 파악됨
- 이후 인출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부분 과세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출연단계의 조세지출 규모 추정치는 다소 과다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여타 단계별 조세지출규모는 별도로 추정되고 있지 않아서 동 제도에 의해서 유발되는 조세지출 규모는 아래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클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II -5> 연도별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정	2016년 추정
조세 지출 규모	소득세	217	203	408	263	496	547	581
	법인세	-	-	-	-	-	-	-
	계	217	203	408	263	496	547	581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Ⅲ. 주요 쟁점과 평가방향



Ⅲ. 주요 쟁점과 평가방향

1. 기존연구 검토

가. 국내연구

-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목적대로 기업의 성과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이 관련 국내 기존연구들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

- 노용진(2001)⁸⁾ 연구에서는 10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제의 생산성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사주제 실시기간 동안 1인당 부가가치가 증가한 것을 입증함
 - 1989~1998년 기간의 10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산출을 종속변수로 하는 Cobb-Douglas함수를 기본모형으로 하여 우리사주제의 생산성 효과를 실증분석함
 - 분석 결과 우리사주제 실시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가 대체로 유의하게 양(+)의 효과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액 및 증가율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
 - 우리사주제 실시 더미변수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액에는 유의하지 않지만 그 증가율에는 긍정적인 영향
 - 우리사주제 실시기간에 따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는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의무보유 해제 시점인 7년째에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그 이후에는 생산성이 점차 하락함
 - 추가수익률의 상승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액이나 증가율로 표시된 우리사주제 실시 여부 및 실시기간이 생산성 향상 효과를 높이고 있음
 - 1993년 실시된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 단축이 우리사주제 실시 여부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대효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리사주제 실시기간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산출액 증대효과를 높이고 있음을 보여줌

8) 노용진, 「우리사주제의 생산성 효과: 패널연구」, 『경영학연구』, 제30권 제2호, 2001, pp. 557~581

- 안병룡(2002)⁹⁾ 연구에서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후 생산성이 평균 1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총 875개 상장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재무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기본모형으로 하여 분석
 - 분석결과 경공업은 3.1%, 비제조업은 25.6% 등 평균 17%의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있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생산성 증가는 자본규모가 큰 기업은 자본체화에 의해, 자본규모가 적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노동체화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제도 도입에 따른 경영참가는 매우 미미하였으며 제도의 생산성 증가효과의 지속성은 제도의 실시기간에 따라 하락하였음

- 신범철(2008)¹⁰⁾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시행된 (신)우리사주제의 생산성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2000~2005년 기간 동안 약 3만개(대기업 3,854개, 중소기업 20,4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의 주식소유지분율에 따라 2002년 (신)우리사주제 도입 전후의 경영성과를 비교
 - 변형된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사주제는 전체 분석기간 중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002년 이후 (신)우리사주제의 생산성 제고효과가 기존의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이 우리사주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성과가 극대화하기에는 시행기간이 짧고 상장기업의 차입형 우리사주제도가 「증권거래법」의 규제로 실시되지 못하였던 점 등이 그 이유로 보임

- 박경서·정찬식(2010)¹¹⁾은 종업원지주제도(ESOP) 도입으로 종업원이 주주로서의 경제적 유인을 갖게될 경우 기업경영에 미치는 교차적(interactive) 영향을 분석
 - 1999~2007년까지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9년간 총 5,800여 개 표본에 대하여

9) 안병룡,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생산성 증가효과: 제도 실시전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제경제연구』 제8권 제1호, 2002, pp. 233~257

10) 신범철, 「종업원주식소유제도간 생산성 효과 비교분석」, 『생산성논집』, 제22권 제1호, 2008.2, pp. 119~147.

11) 박경서·정찬식, 「종업원지주제도(ESOP) 도입을 통한 종업원의 영향력 강화가 기업경영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금융연구』, 제24권 제1호, 2010.3, pp. 33~65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실시함

- 실증분석결과 ESOP은 기업의 R&D투자, 매출성장률, 종업원 증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기업 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조 가입률은 이들 변수에 대부분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종업원이 일정수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분산된 소유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종업원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종업원지주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은 주주로서의 경제적 유인보다는 근로자로서의 경제적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인성(2012)¹²⁾ 연구에서는 2003년도의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유무, 종업원 경영참여, 노사간 협력, 정보공유 수준 등과 같은 변수들이 포함된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한국노동연구원(KLL)의 제3차 『사업체 패널조사』(2004.5. 실시, 2003.12월 말 기준으로 조사됨)에서 추출한 704개 사업체를 표본으로 하여 분석
- 분석결과,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사주제 도입 & 근로자 소유지분 미보유기업은 우리사주제 미도입 기업보다 경영성과가 높았으나, 우리사주제 도입 & 근로자 소유지분 보유기업은 미도입 기업보다 경영성과가 낮게 나타남
-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근로자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우리사주제 도입기업의 경영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 소유지분을 보유한 도입 기업이 미도입 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낮게 나타남

□ 안병룡(2006)¹³⁾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제도가 노사관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사주제도가 노사협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장

- 노동부가 2002~2005년까지 파업(근로손실)이 발생한 기업들의 종업원 수, 파업 참가자 수, 파업일수 등을 조사한 데이터¹⁴⁾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우리사주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

12) 원인성, 「우리사주제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2012.2., pp. 591~618.

13) 안병룡, 「우리사주제도의 노사관계 개선효과」, 『증권금융』, 299호, 2006. PP. 3~29.

14) 총 파업사업장 수는 상장기업 204개, 비상장기업 643개, 유한회사형태의 운송회사 271개, 기타 공공기관 226개 포함하여 1,344개이며, 이 중 종업원의 지분취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유한회사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847개 기업이 분석에 활용됨

- 우리사주제도가 파업 발생을 줄이거나 그 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지분이 있는 기업이 지분이 없는 기업에 비해 근로손실률이 적게는 9.4%에서 크게는 56.1%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보임
 - 우리사주 관련 변수가 근로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OLS 분석한 결과, 우리사주 관련 여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예탁지분은 보유한 지분이 클수록 근로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사주 관련 변수가 파업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Probit 분석한 결과, 예탁지분이 적은 기업이 파업을 결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강세희(2011)¹⁵⁾는 종업원의 주식소유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사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
- 상장사협의회 데이터베이스 TS-2000에서 추출¹⁶⁾한 상장법인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2006~2008년 기간 동안 1,768개 표본에 대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수행
 - 분석 결과 우리사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으며 최대주주 지분율이 이러한 관계에 음(-)의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가짐을 확인
- 김대룡·김창식(2013)¹⁷⁾은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근로자의 실현수익률을 검토
- 한국증권금융의 예탁자료를 기반으로 우리사주에 나타나는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과 우리사주의 연간 변동성, 조건부베타, 시가총액, 취득비중 및 차입비중 간의 관계를 살펴봄
 - 실증분석 결과 코스피 상장기업의 우리사주는 위험이 낮은 구조임에도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이 형성된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의 우리사주는 위험이 높은 구조임에도 이에 상응하는 초과수익률은 나타나지 않았음
- 신범철 외(2004)¹⁸⁾ 연구에서는 2002년 이후 시행된 (신)우리사주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15) 강세희, 「종업원 주식소유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011.

16) 종속변수인 우리사주 지분율과 노조조직 여부는 사업보고서에서 직접 추출하여 사용함

17) 김대룡·김창식, 「우리사주 초과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금융지식연구』, 제13권 제1호, 2015, pp. 49~74.

18) 신범철·남상섭·박용석,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산업경제연구소, 2004.11.

-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경영참가, 기업성과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해외 주요국가의 종업원 주식소유제도의 내용 및 현황을 검토함(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일본)
 -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우리사주제도 관리형태를 현행 조합방식에서 신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한 신탁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함
 - 연금형 우리사주제도나 장기 보유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여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도록 유인함
 - 장기 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하여 차입형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여 우리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장기화해서 장기간 보유를 촉진함
 -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상장 및 등록법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종업원이 우리사주 매각시 발생하는 자본손실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함
- 김동배 외(2007)¹⁹⁾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2007년 9월 말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등록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2,604개 모집단 중에서 우리사주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기업 335개와 주식을 예탁하고 있지 않은 기업 169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실태를 조사함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현황, 지배구조, 회사의 무상출연, 스톡옵션형 우리사주, 차입형 우리사주의 정착 수준, 2002년 이후 제도개선이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분석
 - 우선배정시 근로자 개인부담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가 여전히 80% 정도로 지배적이며 회사의 무상출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요구됨
- 신범철 외(2014)²⁰⁾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국과 영국의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개선안을 제시함

19) 김동배·노용진·강병식·송민수,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7.12.

20) 신범철·김영준·어기구,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사)한국생산성학회, 2014.11.

- 기업은 우리사주의 활용성 제한과 출연에 따른 실익 부족 등으로 우리사주제도의 도입과 출연에 소극적이고, 근로자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 및 환매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취득을 기피하고 있음
 - 우리사주조합의 가입요건이 엄격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기반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우리사주의 수익률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운용주체인 조합의 역할이 부족함
 - 우리사주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신탁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 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 세제 및 금융상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우리사주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많이 수행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연구결과를 찾을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길재욱(2000)은 우리사주 취득 후 1년, 2년, 3년간의 수익률이 시장조정모형에 의한 조정을 거치고 난 후 각각 -6.8%, -17.4%, -21.7%에 달하는 음(-)의 수익률이 실현되는 것으로 분석
 - 장우석·장우진(2007)은 우선배정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의 경우 유상증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정보효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익률이 실현되지만 시장매입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의 경우 장기 초과수익률을 얻게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
 - 김형태·송홍선·이효섭(2012)은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실현수익률이 음(-)인 기업의 비중이 55%에 달하고 있음을 보이며 근로자들이 의무예탁 기간 동안 주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적극적인 재산형성수단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
 - 김대룡·김창식(2015)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우리사주는 시장위험보다 다소 낮은 위험구조임에도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이 형성되는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의 우리사주는 시장위험보다 큰 위험구조를 형성함에도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음
- 송홍선 외(2014)²¹⁾ 연구에서는 비상장·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함

21) 송홍선·이효섭·장정모, 『비상장·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2014.11.

- 우리나라의 우리사주 도입률은 상장법인은 80%, 비상장법인은 0.3%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취득자금은 대부분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통한 차입을 통해 조달, 우리사주 보유기간도 단기에 그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의 해외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비상장주식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한 근로자기업 인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지분 매각시 양도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
 - 우리사주 취득자금 연계 중소기업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
 - 비상장기업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환매수를 요청할 경우 회사가 적정 가격으로 되사주도록 의무화하여 환매수제도를 활성화
 -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기금에 적립하여 우리사주를 매입하는 우리사주저축제도를 도입
 - 우리사주와 퇴직연금을 세계 측면에서 연계운영하여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

나. 국외연구

- 종업원의 주식소유는 종업원 사이의 상호 감시·감독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Jones & Kato (1995)²²⁾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ESOP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ESOP은 4~5% 생산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 증대효과는 제도 도입 즉시 나타나지 않고 3~4년 경과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됨
- Conyon & Freeman(2004)²³⁾의 연구에서는 1995~98년 기간 동안 영국의 299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APS와 CSOP 각각에 대해 18.9%와 12.2%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견되었으며, SAYE에 대해서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 영국 Oxera Report(2007)²⁴⁾에 따르면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의 생산성을 평균적으로 약 2.5%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형별로 살펴보면 SAYE는 4.1%로 유의미하게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CSOP와 APS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

22) Jones, Derek C. & Takao Kato, "The Productivity Effects of Employee Stock-Ownership Plans and Bonus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85, pp. 391~414, 1995.

23) Conyon MJ, Freeman RB., "Seeking a Premier Economy: The Economic Effects of British Economic Reforms, 1980-200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09146, 2004.

24) Oxera, "Tax advantaged employee share schemes: Analysis of productivity effects. Report 1: Productivity Measured Using Turnover," *HM Revenue and Customs Research Report 33*, January 2007.

- Kaarsemaker et al.(2009)²⁵⁾은 과거 40년에 걸친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 우리사주제도는 대부분 이직률 저하, 몰입 강화, 동기부여, 만족도 향상과 같은 근로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침
 - Pendleton & Robinson(2010)²⁶⁾은 2004년 영국의 WERS(Workplace Employment Relations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다양한 형태의 ESOP의 도입과 참여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
- 우리사주제에서는 근로자들의 무임승차(free rider)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성과가 1/N일 때 N이 커질수록 업무태만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 효과가 없음
- 1987년 미국 GAO(General Accounting Office)의 연구²⁷⁾에서는 1976~1979년 과세 기간 중 ESOPs을 시행하는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ESOP의 도입 그 자체만으로는 수익률 또는 노동생산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Blasi et al.(1996)²⁸⁾ 연구에서는 1990/91년 기간 동안 종업원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결과 종업원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수가 더 높았으며 중소기업에서 ESOP의 기업경영성과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종업원의 주식소유가 무임승차문제(free rider problem)을 야기하여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Kim and Ouimet(2014)²⁹⁾은 지분율이 5% 미만인 소규모 ESOPs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의 생산성 개선 효과가 크게 관측되나 그 이상의 경우 무임승차문제를 완화할 수 없어서 생산성 개선효과는 크게 약화되고 대규모 기업들

25) E. Kaarsemaker, A. Pendleton, and E. Poutsma, "Employee Share Ownership Plans: A Review," The York Management School Working Paper No. 44 University of York, 2009

26) A. Pendleton & A. Robinson, "Employee Stock Ownership, Involvement and Productivity: An Interaction-Based Approach,"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64, No 1, 2010, pp.3-29.

27) US GAO,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Little Evidence of Effects on Corporate Performance," Washington DC, 1987.

28) Blasi, J. B., Conte, M. & Kruse, D., "Employee stock ownership and corporate performance among public compani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0, No. 1, pp. 60-79, 1996.

29) Kim, E. H. and Ouimet, P., "Broad-based Employee Stock Ownership: Motives and Outcomes," *Journal of Finance*, forthcoming, 2014.

의 경우 ESOPs에 의한 생산성 개선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

- 미국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기업의 규모는 종업원 수 기준 상위 25%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대규모 기업으로 정의
- 우리사주 지분율이 5% 이상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생산성 개선효과가 매우 약화되고 지분율에 상관없이 대규모기업의 경우 생산성 개선효과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결과는 시사점이 큼
- 우리사주 지분율이 높거나 고용규모가 큰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전체 생산성 향상 정도를 좌우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유인이 확대되기 때문임

□ 그 밖에 종업원 주식소유는 기업의 존속과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함

- Blair et al.(2000)³⁰⁾ 연구에서는 산업과 회사의 크기에 따라 ESOP 참여기업과 비참여 기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상장기업 중 종업원이 최소 22%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들이 ESOP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보다 조직 면에서 더 안정적이며 ESOP 참여기업의 도산율도 낮게 나타남

2. 주요국과의 과세특례제도 비교

□ 부록 I에 제시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의 우리사주 관련 과세특례제도를 거래과정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우리나라는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자금의 차입부터 출연, 저가취득, 배정, 배당, 인출, 양도 각 단계에 걸쳐 과세특례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은 우리사주 취득제도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과세이연되었다가 실현되는 시점인 인출, 배당, 양도시점에 과세됨
- 일본은 종업원의 입장에서 우리사주의 취득이라고 하여도 특별한 과세특례는 없이 배당, 양도시점에 과세됨

30) Blair, Margaret M., Douglas L. Kruse & Joseph R. Blasi, "Employee Ownership: An Unstable Form or a Stabilizing Force," Business, Economics and Regulatory Policy Working Paper No.142146, 2000.

- 영국은 종업원의 입장에서 배당, 인출, 양도시점에 과세되지만, 배당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인출은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 제외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과세혜택을 주기 위하여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2,000파운드까지의 주식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50,000파운드까지의 주식에 대해 자본이득세 비과세함
- 캐나다는 무상 또는 저리 차입 취득시 과세하지만 2,000캐나다달러까지는 세액 공제하고, 배당 및 양도시 과세함
- 호주는 혜택의 종류를 신설기업혜택, 과세후공제혜택, 과세이연혜택으로 나누어, 취득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거나 취득시 과세소득에 포함한 후 소득공제하거나,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가. 조합의 이자비용 및 종업원의 차입에 따른 이익

-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의 처리
 - 우리나라는 우리사주조합이 부담한 이자비용에 대해 조합의 비용으로 보고 회사의 손금으로 보지 않으며 보증수수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지급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회사가 수취할 수 없음
 - 미국은 차입형 ESOP에서 신탁의 차입금 및 이자비용의 상환을 위한 회사의 출연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의 신탁형 종업원지주 인센티브플랜은 신탁의 이자비용을 회사의 손금으로 하며, 보증수수료의 경우 신탁의 수익과 비용 모두를 회사의 계산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상쇄되어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음
 - 영국, 캐나다, 호주는 우리사주를 종업원이 취득할 때 조합(신탁)이 직접 차입하는 형태가 아니거나 차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가 종업원에게 무상 혹은 저가로 대여하는 경우에 종업원에게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과세
 - 우리나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캐나다는 별도의 과세혜택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대상에 포함됨
 - 미국, 영국, 호주는 종업원이 차입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파악되어 무상 혹은 저리대출에 대한 종업원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나. 출연금에 대한 손비여부 및 한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공제여부
 - 우리나라는 회사와 종업원 모두 조합에 출연할 수 있으며, 회사가 조합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종업원이 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은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함
 - 미국과 영국의 경우 회사만 조합에 출연이 가능하며, 영국은 한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데 반하여, 미국은 종업원 총급여액의 25%를 한도로 손금인정함
 - 일본은 종업원만 조합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하며, 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는 존재하지 않음
 -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는 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이 우리사주를 구입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파악됨

다. 종업원의 우리사주 저가취득

- 종업원이 회사나 조합으로부터 우리사주를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취득함에 따른 이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이연과 과세소득의 종류에 따른 과세상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출연금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사주의 저가취득에 대해 과세하며 시가의 70%와 취득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 캐나다의 경우에도 저가취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며 캐나다의 지방세 중에 ESOP와 EVCC를 합하여 최대 2,000캐나다달러까지 취득시점에 세액공제함
 - 호주의 과세특례 중 과세후 공제혜택(taxed-upfront)은 취득시점을 과세시점으로 보아 저가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되 1,000호주달러를 소득공제함
 - 영국과 호주의 과세특례 중 신설기업(start-up)혜택 및 과세이연(taxed-deferred)혜택은 취득시점을 과세시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가취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미국은 퇴직시점에 주식취득이 가능하므로 퇴직으로 인한 인출까지 과세는 발생하지 않음
 - 일본은 우리사주의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전체적인 저가취득 중 개별 종업원의 지분만큼 저가취득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과세하지는 않음

라. 우리사주의 배정시점 과세 여부

-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조합으로부터 배정받는 때 종업원에 대한 과세
 - 우리나라는 조합원이 출연한 출연금에 대한 주식배정분은 과세하지 않고, 회사 출연금에 대한 주식배정분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 미국과 영국은 모두 회사만 출연이 가능하므로 회사 출연금에 대한 주식배정분에 해당하고 배정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않음
 - 일본, 캐나다, 호주의 경우 별도의 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마. 우리사주의 배당

- 종업원이나 조합이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 우리나라는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종업원이 소액주주이며 보유주식액면가액이 1천 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당소득을 비과세함
 - 영국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나 현금배당 중 우리사주의 추가구입에 사용된 배당에 한하여 과세하지 않음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는 모두 배당에 대한 특례가 없이 과세됨

바.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출시점의 과세

-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에서 주식을 인출하거나 주식과 교환으로 인출금을 수취하는 경우 과세
 - 우리나라는 인출시 과세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6년 이상 보유시 과세 제외함
 - 미국은 인출시 과세됨
 - 영국은 현금으로 인출시 과세되며, 주식은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여 5년 이상으로 보유 후 인출시 과세에서 제외함
 - 일본의 전조합원방식은 인출시 과세되고, 신탁형 종업원지주 인센티브플랜은 인출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과세됨
 - 캐나다와 호주는 별도의 인출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사. 양도시 과세혜택

-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우리나라는 퇴직을 원인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보유기간 1년 이상의 소액 우리사주에 대하여 과세 제외함
 - 일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별도의 혜택없이 과세됨
 - 호주의 신설기업(start-up)혜택에 따르면 양도시 과세는 되지만, 취득시 할인된 부분은 3년 이상 보유시 과세되지 않고, 과세후 공제(taxed-upfront)혜택은 양도 이전 12개월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자본이득세의 50%를 감면함
 - 영국의 SIP제도에서 SIP에서 인출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고 인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며, 종업원지주인 종업원은 저가취득이익 중 2,000파운드, 양도차익 중 50,000파운드는 과세하지 않음

〈표 III-1〉 우리사주제도 관련 과세특례의 국가별 비교

	출연	배정(저가·무상취득)	인출	배당	양도
한국	종업원 출연금: 한도내 소득공제 범인 출연금: 전액 손비인정	저가취득분 근로소득과세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과세	소액주주 등 배당 비과세	퇴직시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미국	전액 회사 출연 총급여액의 25% 한도내 소득공제	과세 없음	주식인출: 과세없음 현금인출: 자본이득 과세	소액 과세 제외	자본이득 과세 조합 양도시 과세없음
일본	전액 회사 출연	과세 없음	진조합원방식: 인출시 일시소득으로 과세 그 외: 과세없음	과세대상	자본이득 과세 취득원가는 인출시 시가
영국	SIP	과세 없음	5년 이상 보유 과세없음	3년 이상 보유시 과세 없음	자본이득 과세(일정액 차감)
	SAYE	대상 아님	옵션행사이의 과세 없음		자본이득 과세
	CSOP	대상 아님	기간요건 충족시 옵션행사이의 비과세		자본이득 과세없음
	EMI	대상 아님	옵션행사이의 과세 없음		자본이득 과세
호주	캐나다	대상 아님	대상 아님	과세대상	자본이득 과세(일정액 차감)
	Start-up	대상 아님	대상 아님	과세대상	자본이득 과세 3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Taxed-upfront	대상 아님	대상 아님		자본이득 과세(50% 공제)
Taxed-deferred	대상 아님	대상 아님	자본이득 과세(50% 공제)		

3. 쟁점사항 및 평가방향

가. 기업의 성과제고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의 성과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는 반면 해외 연구의 경우 우리사주제도에 의한 기업의 성과제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상존
 - 정부의 조세지원을 통해 장려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의 정책목표 중 하나인 기업의 성과제고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만약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기 이전과 이후, 우리사주 제도를 시행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성과제고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세지출을 통한 정부의 지원 타당성은 확보되기 어려움

- 국내외 연구 중 우리사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기업의 성과를 직접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음
 - 주요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근로자를 위한 것이나 과세특례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생산성 향상 정도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임
 - 기존 연구들에서 처럼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를 비교하고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기업 성과를 비교하는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됨
 - KISVAULE의 기업재무자료와 고용노동부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운용 기업리스트를 결합하여 분석 DB를 구축함

나.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미치는 영향

- 우리사주제도의 도입목적 중 하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나 이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국내외 기존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비상장기업들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함
 - 주식가격이 손쉽게 관측되는 상장회사의 경우 우리사주의 실현수익률이 대체적으로 낮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주된 결론임

-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취득단계부터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및 양도시 비과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인센티브가 우리사주 장기보유 및 근로자 재산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는 찾아볼 수 없음
 - 기존 연구결과들은 근로자·기업의 인식부족 및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 미흡으로 우리사주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 기존 연구결과처럼 우리사주의 실현수익률이 저조한 경우 조세지원제도로 보유기간을 늘리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대상 인출주식 매입가와 현재가 자료를 협조받아서 우리사주의 보유기간별 수익률을 검토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상장유형별 수익률을 검토하고자 함
 - 그러나 이러한 분석의 한계를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우리사주제도와 과세특례제도가 미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함

다. 평가 방향

- 조세지원제도가 정책목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조세특례심층평가의 궁극적 지향점이나 가용한 자료의 한계로 충분히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이러한 한계는 조세특례 심층평가가 도입되는 시점부터 우려되었던 바이며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부처들의 협조를 비롯한 설문조사 활용 등으로 다소나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깊이 있게 평가하기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주요 특례제도에 대한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함
 - (타당성 검토) 기본적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자 함

- 우리나라 현재의 우리사주조합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동 조합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의 성과제고라는 정책목표가 조세정책으로 달성될 수 있는 정책목표인지부터 검토함
- 또한 수직적 과세형평성 저해와 같은 현재의 제도로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효과성 평가) 동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은 실증분석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고자 함
 - 조세지원제도가 우리사주 실시 기업의 생산성과 해당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가용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앞에서 수행한 우리사주제도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얼마나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긍정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수행
 - 실증분석을 통해 확보한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와 과세특례제도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성적으로나마 동 과세특례제도가 우리사주제도의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이상의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동 심층평가를 마치고자 함

IV. 타당성 평가



IV. 타당성 평가

1.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

가. 위험자산인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조세지원

- 기업의 성과제고와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자산인 주식을 근로자에게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금보상보다 덜 선호됨
 -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통상적인 임금 이외에 이익공유(profit sharing)형태의 성과급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주식 등과 같은 위험자산보다는 현금이 선호됨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와 회사의 이익공유제도의 하나로서 위험자산인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길게는 8년 동안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은 현금보상을 선호할 유인이 더 큼
 -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의무예탁기간이 1년이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4-8년의 기간 동안 출연자와 협의하여 예탁
 - 이외에 대부분의 경우 1년의 의무예탁기간이 규정되어 있음
 -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특히 비상장법인 주식의 환금성은 상장법인의 경우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회사의 부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가치는 휴지조각이 되므로 근로자들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유인은 매우 낮아짐
 - 이러한 이유로 우리사주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법인의 조합원 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상장법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회사가 환매수하는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선언적 규정임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① 국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려는 경우 환금(換金)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하는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2. 「상법」 제342조의 예에 따른 처분
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의 소각(消却)

□ 예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을 위해 최소 우리사주 취득가액의 50% 이상을 보전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법조항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의2)이 최근 신설

- 신규 상장기업의 초기 큰 폭의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우리사주 취득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비용부담은 임의조항임
- 과거 유상증자 또는 신규상장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한 근로자 손실사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동 제도가 신설됐음

□ 또한 우리사주 예탁주식의 대여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우리사주 보유 근로자에게 대여수수료 발생을 통한 금전적 혜택을 주는 제도도 신설(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의3)

- 동 제도는 상기 손실보전거래 허용 규정과 함께 2015년 7월 20일에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우리사주제도 근거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의 최근 개정사항은 우리사주의 취득으로 인한 근로자가 직면한 위험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근로자의 위험부담을 축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기본적으로 조세지원제도는 내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서 우리사주를 취득한 근로자 중 자본이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서 근로자가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과세이연을 통해 세부담을 축소해주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는 목적으로 판단됨

- 회사와 대주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출연금 및 기부금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 한국증권금융의 협조자료에 따르면, 2010~2015년의 기간 동안 회사나 대주주의 무상출연을 통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 비중은 코스피 상장법인 평균 10.7%, 코스닥 상장법인 평균 11.3%, 비상장법인 평균 6.2% 수준에 불과함

- 이후 인출, 보유 및 양도 단계에서 일정한 조세지원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이는 자본이득이 발생한 근로자들의 세후 수익률을 제고해주는 제도로서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장려하기 위해서 취득시 소득공제해준 부분에 대한 인출단계 과세시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확대됨

- 우리사주의 지속 보유 여부는 해당 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전망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인출시 비과세혜택은 보조적인 인센티브에 불과

- 인출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던 우리사주를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함

- 보유단계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어서 농협 등 조합 출자에 대한 배당소득과의 수평적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배당소득은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양도단계의 경우 양도차액 3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조항이 있으나 현행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이 제한적인 조항으로 판단됨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해당 조항은 「조특법」 ‘제2장 직접국세,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속해 있으므로 동 지원제도의 목적은 저축지원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반적인 원금보장형 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는 달리 동 제도의 대상은 위험자산을 통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고 있어서 여타 저축지원보다 더 큰 조세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이는 우리사주제도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현금보다 덜 선호되는 주식을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로서 조세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뒷받침
- 근본적으로 주식보유에 따른 위험을 조세지원제도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형의 소득과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손실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현행 우리나라 소득과세 체계에서는 구현되기 어려움
 - 현재 부동산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으나 손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통산할 수 없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본이득과세 도입방안의 경우에도 대부분 같은 유형의 위험자산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수준이나 자본이득과세의 도입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

나. 우리사주제도 도입 현황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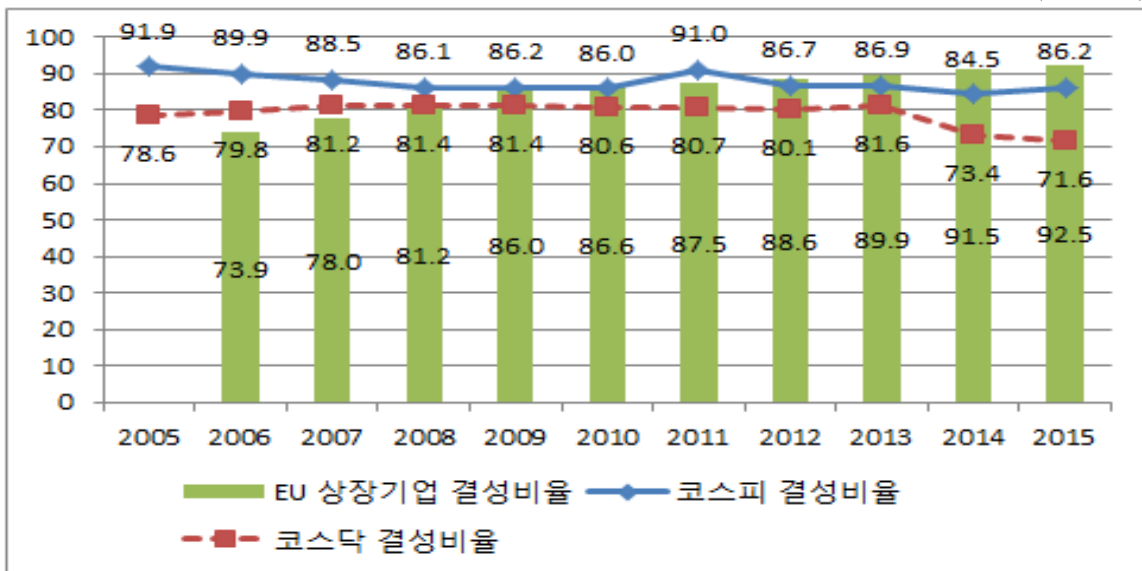
-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장기업들 중 대다수가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31개 EU 국가들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제도 도입 회사 비율은 상당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05년 이후 전체 상장회사 수 대비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 기업들의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5년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비율은 91.9%로 나타났으나 소폭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2011년 91%로 높아진 이후 다시 소폭 감소추이를 나타냄
 - 2005년 코스피 상장기업 수는 702개에서 2011년 791개로 증가한 이후 감소추이가 지속되며 2015년 770개로 나타남
 - 한편 코스피 상장기업 중 우리사주조합 결성 기업 수는 2005년 645개에서 2011년 720개로 확대된 이후 감소추이가 지속되어 2015년 664개에 그침
 - 2015년 코스피 상장 우리사주조합 결성 기업 수는 전년 대비 11개 증가한 수준
- 한편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비율은 2005년 이후 2013년까지 84%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14년 78.1%, 2015년 77.5%로 축소

- 이러한 최근의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비율 감소추이는 2013년 823개이던 우리사주조합 결성 코스닥 상장기업의 수가 2014년 779개로 감소한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2013년 1,009개에서 2014년 1,061개로 증가한 결과임
- 또한 2015년 결성비율의 축소는 우리사주조합 결성 기업 수의 증가세보다 코스닥 상장기업 수 증가세가 더 큰 것에 기인함
 - 2015년 우리사주조합 결성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825개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나 같은 해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1,152개로 전년 대비 8.8% 증가
- 2015년 현재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 비상장법인의 수는 1,343개로 2015년 국세 통계연보상 2014년 가동 법인 수 623,411개 대비 0.2% 수준에 불과한 상황
 - 이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환금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IPO가 예상되는 우량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판단됨

□ European Federation of Employee Share Ownership(2015)에 따르면, 31개 유럽 국가들 중 ESOP 제도를 갖고 있는 상장기업들의 비중은 2006년 73.9%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 92.5%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 상장회사들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비율 국제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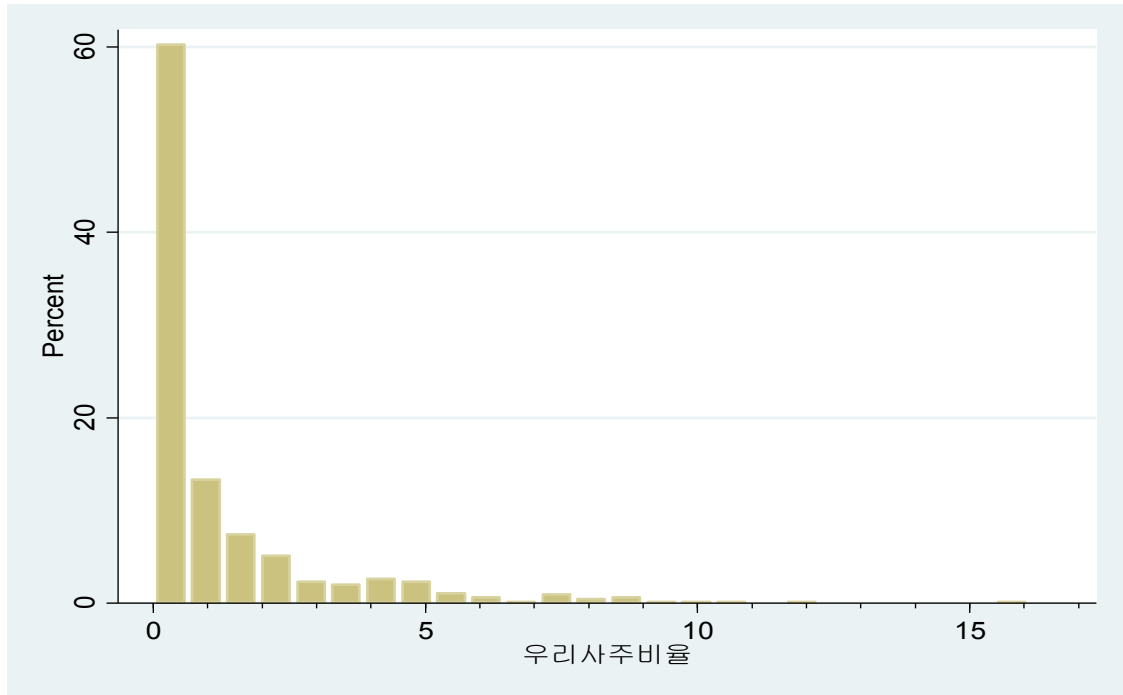


자료: 1. 코스피 및 코스닥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기업수, 한국증권금융
 2.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수, 한국증권거래소
 3. EU 상장기업 결성비율, European Federation of Employee Share Ownership(2015)

-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추세적으로 EU국가의 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제도 도입기업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2011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었음
 - EU 국가들의 우리사주제도의 형태가 우리나라와 같이 조합을 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사주제도를 갖고 있는 상장기업들이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EU 상장기업들의 결성비율로 나타냄
- 이러한 제도 도입 비율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사주의 지분율이 어떠한 분포를 갖고 있는가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2014년 우리사주 지분율은 매우 낮은 1.2%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EU 기업들의 우리사주 지분율은 2015년 평균 3.09% 수준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개별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2014년 우리사주 지분율을 파악한 결과 2,085개 상장기업들 중 31%에 해당하는 646개의 기업들만이 0보다 큰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기업들의 평균 우리사주 지분율은 1.15% 수준으로 나타나고 중위값은 0.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우리사주제도 도입 기업들의 지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0.5% 미만의 우리사주 지분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60%에 달함
 - 그러나 European Federation of Employee Share Ownership(2015)에 따르면 31개 유럽 상장기업들의 평균 우리사주 지분율은 2015년 3.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현황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비율은 국제수준에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사주 지분율은 유럽국가들의 상장기업 우리사주 지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EFES(2015)에서는 우리사주제도 도입 비상장기업의 비율이나 지분율은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비교하기 어려우나 환금성이 높은 상장회사들의 지분율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IV-2] 우리나라 우리사주 지분율 분포: 2014년

(단위: %)



- 유럽 국가들의 비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 지분율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와 유럽 상장기업들의 지분율 차이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추정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의무조항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제도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의무조항임

2. 수직적 과세형평성 훼손 가능성

- 우리사주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성과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적 계약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기업의 성과제고 및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인 법인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더욱 크게 귀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직적 과세형평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음

- 특히 상장 대기업의 우리사주의 경우 환금성도 높고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평균적으로 높아서 보다 많은 금액을 출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여러 혜택이 고소득층에 귀착되게 됨
- 이러한 수직적 형평성 훼손의 실증적 증거는 국세청 협조자료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확인됨

가. 출연금 소득공제 혜택의 귀착

- 본 심층평가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협조해준 소득구간별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귀착을 살펴본 결과,³¹⁾³²⁾ 전체 조세지출 혜택의 60% 이상이 총급여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계층에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음
- 총급여 8천만원 초과 계층의 인원 수 비중은 2010년 37% 수준에서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며 2014년 49.1%에 달하고 있으나 출연금 비중은 50% 내외로 나타났음
 - 인원 수 비중의 경우 2013년 귀속분의 경우 59.6%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다시 50% 수준으로 낮아짐
 - 출연금 비중은 2011년과 2013년 귀속분의 경우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50%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임
-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계층에 귀착되는 소득공제 혜택은 2014년 귀속 기준 3.4% 수준에 불과함
- 총급여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계층에 귀착되는 소득공제 혜택은 2014년 귀속 기준 34.5%으로 나타났으나 이 계층의 출연금 비중은 41.9%에 달하고 인원 수 비중은 42.4%에 달함
- 2011년 귀속연도까지는 8천만원 초과와 이하계층에 귀착되는 조세지원 혜택비율이 5:5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이후 6:4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31) 국세청에서 협조해준 과세대상 총급여 구간별 출연금,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이용하여 해당 구간의 산출세액 기준 실효세율을 구하고 출연금 소득공제전 과세표준을 출연금과 과세표준 합산액으로 구한 후 구간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출연금 소득공제전 산출세액을 계산함. 기존 국세청 제공 산출세액과 계산된 출연금 소득공제전 산출세액의 차액을 조세지원 혜택으로 정의하고 연도별 총조세지원 규모 대비 구간별 귀착비율을 계산한 결과임

32) 조합출연금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조합계정에서 개인주식계정으로 인출단계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공제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과세이연제도이나 개인별로 출연단계의 소득공제와 일정 기간 이후 인출단계의 과세정보를 연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어서 출연단계의 소득공제 혜택의 귀착만을 분석함

- 특히 2012년 귀속기준으로는 가장 큰 비중의 출연금 소득공제 혜택이 귀착된 소득구간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으로 41.2%에 달했으나 이 계층의 출연금 비중은 30.8%로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계층의 출연금 비중 41.8%보다 11%포인트나 낮았음
 -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소득 구간 인원 수 비중도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계층보다 낮은 수준

□ 이처럼 인원 수 비중이나 출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소득공제 혜택의 큰 부분이 총급여 8천만원 초과 구간, 특히 1억원 초과 구간에 집중되는 것은 해당 소득구간의 평균 실효세율이 높기 때문임

<표 IV-1>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소득공제혜택의 귀착

(단위: %)

	총급여 구간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 비중	2천만원 이하	1.4	0.9	0.6	0.4	1.0
	4천만원 이하	16.4	13.9	11.5	6.6	7.5
	8천만원 이하	45.1	48.1	46.0	33.4	42.4
	8천만원 이하 소계	63.0	63.0	58.1	40.4	50.9
	1억원 이하	19.4	15.6	15.6	29.1	19.8
	2억원 이하	16.8	20.3	25.6	29.8	28.7
	2억원 초과	0.9	1.1	0.7	0.6	0.6
	8천만원 초과 소계	37.0	37.0	41.9	59.6	49.1
출연금 비중	2천만원 이하	0.6	0.5	0.3	0.1	0.6
	4천만원 이하	11.8	12.4	10.3	4.3	5.8
	8천만원 이하	44.7	48.6	41.8	31.0	41.9
	8천만원 이하 소계	57.1	61.5	52.4	35.4	48.3
	1억원 이하	21.0	15.5	16.0	31.2	20.3
	2억원 이하	20.8	21.8	30.8	32.8	30.8
	2억원 초과	1.1	1.2	0.8	0.6	0.6
	8천만원 초과 소계	42.9	38.5	47.6	64.6	51.7
조세 혜택 비중	2천만원 이하	0.3	0.3	0.1	0.1	0.2
	4천만원 이하	6.4	6.8	5.3	2.1	3.2
	8천만원 이하	38.7	41.9	34.8	25.4	34.5
	8천만원 이하 소계	45.3	49.0	40.2	27.6	37.9
	1억원 이하	22.7	16.9	16.8	30.9	21.1
	2억원 이하	29.4	31.3	41.2	40.2	39.7
	2억원 초과	2.6	2.9	1.9	1.3	1.3
	8천만원 초과 소계	54.7	51.0	59.8	72.4	62.1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이러한 결과는 급여수준이 높은 상장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함
- 그러나 배정 및 인출단계에서 자금의 원천 및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부분 과세되므로 고소득층 혜택 집중도는 상당수준 완화될 것으로 예상

나.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귀착

- 우리사주를 보유하면서 발생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총급여 구간별 귀착비중은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혜택의 총급여 구간별 귀착비중보다 더 고소득 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귀속연도 2011년까지는 근로소득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구간의 인원 수 비중이 70% 수준에 육박했으나 2012년부터 50%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배당소득비중은 2010년을 제외하고 50% 수준을 하회하며 추세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구간별 인원 수로 각 구간별 배당소득을 나눠서 살펴본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규모는 2011년 2억원 초과구간에서 발생한 1인당 246.4만원이 2010~2014년 기간 동안 가장 크고 2010년 2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평균 12.9만원이 가장 낮음
 - 배당소득에 대해서 14%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종결되는 경우 조세혜택의 귀착비중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배당소득 비중과 동일하며 8천만원 초과 구간에 60% 이상의 조세혜택이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귀속 근로소득 8천만원 초과 구간에 귀착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46.3%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며 2014년 귀속연도의 경우 66.1%에 달함
 - 근로소득 실효세율을 이용하여 배당소득의 비과세혜택의 귀착을 추정한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원천징수로 과세종결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고소득 계층에 조세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8천만원 초과 구간의 배당소득 비과세혜택 귀착 비중은 2010년 56.8%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14년 76.1%에 달함
 - 배당소득을 받은 근로자가 종합과세 대상자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해당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평균 실효세율을 이용하여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조세혜택의 규모를

측정한 결과임

-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상기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2019년 이후에는 조합 출자에 대한 배당소득과의 수평적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오랜 기간 비과세되던 조합 출자에 대한 배당소득의 경우 2019년부터 5%, 2020년부터 9%의 저율과세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상과세로 전환할 계획임
 - 공익목적의 조합 법인에 출자하고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정상과세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정상과세를 고려할 필요

<표 IV-2>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혜택 귀착

(단위: %)

	총급여 구간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 비중	2천만원 이하	1.7	3.2	3.7	3.5	3.3
	4천만원 이하	10.2	13.8	12.2	8.8	7.5
	8천만원 이하	54.9	51.2	34.5	33.7	40.4
	8천만원 이하 소계	66.7	68.1	50.4	45.9	51.3
	1억원 이하	19.9	13.6	22.4	18.8	16.9
	2억원 이하	11.4	17.5	26.5	34.4	31.2
	2억원 초과	2.0	0.8	0.7	0.9	0.7
	8천만원 초과 소계	33.3	31.9	49.6	54.1	48.7
배당소득 비중 ¹⁾	2천만원 이하	1.1	1.5	1.7	1.7	1.7
	4천만원 이하	4.2	4.7	3.8	4.1	4.0
	8천만원 이하	48.4	39.9	29.7	30.9	28.1
	8천만원 이하 소계	53.7	46.0	35.2	36.7	33.9
	1억원 이하	25.1	15.9	17.8	16.5	17.5
	2억원 이하	17.5	33.8	44.4	43.8	46.1
	2억원 초과	3.8	4.2	2.6	3.0	2.5
	8천만원 초과 소계	46.3	54.0	64.8	63.3	66.1
조세혜택 비중 ²⁾	2천만원 이하	0.5	0.6	0.7	0.7	0.7
	4천만원 이하	2.2	2.3	1.8	2.0	2.0
	8천만원 이하	40.5	30.1	22.6	23.4	21.2
	8천만원 이하 소계	43.2	33.1	25.1	26.1	23.9
	1억원 이하	25.2	15.4	16.8	15.5	16.9
	2억원 이하	23.7	43.1	52.9	52.3	54.5
	2억원 초과	8.0	8.5	5.3	6.0	4.8
	8천만원 초과 소계	56.8	66.9	74.9	73.9	76.1

주: 1) 배당소득 비중은 해당 구간의 배당소득이 14%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종결되는 경우 조세혜택의 비중과 동일함

2) 조세혜택 비중은 해당 구간의 산출세액기준 평균 실효세율을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추정치에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과 국세청 제공 신고된 산출세액의 차이를 해당 구간의 조세혜택 규모로 산정한 결과임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3. 정책수행방법의 적절성

- 우리사주제도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근로자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세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사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보전하는 데는 조세지원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는 다른 정책수단에 의해 완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손실보전을 위한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보완이 최근 시행됐음
 - 조세지원제도는 이러한 근본적 제도개편을 보조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다른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와 달리 일몰기한이 없는 영구적인 과세특례로 유지되고 있어서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정책목적의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항구화하고 있는 배경은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정책목표에 대한 재점검을 주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의 다양한 조세지원 중 중복지원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은 제10항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임
 - 「조특법」 제8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조합원, 준조합원, 계원, 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1천만원 한도)에 대한 배당소득은 2018년까지 비과세되고 있음
 - 농협 또는 수협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정책목적 및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 해당 협동조합의 근로자가 자사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등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제한 요건도 없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농협 및 수협을 우리사주 조합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찾을 수 없음

- 동 제도는 출연단계에서부터 양도단계에 걸쳐 매우 복잡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서 납세자가 과세특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납세협력비용을 높이므로 제도 단순화를 고려할 필요
 - 향후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되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양도단계의 비과세 조항(조특법 제88조의4 제14항)은 현재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의 경우에만 적용됨
 - 상장주식에 대한 소액주주의 매매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님

4. 타당성 평가 요약

-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의 성과제고를 통해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현금보다 덜 선호되는 위험자산을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는 데 대한 보조적인 인센티브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이 필요해 보임
 - 우리사주가 갖고 있는 위험자산으로서의 성격은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못하므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호적인 근거는 여전히 우리나라 우리사주 지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임
- 우리사주 보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 매입가액의 50%를 보전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거래가 시행되고 있으며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매수제도의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세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제도 도입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도입 비율 수준 자체가 현저히 낮은 수준은 아니나 우

리사주 지분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므로 당분간 취득단계의 출연금 소득공제 제도는 유지할 필요

- 손실보전을 위한 파생결합상품 거래제도의 시행으로 리사주의 위험자산 성격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리사주 지분율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비상장법인의 리사주 환매수제도가 의무화되면 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보완 추이 및 그 효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세지원 제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

□ 현행 출연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의 비과세는 고소득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현행을 유지할 필요

- 배당소득 규모가 2014년 귀속 281.8억원 수준이어서 수직적 형평성 훼손 정도는 앞에서 살펴본 8천만원 초과 구간의 귀착비율 76%가 보여주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8년까지 유지될 계획이므로 향후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점진적 과세일정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개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외에 일몰기한의 설정, 제도의 단순화, 농수협 근로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중복지원 조항, 비상장기업 리사주에만 해당되는 양도차익 과세조항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V. 효과성 평가



V. 효과성 평가

1.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유발되는 근로자의 생산성 변화와 같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가능하지 않으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기 이전과 이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성과제고 효과에 대해 검토함
 - 먼저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기업들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성과가 평균적으로 우리사주제도 도입 전과 후에 어떻게 차이나는지를 분석함
 - 최종적으로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성과제고가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DID(difference in difference) 추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이러한 분석결과가 우리사주제도에 의해 기업의 성과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을 지지해줄 경우 정부의 조세지원제도는 일정부분 효과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조세지원제도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주된 역할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의 성과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사주제도 관련 과세특례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동 과세특례가 기업의 성과제고에 일조했음을 판단하고자 함

가. 우리사주제도 도입 전과 후의 비교

1) 모형의 설정

□ 기존 연구들에서처럼 생산함수 접근법에 기초하여 기업의 생산성은 설비자산, 무형자산, 고용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생산성에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우리사주제도를 고려함

-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식을 유도함

$$\ln(Y_{it}) = \alpha_0 + \alpha_1 \ln(L_{it}) + \alpha_2 \ln(K_{it}^T) + \alpha_3 \ln(K_{it}^U) + \alpha_4 ESOP_{it} + \beta' Z_{it} + \lambda_i + \theta_t + \epsilon_{it} \quad (1)$$

- Y 는 산출량, L 은 종업원 수, K^T 는 설비자산, K^U 는 무형자산, $ESOP$ 는 우리사주 도입 이전의 기간은 0의 값을 갖고 도입시점부터 이후의 기간은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Z 는 이외의 기업특성변수로서 산업더미변수, 부채비율, 기업규모 더미변수를 포함

- λ 는 기업특성더미변수, θ 는 연도더미, ϵ 는 통상적인 오차항임

- 위의 식 (1)은 생산함수 $Y = A \exp(\alpha_4 ESOP + \beta' Z) L^{\alpha_1} (K^T)^{\alpha_2} (K^U)^{\alpha_3}$ 에 자연대수로 치환하면 도출됨

- 여기서 A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며 $\alpha_0 = \ln(A)$ 이고 $\alpha_1 + \alpha_2 + \alpha_3 = 1$ 을 만족할 때 1차 동차 생산함수가 됨

- 위의 식 (1)의 좌변과 우변에 $\ln(L)$ 을 차감하면, 1인당 생산성을 나타내는 추정식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ln(y_{it}) = \alpha_0 + (\alpha_1 - 1) \ln(L_{it}) + \alpha_2 \ln(K_{it}^T) + \alpha_3 \ln(K_{it}^U) + \alpha_4 ESOP_{it} + \beta' Z_{it} + \lambda_i + \theta_t + \epsilon_{it} \quad (2)$$

- 식 (1)과 식 (2)의 추정계수의 차이는 종업원 수 변수의 추정계수이며 식 (2)의 추정계수로부터 0과 1사이의 α_1 의 추정계수를 구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기업의 성과는 종업원 1인당 매출액 y 를 기업의 성과변수로 설정하고자 함

-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취지가 근로자들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사협력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생산성 등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있으므로 노사관계 관련 변수를 기업별로 확보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현실적으로 노사분규일수, 근로손실일수 등과 같은 주요 지표들이 기업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자료는 비공개자료로서 가용하지 않음
 - 우리사주조합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중 하나로 개별 기업별 노사분규일수를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조사를 시도했으나 응답한 기업이 거의 없어서 분석에 포함하지 못함
- 로그 치환한 1인당 매출액은 그 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서 역할을 함
 -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매출액 증가율은 로그 치환한 1인당 매출액의 변화분으로 근사될 수 있음

2) 사용자료

-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협조해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있는 2,310개 기업들의 리스트를 바탕으로 KISVALUE의 1980~2015년 기업재무자료를 추출하여 분석대상 DB를 구축했음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2,310개 기업 리스트 중 147개 기업은 KISVALUE에서 찾을 수 없음
 - 매칭이 되지 않는 147개 기업은 대부분 폐업 또는 합병된 기업으로 나타남
 - 2016년 3월 25일 기준 KISVALUE 전체기업 리스트를 활용
 - 또한 일부 중복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총 2,124개 우리사주조합 설립 기업들의 재무자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했음
 - KISVALUE에서 제공하는 1980~2015년 재무자료를 이용하지만 KISVAULE DB에 일부 변수는 전체 연도 또는 일부 연도에 누락되어 있기도 함
- 기업성과 지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의 로그값을 이용하고 주요 설명변수 중 하나인 자본스톡의 대리변수는 유형자산 중 기계장비 등 설비자산과 무형자산을 사용함

- 이외에 종업원 수, 기업공개 전후 더미변수, 산업코드, 부채비율, 기업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
- 한 기업의 노동투입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기업별 및 연도별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종업원 수를 이용
- 산업코드의 경우 세세분류 5단위 코드를 이용하여 1차산업(농림어업 및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및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등, 건설업, 그 외의 서비스업으로 구분했으나 1차 산업의 경우 관측되는 기업 수가 9개에 불과하여 제외하고 4개 산업으로 구분
- 기업공개 여부는 코스피 상장, 코스닥 상장과 비상장으로 구분하고 기업규모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으로 구분
 -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포괄함

3) 분석결과

- 전 산업을 대상으로 추정된 식 (2)의 추정계수들은 대체적으로 사전적 기대부호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이후 근로자들의 생산성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추정됨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 (2)의 종업원 수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를 갖는 것은 $\alpha_1 - 1$ 의 추정치로서 식 (1)의 $\hat{\alpha}_1$ 의 추정계수는 0.7527로 1보다 작은 양(+)의 계수라는 사전적 예상과 부합함
 -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있는 ESOP 도입 전후의 생산성 제고효과는 12.47%로 추정되었으며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들만을 이용하여 식 (2)를 추정된 결과도 전 산업의 경우와 같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이후 해당 기업들의 생산성이 약 12.52%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1% 미만으로 나타났음
 - 이외에 전기가스수도업 등의 업종의 경우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은 11.16%로 통계적 유의수준은 5% 수준임
 - 건설업의 경우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에 16.03%의 생산성 향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생산성 향상이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가 가장 낮은 수준인 7.66%으로 추정됐음
- 상장 여부와 기업규모별로 식 (2)를 다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사주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 수준이 각각 16.92%와 16.4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상장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수준은 10.73%와 10.63%로 나타나며 전 산업 평균을 하회함
 - 이러한 추정결과는 향후 우리사주제도 지원 대상의 설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이미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 우리사주제도 도입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지분율도 높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포함된 비상장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제도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도입비율이나 지분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이는 향후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를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원 정도를 강화하는 형태의 개편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V-1〉 우리사주제도 도입 전후의 생산성 제고 효과: 업종별 분석

	전 산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등		건설업		서비스업	
	coeff.	P-value	coeff.	P-value	coeff.	P-value	coeff.	P-value	coeff.	P-value
ln(종업원수)	-0.2473	0.0000	-0.2564	0.0000	-0.2974	0.0030	-0.2707	0.0000	-0.2584	0.0000
ln(기계장치)	0.0317	0.0000	0.0548	0.0000	-0.0051	0.5960	0.0022	0.7420	0.0198	0.0010
ln(무형자산)	0.0424	0.0000	0.0384	0.0000	0.0377	0.0680	0.0300	0.0010	0.0605	0.0000
ESOP	0.1247	0.0000	0.1252	0.0000	0.1116	0.0490	0.1603	0.0070	0.0766	0.0380
부채비율	-0.0005	0.0000	-0.0005	0.0000	-0.0024	0.7310	-0.0030	0.0840	-0.0004	0.1310
기업공개 전후	0.0652	0.0000	0.0455	0.0020	-0.0105	0.7260	0.2202	0.0100	0.1207	0.0010
ln(전기 1인 매출액)	0.6689	0.0000	0.6655	0.0000	0.8723	0.0000	0.7092	0.0000	0.6137	0.0000
상수항	6.2257	0.0000	5.8957	0.0000	3.6943	0.0000	6.7334	0.0000	7.2767	0.0000
within- R^2	0.7687		0.7746		0.9475		0.8372		0.7193	
관측수	23,497		17,668		252		1,028		4,414	
기업수	1,678		1,218		16		59		376	

주: 기업특성터미 및 연도터미변수를 포함하여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된 결과임

<표 V-2> 우리사주제도 도입 전후의 생산성 제고 효과: 상장여부 및 기업규모별 분석

	비상장		상장		대기업		중소기업	
	coeff.	P-value	coeff.	P-value	coeff.	P-value	coeff.	P-value
ln(종업원수)	-0.2164	0.0000	-0.2523	0.0000	-0.2353	0.0000	-0.2100	0.0000
ln(기계장치)	0.0159	0.0260	0.0370	0.0000	0.0331	0.0000	0.0184	0.0000
ln(무형자산)	0.0386	0.0000	0.0414	0.0000	0.0391	0.0000	0.0298	0.0000
ESOP	0.1692	0.0000	0.1073	0.0000	0.1069	0.0000	0.1648	0.0000
부채비율	-0.0013	0.0020	-0.0004	0.0000	-0.0004	0.0220	-0.0005	0.0000
기업공개 전후	-0.0460	0.3250	0.0560	0.0000	0.0589	0.0010	0.0944	0.0000
ln(전기 1인 매출액)	0.6067	0.0000	0.6912	0.0000	0.7333	0.0000	0.5444	0.0000
상수항	7.5771	0.0000	5.7718	0.0000	5.1317	0.0000	8.6831	0.0000
within- R^2	0.6250		0.8107		0.8627		0.5584	
관측수	6,544		16,953		13,006		10,491	
기업수	635		1,043		738		940	

주: 1. 통제변수로서 부채비율과 기업규모 또는 상장 여부를 포함시킨 추정결과임
 2. 이외에 기업특성더미 및 연도더미변수를 포함하여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된 결과임

나. 우리사주제도 미도입 기업과의 DID 분석

1) 모형설정

□ 우리사주제도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식 (1)과 (2)를 그대로 이용하되 ESOP_DI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식 (1)과 식 (2)의 ESOP 대신 설명 변수로 사용함

○ $ESOP_DID = Time \times Treated$

- Time은 해당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한 연도부터 그 이후는 1의 값을 갖고 그 이전에는 0의 값을 가짐
- Treated는 해당 기업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기업이면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짐
- 이러한 두 가지의 더미변수의 교차항으로 정의된 ESOP_DID는 우리사주를 도입한 기업들의 도입 전·후 생산성 지표의 차이와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생산성 지표의 차이를 반영한 우리사주제도의 생산성 제고효과를 측정함

○ 결과적으로 식 (1)과 식 (2)는 아래와 같이 식 (3)과 식 (4)로 다시 쓸 수 있고 ESOP_DID를 제외한 여타 변수는 앞에서와 동일함

$$\ln(Y_{it}) = \gamma_0 + \gamma_1 \ln(L_{it}) + \gamma_2 \ln(K_{it}^T) + \gamma_3 \ln(K_{it}^U) + \gamma_4 ESOP_DID_{it} + \delta' Z_{it} + \lambda_i + \theta_t + \epsilon_{it} \quad (3)$$

$$\ln(y_{it}) = \gamma_0 + (\gamma_1 - 1) \ln(L_{it}) + \gamma_2 \ln(K_{it}^T) + \gamma_3 \ln(K_{it}^U) + \gamma_4 ESOP_DID_{it} + \delta' Z_{it} + \lambda_i + \theta_t + \epsilon_{it} \quad (4)$$

2) 사용자료

□ 2016년 4월 28일 기준으로 KISVALUE 전체 25,211개 기업을 대상으로 변수를 추출한 후 고용부 우리사주조합 설립 기업 리스트를 이용하여 time 더미와 Treated 더미를 생성

○ 고용부의 우리사주리스트와 KISVAULE 기업리스트를 결합한 결과 282개 데이터가 불일치함

- 가장 큰 차이는 앞에서 분석할 때 사용한 3월 25일 기준 KISVALUE의 기업 리스트는 폐업·피흡수합병 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4월 28일 추출한 KISVALUE 전체 기업리스트에는 일부 폐업·피흡수합병 법인이 제외됨
- 불일치하는 기업들의 재무정보 중 일부는 3월 28일 기준 DB를 활용하여 총 2,124개의 우리사주제도 도입 기업리스트와 우리사주제도 도입연도를 확보
- 전체 25,493개 기업에서 23,369개 기업이 우리사주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00년~2015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
 - 전체 25,493개 기업 중에서 우리사주조합을 도입한 기업은 2,124개(8.3%)이고, 미도입 기업이 23,369개(91.67%)로 나타남

3) 분석결과

- 우리사주조합을 도입한 기업의 도입전후 효과뿐만 아니라 도입하지 않은 기업과의 생산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DID 추정방법으로 추정된 결과는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15% 안팎 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우리사주제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 산업의 경우 15.9%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우리사주제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은 1%임
 - 제조업의 15.6%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업종별 분석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 향상이 관측된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 으로 20.15%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사주제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은 10% 수준으로 가장 낮음
 - 건설업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에 의해서 생산성 향상이 발생했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서비스업의 경우 1%의 유의수준에서 14.2%의 생산성 향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도입 전과 도입 후 비교에서 추정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수준의 두 배에 가깝게 추정됨

- 상장 여부 및 기업규모별 DID 분석에서도 전체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수준의 생산성 향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제도 도입기업들의 전후 비교에서 추정된 결과와 유사하게 비상장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 수준이 17.59%에 달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상장기업의 경우 1%의 유의수준에서 12.07% 수준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앞에서 살펴본 기업규모별 제도 도입 전후 비교분석 결과와는 다소 다른 분석 결과가 나타남
 - 기업규모별 DID 분석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5.7% 수준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사주제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우리사주제도 도입 전후 비교분석결과와 우리사주제도 도입 전후 및 미도입 기업 간의 생산성 향상 수준의 비교분석결과는 향후 우리사주관련 지원제도의 정책대상자는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들 기업들이 보다 많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

〈표 V-3〉 우리나라주제도의 생산성 제고 효과: 업종별 DID 분석

	전 산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등		건설업		서비스업	
	coeff.	P-value	coeff.	P-value	coeff.	P-value	coeff.	P-value	coeff.	P-value
ln(종업원수)	-0.2298	0.0000	-0.2152	0.0000	-0.2654	0.0000	-0.2053	0.0000	-0.3032	0.0000
ln(기계장치)	0.0179	0.0000	0.0309	0.0000	0.0622	0.0030	-0.0011	0.7410	0.0054	0.0430
ln(무형자산)	0.0155	0.0000	0.0131	0.0000	0.0261	0.0000	0.0000	0.9950	0.0268	0.0000
ESOP_DID	0.1592	0.0000	0.1563	0.0000	0.2015	0.0760	0.0156	0.7890	0.1420	0.0030
부채비율	-0.0000	0.8400	-0.0000	0.7320	0.0012	0.4930	-0.0017	0.1770	-0.0000	0.3810
공개여부	0.1336	0.0000	0.1088	0.0000	0.1579	0.1400	0.0800	0.3190	0.2017	0.0000
ln(전기 1인 매출액)	0.4994	0.0000	0.5150	0.0000	0.4459	0.0000	0.4699	0.0000	0.4343	0.0000
상수항	10.2038	0.0000	9.5792	0.0000	10.5391	0.0000	11.6541	0.0000	11.8800	0.0000
within- R^2	0.3741		0.3922		0.4743		0.3077		0.3353	
관측수	83,008		62,273		1,542		3,262		15,299	
기업수	11,111		7,925		212		469		2,428	

주: 기업특성터미 및 연도터미변수를 포함하여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된 결과임

〈표 V-4〉 우리시주제도의 생산성 제고 효과: 상장 여부 및 기업규모별 DID 분석

	비상장		상장		대기업		중소기업	
	coeff.	P-value	coeff.	P-value	coeff.	P-value	coeff.	P-value
ln(중업원수)	-0.2360	0.0000	-0.2148	0.0000	-0.2294	0.0000	-0.2311	0.0000
ln(기계장치)	0.0163	0.0000	0.0220	0.0000	0.0270	0.0000	0.0141	0.0000
ln(무형자산)	0.0124	0.0000	0.0273	0.0000	0.0235	0.0000	0.0128	0.0000
ESOP_DID	0.1759	0.0000	0.1207	0.0000	0.1575	0.0000	0.1566	0.0000
부채비율	0.0000	0.9850	-0.0006	0.0000	-0.0001	0.1190	0.0000	0.9450
공개여부	0.0868	0.0040	0.1191	0.0000	0.1494	0.0000	0.1219	0.0000
ln(전기 1인 매출액)	0.4950	0.0000	0.5143	0.0000	0.4980	0.0000	0.4985	0.0000
상수항	10.3849	0.0000	9.6023	0.0000	10.2310	0.0000	10.2187	0.0000
within- R^2	0.3615		0.4193		0.4141		0.3593	
관측수	65,915		17,093		22,359		60,649	
기업수	9,543		1,568		2,506		8,605	

주: 1. 통제변수로서 부채비율과 기업규모 또는 상장 여부를 포함시킨 추정결과임
 2. 이외에 기업특성더미 및 연도더미변수를 포함하여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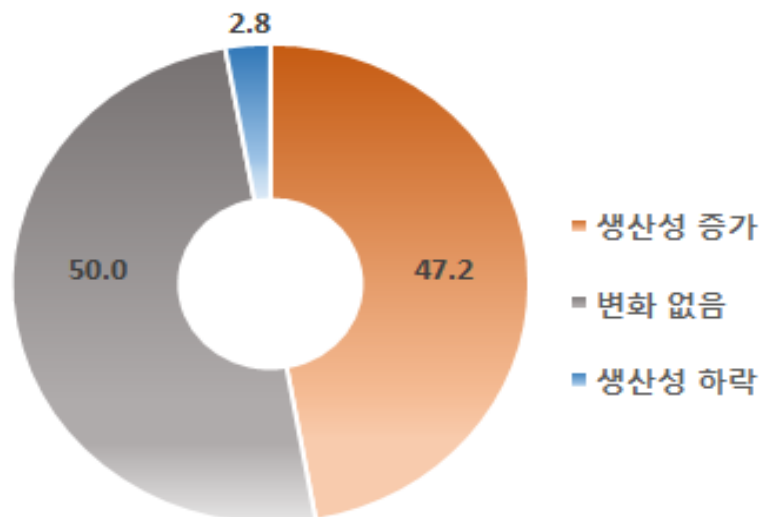
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생산성 제고효과

1) 경영진 설문 결과

- 앞에서 살펴본 실증분석결과와 유사하게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우리사주제도가 대체적으로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생산성이 하락했다고 응답한 경영진은 2.8%에 불과
- 우리사주제 도입 이후 생산성 제고 여부에 대해서 응답한 경영진 72명 중 47.2%는 ‘생산성 증가’, 50%는 ‘변화없음’, 2.8%는 생산성이 하락했다고 응답
- 설문조사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우리사주제도가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1차 산업의 경우 1건의 사례가 있었으나 통계적 의미를 갖기 어려움
- 상장기업, 대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제도가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많았으나 생산성이 하락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비중도 비상장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비중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V-1]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 변화: 경영진 응답

(단위: %)



<표 V-5>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 변화: 경영진 응답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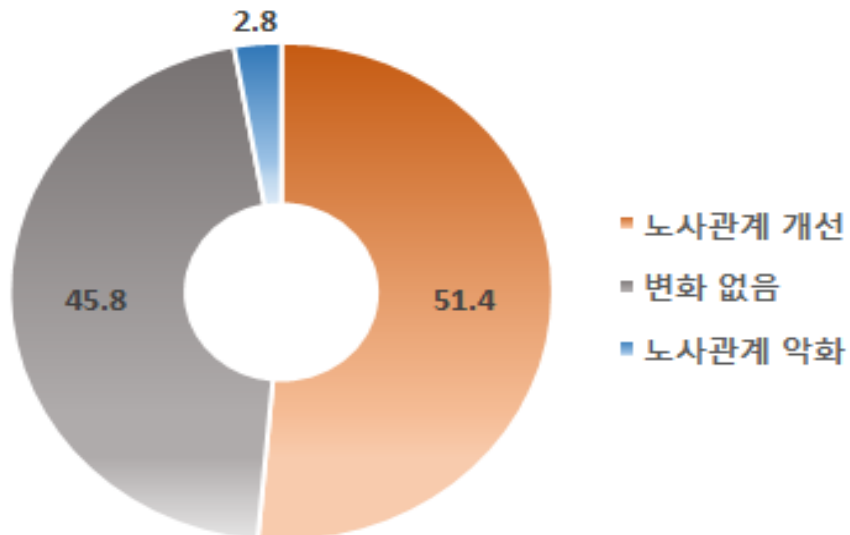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생산성 하락	변화 없음	생산성 증가	
전체	(72)	2.8	50.0	47.2	
업종별	1차산업	(1)	0.0	0.0	100.0
	제조업	(45)	0.0	51.1	48.9
	서비스업	(26)	7.7	50.0	42.3
상장유형별	상장	(32)	3.1	43.8	53.1
	비상장	(40)	2.5	55.0	42.5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42)	2.4	54.8	42.9
	중견기업	(18)	0.0	61.1	38.9
	대기업	(12)	8.3	16.7	75.0

□ 노사관계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노사관계 개선’ 51.4%, ‘변화없음’ 45.8%, ‘노사관계 악화’ 2.8%로 우리사주제의 긍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사주제 도입 이후로 ‘노사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제조업체(57.8%), 상장기업(53.1%), 중견기업(61.1%)에서 비교적 많았음

[그림 V-2]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노사관계 변화: 경영진 응답

(단위: %)



<표 V-6>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노사관계 변화: 경영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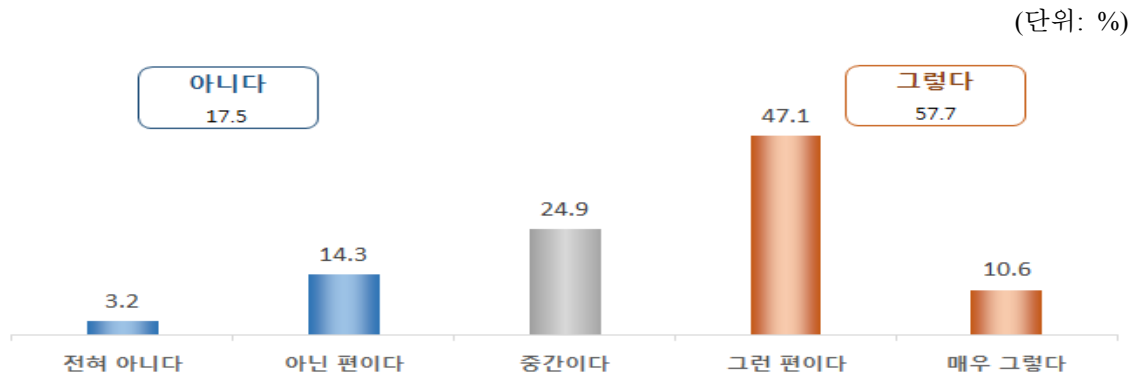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노사관계 악화	변화 없음	노사관계 개선
전체		(72)	2.8	45.8	51.4
업종별	1차산업	(1)	0.0	0.0	100.0
	제조업	(45)	2.2	40.0	57.8
	서비스업	(26)	3.8	57.7	38.5
상장유형별	상장	(32)	0.0	46.9	53.1
	비상장	(40)	5.0	45.0	50.0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42)	2.4	50.0	47.6
	중견기업	(18)	0.0	38.9	61.1
	대기업	(12)	8.3	41.7	50.0

2) 근로자 설문 결과

- 우리사주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의식이 높아졌는지에 대해 189명의 응답자 중 57.7%가 ‘그런 편이다(47.1%)’와 ‘매우 그렇다(10.6)’고 응답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중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사이의 긍정적 응답 비율의 차이는 크지 않음
 - 비상장기업에서 다소 높은 긍정적 응답비율이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별 구분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은 대기업의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짧은 계층일수록 우리사주제도에 의한 주인의식 제고 효과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림 V-3]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주인의식 제고: 근로자 응답



<표 V-7>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주인의식 제고: 근로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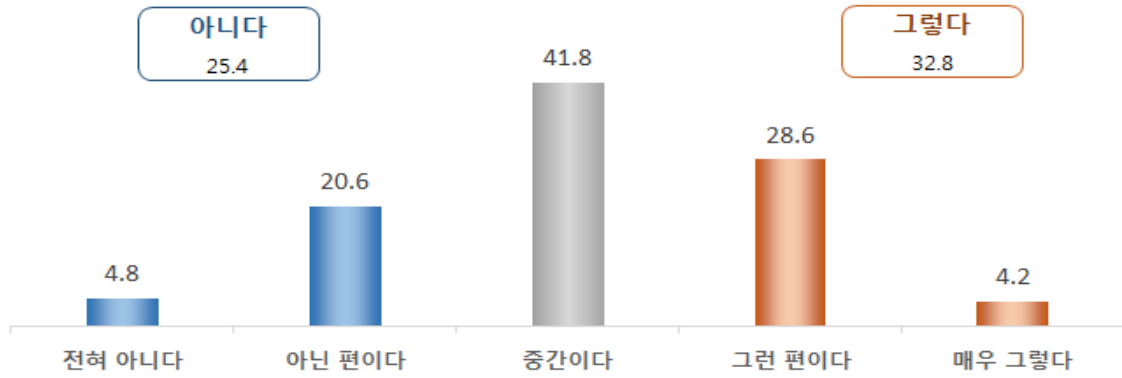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중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189)	3.2	14.3	24.9	47.1	10.6	
업종별	1차산업	(2)	0.0	0.0	0.0	100.0	0.0
	제조업	(117)	3.4	15.4	23.9	44.4	12.8
	서비스업	(70)	2.9	12.9	27.1	50.0	7.1
상장유형별	상장	(102)	4.9	12.7	28.4	41.2	12.7
	비상장	(87)	1.1	16.1	20.7	54.0	8.0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103)	1.9	14.6	23.3	50.5	9.7
	중견기업	(49)	8.2	14.3	34.7	32.7	10.2
	대기업	(37)	0.0	13.5	16.2	56.8	13.5
성별	남성	(145)	2.8	13.8	26.2	44.1	13.1
	여성	(44)	4.5	15.9	20.5	56.8	2.3
연령별	20대	(17)	5.9	0.0	23.5	70.6	0.0
	30대	(104)	3.8	11.5	26.0	46.2	12.5
	40대	(56)	1.8	19.6	25.0	44.6	8.9
	50대 이상	(12)	0.0	33.3	16.7	33.3	16.7

- 생산성 향상에 우리사주제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는 비율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 우리사주조합제도가 근로자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32.8%였으며 ‘아니다’는 25.4%로 나타남(‘중간이다’ 41.8%)
 - 근로자 생산성 향상 달성 효과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비상장기업 종사자 (40.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비상장기업 종사자의 응답비율은 ‘그런 편이다(36.8%)’ 및 ‘매우 그렇다(3.4%)’

[그림 V-4]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 근로자 응답

(단위: %)



<표 V-8>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 근로자 응답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중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189)	4.8	20.6	41.8	28.6	4.2	
업종별	1차산업	(2)	0.0	0.0	100.0	0.0	0.0
	제조업	(117)	6.0	22.2	37.6	29.9	4.3
	서비스업	(70)	2.9	18.6	47.1	27.1	4.3
상장유형별	상장	(102)	6.9	23.5	43.1	21.6	4.9
	비상장	(87)	2.3	17.2	40.2	36.8	3.4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103)	4.9	20.4	41.7	28.2	4.9
	중견기업	(49)	8.2	22.4	36.7	28.6	4.1
	대기업	(37)	0.0	18.9	48.6	29.7	2.7
성별	남성	(145)	4.1	18.6	44.1	28.3	4.8
	여성	(44)	6.8	27.3	34.1	29.5	2.3
연령별	20대	(17)	5.9	17.6	41.2	35.3	0.0
	30대	(104)	5.8	22.1	40.4	27.9	3.8
	40대	(56)	3.6	19.6	42.9	28.6	5.4
	50대 이상	(12)	0.0	16.7	50.0	25.0	8.3

- 우리사주조합제도가 노사협력 제고에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31.7%, ‘아니다’는 29.1%로 소폭 긍정적 응답이 높았음
- 노사협력 제고 달성 효과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비상장기업 종사자(36.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V-9>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노사협력 개선: 근로자 응답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중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189)	6.3	22.8	39.2	24.3	7.4
업종별	1차산업	(2)	0.0	50.0	50.0	0.0	0.0
	제조업	(117)	6.8	24.8	33.3	27.4	7.7
	서비스업	(70)	5.7	18.6	48.6	20.0	7.1
상장유형별	상장	(102)	8.8	25.5	38.2	20.6	6.9
	비상장	(87)	3.4	19.5	40.2	28.7	8.0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103)	6.8	25.2	37.9	23.3	6.8
	중견기업	(49)	10.2	22.4	34.7	22.4	10.2
	대기업	(37)	0.0	16.2	48.6	29.7	5.4
성별	남성	(145)	5.5	22.8	37.9	25.5	8.3
	여성	(44)	9.1	22.7	43.2	20.5	4.5
연령별	20대	(17)	5.9	23.5	41.2	23.5	5.9
	30대	(104)	8.7	21.2	37.5	23.1	9.6
	40대	(56)	1.8	25.0	44.6	23.2	5.4
	50대 이상	(12)	8.3	25.0	25.0	41.7	0.0

2.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미치는 효과

가.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른 재산형성 효과

1) 국세청 자료

- 국세청 협조자료에 따르면 2014년 과세대상 우리사주 인출금액은 총 432.9억원이며 해당 매입액은 총 229.8억원으로 집계되어 평균 수익률은 88.3%로 나타나며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인출액 집계에 포함된 우리사주조합원 수는 2,271명으로 2014년 말 기준 125만명의 0.18%에 불과함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매해 이처럼 소수의 조합원들의 재산형성에만 기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하지만 납세신고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2014년 자료뿐이고 그 이전 자료는 가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V-10〉 우리사주 보유기간별 1인당 평균 수익률: 2014년 인출기준

(단위: 백만원, %)

		평균 매입액	평균 인출액	수익률
금액	2년 미만 보유	6.5	7.9	20.4
	2~4년 보유	7.3	27.9	280.1
	4년 이상 보유	5.8	7.0	21.2
비중	2년 미만 보유	63.9	41.1	-
	2~4년 보유	25.7	51.6	-
	4년 이상 보유	10.4	7.3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 인출금액 비중이 가장 높은 보유기간은 2~4년으로 전체의 51.6%에 달하고 다음으로 2년 미만 보유의 경우가 전체 인출액의 41.1%로 나타났음
 - 4년 이상 보유의 경우 7.3%에 불과하여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보다는 4년 이전에 인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2~4년 보유하는 조합원의 경우 평균 인출액은 27백만원 수준이고 평균 매입가는 7.3백만원으로 280%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
 - 2년 미만 보유하는 조합원의 평균 수익률과 4년 이상 보유하는 조합원의 평균 수익률은 2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여타 저축수단보다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시현

2) 고용노동부 자료

- 2009년말 기준 예탁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과 시가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익률은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의 우리사주의 경우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 평균 수익률은 55.7%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코스피 상장
우리사주 기업들의 조합원들의 수익률에 의해 결정
 -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수익률은 평균 23.7% 수준으로 나타나고 비상장기업들의
예상 수익률은 1.5%에 불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 자료는 상장법인들 중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종사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우리사주제도에 의해
근로자 재산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보여줌
- 상대적으로 임금수준도 낮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 비상장기
업들의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예상 수익률은 1.5%에 불과하여 우리사주제도에 의
해 큰 혜택을 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분석결과는 단년도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서 향후 보다 긴 시계열을 이용하
여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국세청 자료와 함께 우리사주 특히 상
장기업의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일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V-11> 상장유형별 우리사주 수익률: 2009년 말 기준

(단위: 개, 명, 백만원, %)

	코스피	코스닥	기타	계
예탁조합수	205	272	511	988
예탁조합종업원수(A)	476,033	57,915	121,313	655,261
예탁조합원수(B)	265,042	18,401	59,222	342,665
조합가입률(B/A)	55.7	31.8	48.8	52.3
취득가액	3,728,143	303,787	526,940	4,558,870
시가	6,186,426	375,816	534,636	7,096,878
수익률	65.9	23.7	1.5	55.7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licyinfo/welfare/view.jsp?cate=6 &sec=1](http://www.moel.go.kr/policyinfo/welfare/view.jsp?cate=6&sec=1), 2016년 5월 2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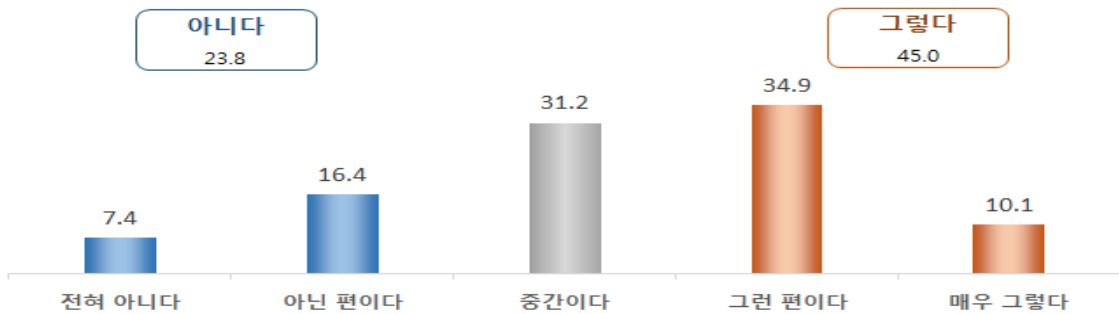
나. 설문조사 결과

-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증진에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 ‘그
렇다’는 의견은 45.0%로 ‘아니다’라는 응답 23.8%보다 많았으며 앞에서 보여준
국세청 자료나 고용노동부 자료처럼 우리사주제도의 재산형성 촉진 역할이 관측됨

- 근로자 재산형성 증진 달성 효과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상장기업 종사자 (53.9%)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중견기업 종사자는 ‘그런 편이다(32.7)’와 ‘매우 그렇다(10.2)’로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비해 긍정적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남
- 비상장기업의 경우 긍정적 응답비율이 더욱 더 낮게 나타는데 이는 비상장기업 회사주의 환금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기업 회사주조합원들은 상장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 약 8%포인트 더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그림 V-5] 회사주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 재산형성: 근로자 응답

(단위: %)



<표 V-12> 회사주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 재산형성: 근로자 응답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중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189)	3.2	14.3	24.9	47.1	10.6	
업종별	1차산업	(2)	0.0	0.0	0.0	100.0	0.0
	제조업	(117)	3.4	15.4	23.9	44.4	12.8
	서비스업	(70)	2.9	12.9	27.1	50.0	7.1
상장유형별	상장	(102)	4.9	12.7	28.4	41.2	12.7
	비상장	(87)	1.1	16.1	20.7	54.0	8.0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103)	1.9	14.6	23.3	50.5	9.7
	중견기업	(49)	8.2	14.3	34.7	32.7	10.2
	대기업	(37)	0.0	13.5	16.2	56.8	13.5
성별	남성	(145)	2.8	13.8	26.2	44.1	13.1
	여성	(44)	4.5	15.9	20.5	56.8	2.3
연령별	20대	(17)	5.9	0.0	23.5	70.6	0.0
	30대	(104)	3.8	11.5	26.0	46.2	12.5
	40대	(56)	1.8	19.6	25.0	44.6	8.9
	50대 이상	(12)	0.0	33.3	16.7	33.3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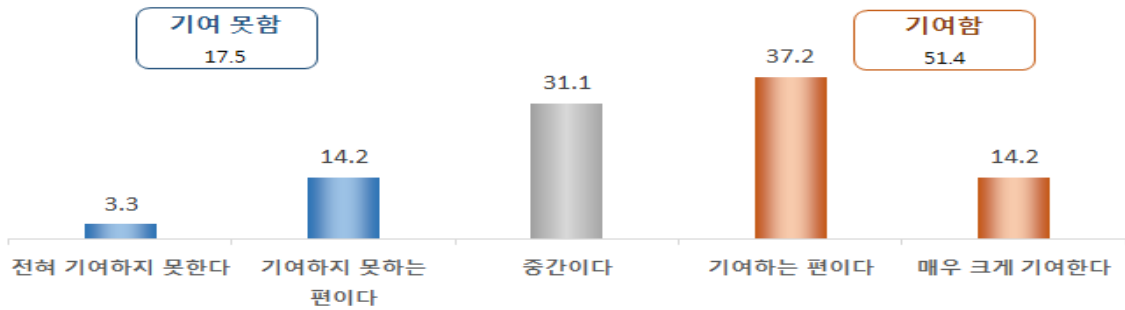
3.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근로자 설문 결과

가. 출연단계 소득공제 혜택

- 출연 시 소득공제의 효과가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1.4%(‘기여하는 편’ 37.2% + ‘매우 크게 기여’ 14.2%)가 ‘기여한다’고 응답함
- 대기업 종사자(58.3%), 30대(61.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V-6] 출연시 소득공제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단위: %)



<표 V-13> 출연시 소득공제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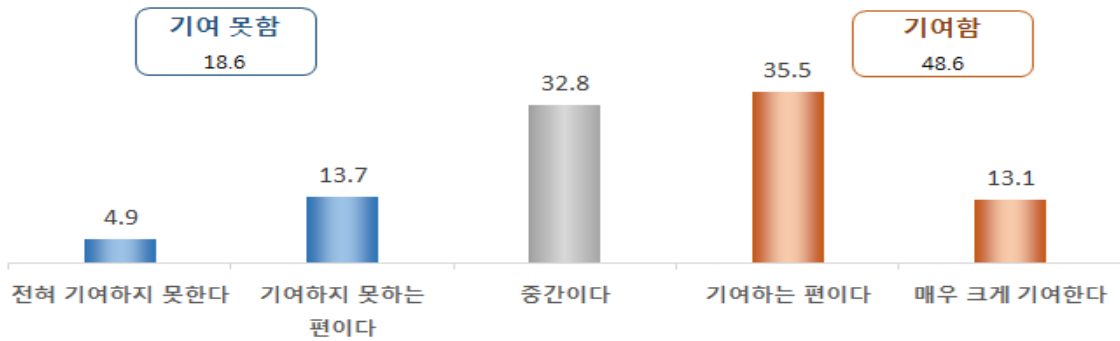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중간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크게 기여한다	
전체	(183)	3.3	14.2	31.1	37.2	14.2	
업종별	1차산업	(1)	0.0	0.0	0.0	100.0	0.0
	제조업	(110)	5.5	15.5	28.2	38.2	12.7
	서비스업	(72)	0.0	12.5	36.1	34.7	16.7
상장유형별	상장	(96)	5.2	13.5	32.3	37.5	11.5
	비상장	(87)	1.1	14.9	29.9	36.8	17.2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97)	3.1	15.5	29.9	36.1	15.5
	중견기업	(50)	4.0	14.0	36.0	38.0	8.0
	대기업	(36)	2.8	11.1	27.8	38.9	19.4
성별	남성	(137)	2.9	15.3	28.5	37.2	16.1
	여성	(46)	4.3	10.9	39.1	37.0	8.7
연령별	20대	(15)	6.7	13.3	53.3	26.7	0.0
	30대	(98)	4.1	11.2	23.5	41.8	19.4
	40대	(57)	0.0	19.3	35.1	36.8	8.8
	50대 이상	(13)	7.7	15.4	46.2	15.4	15.4

나. 인출시 비과세 혜택

- 인출 시 비과세의 세금 감면효과가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 48.6%(‘기여하는 편’ 35.5% + ‘매우 크게 기여’ 13.1%)가 ‘기여한다’고 응답함
- ‘기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중견기업 종사자(26.0%)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V-7] 인출시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단위: %)



<표 V-14> 인출시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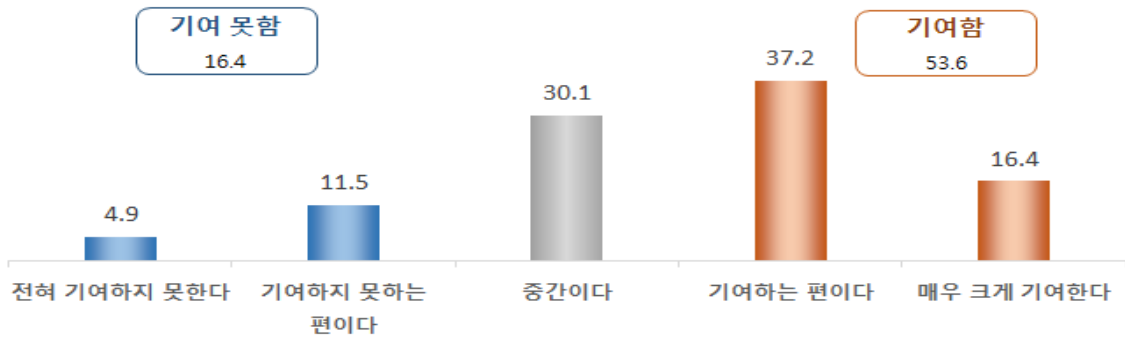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중간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크게 기여한다
전체	(183)	4.9	13.7	32.8	35.5	13.1
업종별	1차산업 (1)	0.0	0.0	0.0	100.0	0.0
	제조업 (110)	8.2	13.6	26.4	39.1	12.7
	서비스업 (72)	0.0	13.9	43.1	29.2	13.9
상장유형별	상장 (96)	6.3	17.7	29.2	36.5	10.4
	비상장 (87)	3.4	9.2	36.8	34.5	16.1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97)	4.1	12.4	32.0	36.1	15.5
	중견기업 (50)	6.0	20.0	32.0	36.0	6.0
	대기업 (36)	5.6	8.3	36.1	33.3	16.7
성별	남성 (137)	5.1	14.6	31.4	35.0	13.9
	여성 (46)	4.3	10.9	37.0	37.0	10.9
연령별	20대 (15)	6.7	6.7	53.3	33.3	0.0
	30대 (98)	6.1	10.2	29.6	39.8	14.3
	40대 (57)	0.0	22.8	29.8	33.3	14.0
	50대 이상 (13)	15.4	7.7	46.2	15.4	15.4

다. 보유시 배당소득 비과세

- 배당소득 비과세의 세금 감면효과가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 ‘기여한다’는 응답이 53.6%(‘기여하는 편’ 37.2% + ‘매우 크게 기여’ 16.4%)로 절반 이상임
- 배당소득 비과세 효과가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대기업 종사자(61.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그림 V-8] 보유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단위: %)



<표 V-15> 보유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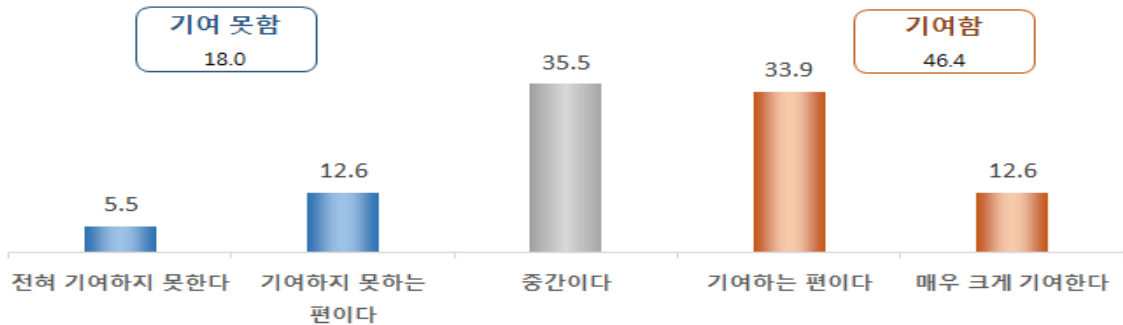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중간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크게 기여한다	
전체	(183)	4.9	11.5	30.1	37.2	16.4	
업종별	1차산업	(1)	0.0	0.0	0.0	100.0	0.0
	제조업	(110)	8.2	10.9	26.4	39.1	15.5
	서비스업	(72)	0.0	12.5	36.1	33.3	18.1
상장유형별	상장	(96)	7.3	11.5	28.1	37.5	15.6
	비상장	(87)	2.3	11.5	32.2	36.8	17.2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97)	3.1	13.4	25.8	40.2	17.5
	중견기업	(50)	8.0	12.0	40.0	32.0	8.0
	대기업	(36)	5.6	5.6	27.8	36.1	25.0
성별	남성	(137)	5.1	11.7	25.5	39.4	18.2
	여성	(46)	4.3	10.9	43.5	30.4	10.9
연령별	20대	(15)	6.7	6.7	46.7	33.3	6.7
	30대	(98)	5.1	8.2	28.6	38.8	19.4
	40대	(57)	1.8	19.3	22.8	42.1	14.0
	50대 이상	(13)	15.4	7.7	53.8	7.7	15.4

라. 양도시 비과세

- 퇴직 양도 시 비과세의 효과가 우리사주조합제도 도입 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 46.4%(‘기여하는 편’ 33.9% + ‘매우 크게 기여’ 12.6%)가 ‘기여한다’고 응답함
- 양도 시 비과세 효과가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비상장기업 종사자(52.9%)에서 비교적 높았음

[그림 V-9] 양도시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단위: %)



<표 V-16> 양도시 비과세 혜택의 기여도: 근로자 응답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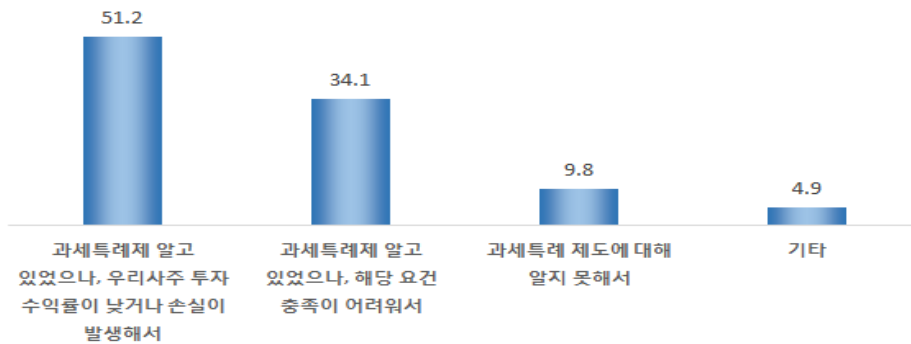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중간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크게 기여한다	
전체	(183)	5.5	12.6	35.5	33.9	12.6	
업종별	1차산업	(1)	0.0	0.0	0.0	100.0	0.0
	제조업	(110)	9.1	13.6	29.1	35.5	12.7
	서비스업	(72)	0.0	11.1	45.8	30.6	12.5
상장유형별	상장	(96)	8.3	13.5	37.5	30.2	10.4
	비상장	(87)	2.3	11.5	33.3	37.9	14.9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97)	3.1	13.4	33.0	37.1	13.4
	중견기업	(50)	10.0	14.0	38.0	30.0	8.0
	대기업	(36)	5.6	8.3	38.9	30.6	16.7
성별	남성	(137)	5.8	13.1	33.6	34.3	13.1
	여성	(46)	4.3	10.9	41.3	32.6	10.9
연령별	20대	(15)	6.7	13.3	60.0	20.0	0.0
	30대	(98)	6.1	10.2	32.7	34.7	16.3
	40대	(57)	1.8	17.5	33.3	36.8	10.5
	50대 이상	(13)	15.4	7.7	38.5	30.8	7.7

다. 과세특례제도 활용 못한 이유

- 과세특례제도가 우리사주조합 도입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 이유로는 ‘과세특례 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우리사주 투자 수익률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해서’가 51.2%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과세특례제도를 알고 있었으나,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려워서’가 34.1%를 차지함
 - 과세특례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응답한 41명을 대상으로 조사
-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9.8%로 나타남

[그림 V-10] 과세특례제도 미활용 이유: 근로자 응답

(단위: %)



4. 효과성 평가 요약

-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우리사주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사주제도 도입 기업의 도입 전후 생산성 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보다 강건한 추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DID 분석으로 우리사주제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우리사주제도는 약 15%의 생산성 향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향후 관련 제도의 정비를 비상장기업이 보다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
 - 기업규모별 분석 및 상장 여부 분석에서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생산성 제고 효과가 두드러지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장기업이 보다 우리사주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국세청 협조자료와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음
 - 국세청 협조자료는 2014년 기준 보유기간별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모든 보유기간별 수익률이 20% 이상으로 높게 실현됐으며 2~4년의 수익률은 280%에 달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자료는 2009년 상장유형별 우리사주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으며 코스피, 코스닥, 기타(비상장)의 순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남
 - 특히 기타의 경우 여타 유형과는 달리 1.5%의 저조한 수익률이 추정됨

- 125명의 경영진과 23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재산형성에 우리사주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경영진과 근로자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음
 - 이외에 주인의식 제고, 노사관계 개선 등에도 우리사주제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 출연시 소득공제, 인출시 비과세, 보유시 배당소득 비과세, 양도시 비과세 혜택 등 주요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근로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 비상장기업 종사자의 경우 양도시 비과세 혜택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 그러나 과세특례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41명 중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1) 우리사주 투자수익률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2) 과세특례제도는 알고 있었으나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요건 충족이 어려움
 - 과세특례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우리사주제도는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사주제도를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과세특례제도들도 각 단계별로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저조한 투자 수익률과 손실 발생은 조세지원제도로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려움
 - 우리사주제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손실보전 파생결합상품거래제도, 비상

장 우리사주의 환매수 등 다른 정책수단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과세특례제도는 알고 있었으나 요건 충족이 어려워서 동 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단순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Ⅵ. 종합평가의견 및 제도 개선방안



VI. 종합평가의견 및 제도 개선방안

- 이상에서 살펴본 「조특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성과제고 및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에 일조하는 것을 정책목적으로 삼고 있음
 -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특징은 제도 도입 기업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우리사주 지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요약됨
 - 이는 외견상으로는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낮은 우리사주 지분율로 인해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의 성과제고와 근로자 재산형성에 실효성 있는 효과를 유발하지 못하는 경우로 판단됨

- (타당성 분석) 현금보다 덜 선호되는 위험자산을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는 데 대한 보조적인 인센티브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이 필요함
 - 우리사주가 갖고 있는 위험자산으로서의 성격은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못하므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도 확대에는 신중할 필요
 - 또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호적인 근거는 여전히 우리나라 우리사주 지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임
 - 우리사주제도가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사주 지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은 추가적 활성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조세지원제도는 유지할 필요

- 위험자산인 우리사주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 매입가액의 50%을 보전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거래가 시행되고 있으며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매수제도의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세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제도 도입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도입 비율 수준 자체가 현저히 낮은 수준은 아니나 우리사주 지분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므로 당분간 취득단계의 출연금 소득공제 제도는 유지할 필요
 - 손실보전을 위한 파생결합상품 거래제도의 시행으로 우리사주의 위험자산 성격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리사주 지분율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파생결합상품의 거래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이며 회사가 조합원을 위해서 일정부분 부담한다면 이에 대해 회사에 조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또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제도가 의무화되면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 수 및 우리사주 도입기업 확대 등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우리사주제도 자체의 제도적 보완 추이 및 그 효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세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
- 현행 출연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의 비과세는 고소득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조합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현행을 유지할 필요
- 배당소득 규모가 2014년 귀속 281.8억원 수준이어서 수직적 형평성 훼손 정도는 앞에서 살펴본 8천만원 초과 구간의 귀착비율 76%가 보여주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소득세의 수직적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편을 고려할 필요
 - 또한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8년까지 유지될 계획이므로 향후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점진적 과세일정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개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외에 일몰기한의 설정, 제도의 단순화, 농수협 근로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중복지원 조항,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에만 해당되는 양도차익 과세조항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효과성 분석)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우리사주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사주제도 도입 기업의 도입 전후 생산성 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보다 강건한 추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DID 분석으로 우리사주제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우리사주제도는 약 10~15%의 생산성 향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향후 관련 제도의 정비를 비상장기업이 보다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
 - 기업규모별 분석 및 상장 여부 분석에서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생산성 제고 효과가 두드러지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장기업이 보다 우리사주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국세청 협조자료와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음
 - 국세청 협조자료는 2014년 기준 보유기간별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으며 모든 보유기간별 수익률이 20% 이상으로 높게 실현됐으며 2~4년의 수익률은 280%에 달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자료는 2009년 상장유형별 우리사주 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으며 코스피, 코스닥, 기타(비상장)의 순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남
 - 특히 기타(비상장)의 경우 여타 유형과는 달리 1.5%의 저조한 수익률이 추정됨

- 125명의 경영진과 23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재산형성에 우리사주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경영진과 근로자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음
 - 이외에 주인의식 제고, 노사관계 개선 등에도 우리사주제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 출연시 소득공제, 인출시 비과세, 보유시 배당소득 비과세, 양도시 비과세 혜택 등 주요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근로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 비상장기업 종사자의 경우 양도시 비과세 혜택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 그러나 과세특례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41명 중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1) 우리사주 투자수익률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2) 과세특례제도는 알고 있었으나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요건 충족이 어려움

○ 과세특례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우리사주제도는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사주제도를 보조적으로나마 지원하는 과세특례제도들도 각 단계별로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저조한 투자 수익률과 손실 발생은 조세지원제도로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려움

- 우리사주제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손실보전 과생결합상품거래제도, 비상장 우리사주의 환매수 등 다른 정책수단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과세특례제도는 알고 있었으나 요건 충족이 어려워서 동 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단순화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개선방안)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먼저 동 제도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적인 정책수단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우리사주제도 자체의 제도적 보완 등 여건 변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과세특례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일몰기한을 설정할 필요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결과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현 수준의 조세지원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여타 제도의 개편방향을 고려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편을 고려할 필요

- 출연단계의 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과세이연방식이므로 인출단계의 과세수준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 규모가 현재 추정치보다 작고 결과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수직적 형평성 저해수준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

- 인출단계에 중소기업 우리사주에 대해서 6년 보유에 대해 완전 비과세 요건을 신설했으므로 그 효과를 살피기 위해 당분간 현행 유지

-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제도가 유지되는 2018년까지 현행을 유지하며 이후 정상과세로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

- 과세특례제도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들의 첫 번째 원인인 낮은 수익률 또는 손실은 조세지원제도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간접적으로 손실보전 파생결합상품 거래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데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또한 우리사주조합을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지는 점을 고려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비상장기업들의 우리사주 환금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담한 비상장기업의 환매수 비용에 대해 조세지원하는 방안
- 끝으로 제도의 단순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필요

참 고 문 헌

- 남상섭·안병룡, 「ESOP 활성화를 위한 세제인센티브의 국제비교」, 『무역연구』 제6권 제3호, 2010.9
- 이윤수,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ESOP과 401K」,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4,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2004.11.
- 노용진, 「우리사주제의 생산성 효과: 패널연구」, 『경영학연구』, 제30권 제2호, 2001, pp. 557~581
- 노용진·문무기·박성찬·김재욱·김성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노동부 용역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1.12.
- 안병룡,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생산성 증가효과: 제도 실시 전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제경제연구』 제8권 제1호, 2002, pp. 233~257
- 안병룡, 「우리사주제도의 노사관계 개선효과」, 『증권금융』 제299호, 2006, pp. 3~29
- 우리사주지원센터&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의 이해』, 2014.2
- 한국증권금융·우리사주지원센터, 『우리사주제도의 이해』, 2012.6.
- 신범철, 「종업원주식소유제도간 생산성 효과 비교분석」, 『생산성논집』, 제22권 제1호, 2008.2, pp. 119~147.
- 원인성, 「우리사주제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2012.2., pp. 591~618.
- 신범철·남상섭·박용석,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 연구』, 노동부 연구 용역 보고서, 한국산업경제연구소, 2004.11.
- 김동배·노용진·강병식·송민수,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7.12.
- 신범철·김영준·어기구,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보고서, (사)한국생산성학회, 2014.11.
- 송홍선·이효섭·장정모, 『비상장·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 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2014.11.

강세희, 「종업원 주식소유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011.

박경서·정찬식, 「종업원지주제도(ESOP) 도입을 통한 종업원의 영향력 강화가 기업경영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금융연구』, 제24권 제1호, 2010.3, pp. 33~65.

김대룡·김창식, 「우리사주 초과이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금융지식연구』, 제13권 제1호, 2015, pp. 49~74.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2015.2.

齊木秀憲, 「従業員持株会の課税関係に関する一考察」, 『税務大学校論叢』(70), 2011.6,

日本証券業協会, 『持株制度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2008

經濟産業省, 『新たな自社株式保有スキームに関する報告書』, 2008

A. Pendleton & A. Robinson, “Employee Stock Ownership, Involvement and Productivity: An Interaction-Based Approach,”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64, No 1, 2010, pp.3-29.

E. Kaarsemaker, A. Pendleton, and E. Poutsma, “Employee Share Ownership Plans: A Review,” The York Management School Working Paper No. 44 University of York, 2009

US GAO,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Interim Report on a Survey and Related Economic Trends, Washington DC, 1986

Cross-border income tax issues arising from employee stock option plans, OECD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2004.8

The promotion of employee ownership and participation. EU, 2014.10

Guidance on the capital gains tax treatment of employee shareholder shares, HM revenue&customs, 2015

삼일아이닷컴 www.samili.com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main.html

IBFD www.ibfd.org

미국국세청 www.irs.gov

미국 ESOP국가센터 www.nceo.org

일본국세청 www.nts.go.jp

영국국세청 www.gov.uk

호주국세청 www.ato.gov.au

호주 우리사주조합연합회 www.employeeownership.com.au

Practical Law 법률회사 www.ca.practicallaw.com

부 록



부 록 I. 주요국의 우리사주 관련 과세특례제도

- 주요국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를 우리나라의 규정에 맞추어 취득자금의 차입 및 대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우리사주의 취득·배정·인출·양도에 따라 각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함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종업원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출연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종업원에게 배정하는 형식을 취함
 - 이와 달리 주요국 중에는 우리사주를 종업원이 직접 취득하고 취득한 우리사주를 적격기관에 위탁하는 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우리사주 배정 등의 절차는 생략되는 등 국가별 특징이 존재함
 - 이하에서는 국가별 운영방식에 따른 단계별 과세방법과 과세상 혜택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검토함

- 여기서 살펴볼 주요국의 우리사주와 관련된 과세특례제도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의 우리사주 관련 조세지원제도임

1. 미국

- 미국에서 사원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는 ESOP 외에도 이익분배제도나 주식보너스제도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우리사주조합제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미국의 ESOP에 한하여 제도 및 과세특례를 검토함³³⁾

- 미국의 ESOP는 종업원의 출연 없이 회사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음³⁴⁾

33) ESOP가 고용주 회사의 유가증권과 주식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계된 것에 비하여(IRC §§ 409 and 4975(e)(7)), 이익배분제도, 주식보너스제도는 연금제도와 함께 적격은퇴제도(Qualified corporate retirement plans)에 포함되어 있다(IRC § 401).

34)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ESOP과 401K』, p. 32~33

- 회사는 신탁펀드인 ESOP를 설립하여 자신의 주식을 출연하거나 ESOP가 기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을 출연함
 - ESOP는 회사의 출연 외에도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음
 - ESOP에 취득된 주식은 개별 종업원 계정으로 배분되고, 종업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종업원 계정에서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으며, 3년에서 6년 안에 주식을 취득할 권리가 100%가 됨
 - 종업원들은 퇴직시 그들의 주식을 받게 되고 회사는 공정시장가치로 퇴직하는 종업원의 주식을 환매해야 함³⁵⁾
- 미국의 우리사주조합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차입 및 대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우리사주취득·배정·배당·인출·양도의 각 단계를 거침

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차입 및 대여

- 미국의 ESOP제도하에서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ESOP과 회사 모두 차입이 가능함
- 회사가 직접 차입하는 경우 ESOP에 현금으로 출연하여 그 출연금으로 ESOP가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고, 회사는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회사가 출연을 위해 차입한 부채를 상환함
 - ESOP가 직접 차입하는 차입형 ESOP는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대출자인 ESOP를 보증하고 ESOP가 차입을 하는 구조로, ESOP가 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불해야 함
 - 회사가 직접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 및 출연금은 회사의 비용이 되며, ESOP가 차입한 경우 상환한 차입금 및 지불한 이자에 대해 회사가 ESOP에 출연한 금액은 한도 내에서 회사가 소득공제할 수 있음³⁶⁾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소득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음

35) 비상장회사(private company)는 그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1년에 한번은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employee-stock-ownership-plan)

36) 미국 국세청 www.irs.gov/irm/part4/irm_04-072-004.html

- ESOP가 적격한 회사 소유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C형 회사가 ESOP에 지불한 출연금이어야 하고,³⁷⁾
 - 소득공제를 하기 전까지의 출연금 중에서 ESOP가 차입금 상환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함
 - 소득공제 한도는 ESOP 참여자의 급여에 25%인데³⁸⁾³⁹⁾, 이는 차입금의 원금에 대해 적용되며 이자비용의 경우에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됨⁴⁰⁾
- 구체적인 예를 들어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음
- ESOP가 100을 차입하여 적격한 주식을 매입하는 데 100을 사용하고, 회사가 50을 ESOP에 출연하여 차입금 상환으로 40, 이자비용으로 10을 사용한 경우
 - 소득공제 한도인 ESOP 참여자 급여총액의 25%가 30이라고 가정함
 -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차입금이 적격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고 회사의 출연금이 이러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며 상환에 사용되었어야 함)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함
 - 다만,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출연금은 한도를 적용받게 되므로 차입금 상환액 한도인 30까지 공제하고, 이자비용은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10을 공제하여, 소득공제 총액은 40으로 계산됨

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 미국의 경우 종업원이 ESOP에 출연하지 않으므로 종업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 출연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할 수 있음
- ESOP에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총급여액(covered payroll)의 25%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함

37) 적격한 회사 소유주의 주식은 IRC 4975(e)(8)에서 IRC 409(l)에서 규정하는 소유주의 주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IRC 409(l)의 소유주 주식은 ① 소유주나 동일한 지배그룹 안에 있는 회사에 의해 발행된 보통주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주식, ② 거래가 용이한 보통주가 없다면, 1인이나 소수주주에 의해 보유된 주식으로 의결권과 배당권이 결합된 주식이나 최대 배당권을 가지는 소유주의 보통주를 초과하는 주식, ③ 우선주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위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으로 ESOP가 우선주로 취득할 때 합리적인 전환가격을 가지는 주식이다.

38) 미국 국세청 www.irs.gov/irm/part4/irm_04-072-004.html

39) IRC 404(a)(3), 404(a)(7)

40) IRC 404(a)(9)(B)

- C형 회사가 차입형 ESOP(leveraged ESOP)를 운영하는 경우에 25%의 한도에 ESOP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반면, S형 회사의 경우에는 25%의 한도는 ESOP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포함함⁴¹⁾⁴²⁾

다. 우리사주 취득

- 미국의 경우 종업원이 ESOP를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시점은 퇴직하여 회사를 떠나는 시점임
 -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배정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출단계에서 관련 과세혜택을 검토함

라.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배정

- ESOP가 취득한 주식은 개별 종업원 계정으로 배정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종업원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를 부여함
 - 일반적으로 21세 이상 풀타임 종업원에 대해 ESOP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며,⁴³⁾ 종업원은 3년에서 6년 정도가 걸리는 귀속(vesting)과정을 거치면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갖게됨
 - 귀속(vesting)과정은 종업원들이 회사에서 근속한 연수가 늘어나면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완성되는 과정임
 -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일시에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3년, 점차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3~6년 안에 권리가 100%가 됨
 - 완전하게 귀속되기 전에 회사를 떠나는 종업원에게는 주식을 배정하지 않고 몰수함

41)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tax-incentives-contribution-limits

42) S법인은 도관과세의 형태로 S법인 자체에는 과세되지 않고 소유주에게 과세되며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① 직접 차입하여 출연하는 경우 차입금은 S법인이 상환하고 S법인이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과세결과는 ESOP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25%의 한도를 적용하되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② ESOP가 차입하고 S법인이 해당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출연금에 대하여 25%의 한도를 적용하되 이자는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C법인은 ① 직접 차입하여 출연하는 경우 차입금은 C법인이 상환하고 C법인이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과세결과는 ESOP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25%의 한도를 적용하되 이자는 C법인의 비용이므로 전액 공제된다. ② ESOP가 차입하고 C법인이 해당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출연금에 대하여 25%의 한도를 적용하되 이자는 한도없이 공제하면 될 것이다.

43)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employee-stock-ownership-plan

- ESOP가 직접 차입하는 차입형 ESOP에 의해 취득된 적격주식은 참여자의 개인계정에 배정되기 전까지 미정계정(suspense account) 보유단계를 추가로 거침
 - 미정계정에 보유한 주식은 ESOP 차입금이 상환될 때 미정계정에서 개별 종업원 계정으로 배정됨
 - 미정계정에 보유한 주식으로부터의 이익은 개별 종업원 계정으로 배분되지만, 해당 이익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미정계정에 있던 주식은 상환비율(당해 상환한 원리금/원리금 총액)로 미정계정에서 차감되어 참여자보상비율(각 참여자보상액/전체 참여자에 대한 보상액)로 참여자에게 배정됨⁴⁴⁾
 - 참여자에게 배정된 이익은 개별 종업원 계정으로 배분되는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등의 사유로 인출(distributions)되는 시점에 과세됨⁴⁵⁾

마. 보유주식 배당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에서 받은 배당은 그 전체가 과세대상이 됨
 - ESOP계정에서 배정된 개별 종업원계정의 주식에 대한 배당은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배당으로 보며,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됨
- ESOP에 출연한 C형 회사는 ESOP가 보유한 기초주식에 대하여 지급받은 배당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고 공제할 수 있으며⁴⁶⁾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음
 - ESOP 참여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ESOP를 통하여 연말마감 후 90일 이내에 지급되거나 재투자되어야 함
 - 배당으로 차입형 ESOP의 차입액을 상환하거나 회사의 의도에 따라 회사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출연한 회사는 배당을 소득공제할 수 있음⁴⁷⁾
 - 배당공제는 ESOP출연금에 대해 적용되는 한도인 총급여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배당이 합리적(reasonable)일 것을 요함⁴⁸⁾

44) 다국적 법률회사 www.stblaw.com/docs/default-source/cold-fusion-existing-content/publications/pub6_02.pdf?sfvrsn=2

45)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vesting-distribution-diversification

46) IRC 404(a)(3), IRC 404(a)(9), IRC 404(k)

47)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tax-incentives-contribution-limits 및 미국국세청 www.irs.gov/irm/part4/irm_04-072-004.html

48) 합리적이라는 용어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ESOP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는 배당, 종업원에게 전달되는 배당, 종업원에 의해 회사주식으로 재투자되는 배당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www.diamondesopadvisors.com/deduction-of-esop-dividends-irc-%C2%A7404k/

- S형 회사의 경우에는 배당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S형 회사는 그 실체에 대하여 연방법인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으며 당연히 배당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S형 회사는 원래 비영리신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ESOP가 S형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를 허용하였음

바.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를 인출

- 종업원은 종업원 개별 계정에 배분(allocation)받은 주식에 대하여 인출(distribution)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음
 - 인출(distribution)은 현금과 주식 모두 가능하며 ESOP 참여자들이 주식과 현금이 들어있는 개별 종업원 계정을 가지고 회사를 떠남
 - 현금은 현금으로 인출될 것이고, 주식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주식으로 인출된 후 일정기간 내에 재구매가 가능하기도 함⁴⁹⁾
 - 따라서 분배된 주식이나 현금은 언제든지 인출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의 분배가 우리사주의 취득이라고 판단됨

- 종업원이 종업원 개별 계정에서 분배받을 수 있는 시기는 ESOP의 규약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종업원의 ESOP계정이 \$5,000를 초과하면 회사가 퇴직시기에 도달하기 전에 종업원에게 분배받도록 강제할 수 없음
 - 종업원이 퇴직하지 않으면, 분배는 70 1/2의 나이에 도달한 후 첫 해의 4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음
 - 분배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회사주식에 재투자하거나 개인퇴직계정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IRA)으로 연계할 수 있음

- 상황별 구체적인 인출시기는 다음과 같음
 - 정년퇴직 전에 회사의 퇴직으로 인한 분배는 근로관계를 종결한 해로부터 6년

49)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participant-distribution-rules

이내에 인출금을 지급하지만, 사망, 정년퇴직, 장애로 퇴직한 인한 인출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해의 다음연도에 분배가 시작됨

- 예외적으로 ESOP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했고 차입금을 완전히 상환하지 못했다면, 퇴직한 종업원은 차입금이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지만, 정년퇴직이나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 가능함⁵⁰⁾

□ 59.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해당하는 세금 및 가산세 10%를 과세함

- 다만 IRA로 이전하거나 적절한 승계플랜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나 사망 혹은 불구에 따른 퇴직인 경우는 제외함
- ESOP로부터 수취하는 일시 인출금은 평균적으로 우대소득에 적격할 가능성이 있고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과세됨⁵¹⁾
- IRA로 이전하거나 다른 회사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IRA나 적절한 승계플랜에서 인출할 때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됨

사. 우리사주에 대한 양도

□ 배정되어 개별 종업원 계정에 보유한 주식은 주식으로 인출하거나, 주식을 평가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일정기간 보유 후에 회사가 재구매할 수 있음

- 양도는 주식으로 인출 후에 양도하거나 배정을 통해 개별 종업원 계정에 보유된 상태에서 회사로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에 대한 별다른 과세혜택은 존재하지 않음
 -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회사가 재구매해야 하며, 비상장회사는 매년 공정가치를 외부에서 평가해야 함⁵²⁾

□ 소유가 집중된 C형 회사의 소유자가 ESOP에 소유주식을 양도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IRC 1042조)

- 소유가 집중된 C형 회사란, ESOP가 해당 C형 회사 지분의 30%를 소유한 회사

50)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participant-distribution-rules

51)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tax-incentives-contribution-limits

52)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employee-stock-ownership-plan

를 의미하며 주식을 양도한 후에 ESOP가 발행주식(outstanding stock)의 유형별 또는 무의결우선주와 무전환우선주를 제외한 발행주식의 전체가치의 30% 이상을 소유해야 함

- 주식을 양도한 소유자가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하고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계약이나 스톡옵션 외의 주식이어야 함
- 양도자는 양도 전 3개월에서 양도 후 12개월의 기간 안에 적격환 대체자산(국내 운용회사의 주식이나 사채임)을 구입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ESOP가 지불하는 가격은 적격하고 독립된 평가기관의 평가에 근거함
- 이렇게 ESOP에 양도된 주식은 해당 양도자, 해당 양도자의 특수관계자(형제자매, 배우자 등), 해당 회사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 주주 등에게는 배분될 수 없음(다만, 직계비속의 지분이 25% 이상이 아니라면 직계비속에 5%는 배분 가능함)⁵³⁾

2. 일본

- 일본의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제도는 운영방식에 따라 종업원지주회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여 과세를 달리함⁵⁴⁾
 - 기존 방식으로 신탁은행방식과 증권회사방식이 존재하며, 증권회사방식은 다시 전조합원방식과 소수조합원방식으로 구분됨
 - 2007년부터 미국의 종업원지주신탁(ESOT)을 참조하여 새롭게 신탁형 종업원지주(信託型従業員持株)인센티브플랜을 도입하였음
- 신탁은행방식은 참가자가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고, 도입기업 주식의 취득 및 관리를 신탁은행에 신탁하는 방식임
 - 종업원지주회는 이사장을 포괄대리인으로 하여 신탁은행과 주식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참가자는 위탁자 겸 수익자, 신탁은행을 수탁자로 하는 수익자 과세신탁임⁵⁵⁾

53)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tax-incentives-contribution-limits

54) 齊木秀憲, 従業員持株会の課税関係に関する一考察,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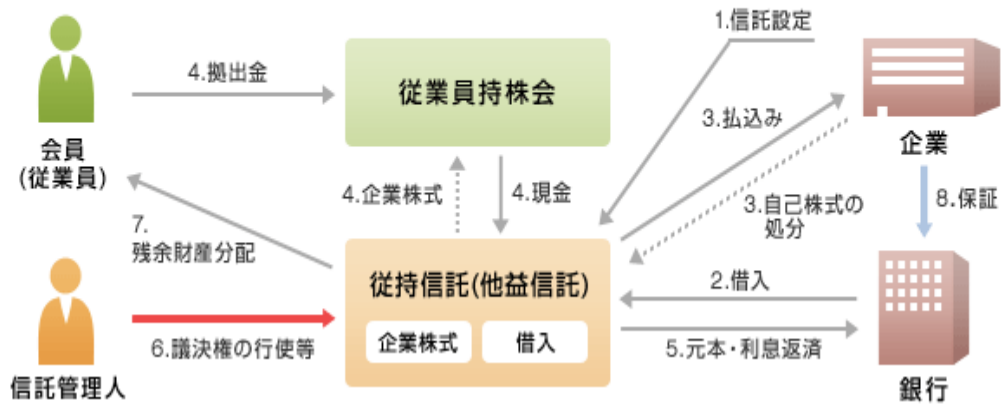
55) 수익자 과세신탁은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신탁이다.

- 증권회사방식은 종업원지주회에 참가하는 종업원이 참가자가 되며 일본 민법 제 667조 제1항에 근거한 조합으로 전조합원방식과 소수조합원방식으로 구분됨
 - 전조합원방식에서 종업원지주회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인 경우 종업원지주회가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며 참가자가 종업원지주회에 출자한 금액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지분이 됨
 - 전조합원방식에서 종업원지주회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 아닐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종업원지주회가 취득한 주식은 출자에 따라 참가자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참가자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고, 종업원지주회를 수탁자로 하는 수익자 과세신탁임
 - 소수조합원방식은 참가자가 자신에게 속하는 적립금 등을 인출하여 참가자의 공유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공유지분을 관리할 목적으로 종업원지주회에 신탁하고, 동 주식의 명의인을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으로 함
 - 이때 참가자가 인출한 적립금 등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종업원지주회에 직접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의 공유가 되며 참가자는 해당 주식의 공유지분을 종업원지주회의 이사장에게 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참가자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고 종업원지주회를 수탁자로 하는 수익자 과세신탁임

- 새롭게 도입된 신탁형 종업원지주(信託型従業員持株) 인센티브플랜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음
 - 신탁형 종업원지주체는 신탁형 기업이 설정한 신탁(이하 종지신탁(從持信託)이라 함)에서 지주회가 장래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을 일괄해서 취득하고 정기적으로 지주회로 매각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신탁이익을 기업의 종업원 등에게 배분하는 구조임
 - 종지신탁이 매입하는 주식의 형태에 따라 자기주식처분형, 신주식발행형, 시장매수형으로 구분됨
 - 결과적으로 회사가 신탁으로 자사주를 매각하고, 신탁은 종업원지주회로 주식을 매각하는 구조로 종업원은 신탁에 자금을 신탁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지주회에 출연하여 종업원지주회의 출연금 비율만큼 수익을 배분받음

[부도 1-1] 일본의 신탁형종업원지주 인센티브플랜

信託型従業員持株インセンティブ・プラン(E-Ship®)について



자료: 経済産業省(2008), 新たな自社株式保有スキームに関する報告書, p. 30

- 일본의 우리사주 제도 운영방식에 따라 거래단계별 과세특례를 살펴봄
 - 일본의 경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위한 회사의 차입과 출연은 존재하지 않으며 배정절차를 거치지 않음
 - 또한 신탁은행방식과 소수조합원방식의 경우 별도의 인출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차입 및 대여

- 기존의 신탁은행방식이나 증권회사방식은 참가자인 종업원이 자금을 마련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형태임
 - 회사나 종업원지주회가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하지 않으며, 다만 종업원이 출연하는 자금에 대하여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에 장려금은 존재함
- 신탁형 종업원지주 인센티브플랜에서는 신탁이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함
 - 회사는 종업원지주회에 직접 출연을 하지 않으며,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종업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회사가 종업원에게 저리 혹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어서 장려금은 있을 수 있음

- 종전 방식은 차입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논외로 하고 신탁형 종업원지주 인센티브플랜에서 신탁이 자금을 차입하고 회사가 이를 보증하는 경우에 이자비용이나 보증료를 회사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함
 - 의제수익자는 신탁의 모든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를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⁵⁶⁾ 신탁이 회사의 보증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는 의제수익자인 도입 기업의 소득금액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됨⁵⁷⁾
 - 신탁이 회사만을 의제수익자로 보는 수익자 과세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의 자산 및 부채가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보므로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은 회사의 수익 및 비용으로 봄
 -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지급한 보증료는 의제수익자인 회사의 비용이므로 도입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보증료가 수익이면서 동시에 비용이 되어 상쇄하므로 수익으로 보지 아니함⁵⁸⁾

-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종업원의 대여에 대하여 통상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종업원이 회사에 실제 지급하는 지급이자 차이가 5,000엔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회사가 종업원이 종업원지주회에 출연하는 금액 중 일부를 보조하는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지위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자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은 급여, 특별장려금은 상여로 원천징수됨)이고, 지급하는 기업은 급여(복리후생비)로서 손금산입됨⁵⁹⁾

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 일본의 경우 종업원지주회에 대하여 회사의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소득공제는 없음

56) 일본 국세청 www.nts.go.jp

57) 일본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58) 『新たな自社株式保有スキームに関する報告書』, 経済産業省, 2008, p. 29

59) 『持株制度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日本証券業協会, 2008, p. 17

- 회사가 종업원의 출연금 중 일부를 보조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다. 우리사주 취득

- 참가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면서 일반적인 취득자에 비하여 저가로 취득하는 경우 저가취득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이나 새로운 방식에 의하여 참가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하거나 종업원지주회가 취득한 우리사주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인 우리사주의 지분을 취득하므로 회사가 저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참가자의 저가취득은 있을 수 있음
 - 일본은 저가양도에 따른 참가자이익에 대한 과세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다만 매각시 세법의 배당환원가액을 따르도록 하여, 주식의 보유에 따라 1년 동안 받은 배당을 10%로 나눈 금액에 1주당 자본금을 50엔으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배당환원가액을 계산함(재산세 기본통달 188-2)⁶⁰⁾

라.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배정

- 일본의 경우 기존방식에 의하던 새로운 방식에 의하던 종업원지주회가 참가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기 때문에 배정단계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신탁은행방식은 종업원지주회가 참가자의 대리 역할에 불과함
 - 증권회사방식 중 전조합원방식은 참가자가 종업원지주회의 출자지분만을 가질 뿐 배정을 통하여 참가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는 않으며, 소수조합원방식은 종업원지주회를 통하지 않고 공유재산인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함
 - 신탁형 종업원지주 인센티브플랜은 종업원지주회의 이사장이 명의자가 되어 종업원지주회가 일괄 소유권을 가진 주식에 대해 공유재산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출연금 비율에 따른 지분만을 소유함

60) 일본 국세청 www.nts.go.jp

- 신탁의 종료에 따라 신탁의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신탁에서 발생되었던 수익이 종업원에게 귀속됨
 - 신탁 설정 당시에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고 회사가 의제수익자가 되지만, 신탁 행위의 규정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면 종업원이 수익자가 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신탁이 종료할 때까지 종업원주주회에 참가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종업원에 대해 수익권이 부여되고, 해당 신탁의 의제수익자인 회사로부터 새로운 수익자가 된 종업원에게 해당 신탁의 권리에 관한 자산(금전)이 이전함
 - 의제수익자인 회사가 새롭게 수익자가 된 종업원에 대해 해당 신탁의 권리에 관한 자산(금전)을 배부하면서 개별 신탁계약 내용에도 따르지만 이러한 배부가 종업원의 근로인센티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용역의 대가에 해당하고 회사는 급여로서 손금산입하고 배정을 받은 종업원은 급여소득으로서 과세됨
 - 신탁의 의제수익자인 회사에서 종업원주주회의 종업원에게 배정되는 금액은 손실보전준비금이나 신탁비용준비금을 제외한 최초 신탁금, 우리사주의 양도차익, 배당금 및 예금이자 가산되고, 우리사주의 양도차손 및 신탁보수, 이자비용, 채무보증료가 차감된 금액으로 함

마. 보유주식의 배당

- 참가자가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을 수취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특례 없이 과세되며, 운영 방식에 따라 소득의 취급만 달리함⁶¹⁾
 - 신탁은행방식은 수탁자인 신탁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수익자인 참가자에게 직접 귀속되기 때문에 참가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 전조합원방식은 종업원주주회를 민법상 조합으로 취급하므로 종업원주주회가 취득했던 주식은 출자에 따라 참가자에게 직접 귀속되며⁶²⁾ 따라서 배당금은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수익자인 참가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됨⁶³⁾
 - 다만, 종업원주주회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 등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은 종업원주주회에 귀속되고 배당금도 종업원주주회에 귀속되며, 참가자는 출자에

61) 일본증권업협회 www.jsda.or.jp/

62)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63) 소득세법 제24조

따른 지분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수익분배가 되어 참가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배당이 아니므로 배당공제가 적용되지 않음⁶⁴⁾

- 소수조합원방식에서 참가자가 각출한 적립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참가자의 공유가 되므로 이에 대한 배당금은 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참가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 신탁형 종업원지주 인센티브플랜에서 신탁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의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에는 과세되지 않고 신탁이 종료될 때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배분되어 참가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이와 달리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의 경우에는 종업원지주회가 수취한 배당 중 출연금에 따른 비율만큼 참가자에게 과세되며, 이때 종업원지주회가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세법상의 배당공제를 이용할 수 있음⁶⁵⁾

<부표 I -1> 지주회의 성격과 참가자 소득구분

		성격	우리사주 배당
신탁은행방식		- 참가자가 종업원지주회의 이사장을 포괄대리인으로 하여 신탁은행과 신탁계약	배당소득
증권 회사 방식	전조합원방식	- 인격없는 사단인 경우 종업원지주회를 실체로 보고 조합원이 출자하였다고 봄	기타소득
		- 인격없는 사단이 아닌 경우 민법상 조합으로 종업원에서 수익 직접 귀속	배당소득
	소수조합원방식	- 참가자의 공유재산으로 종업원에게 수익 직접 귀속	배당소득
차입방식 지주제도		- 지주회 외에 신탁이 존재하며 신탁 종료 전까지 소득은 이연하고 종료시 잔여재산을 참가자에게 귀속	근로소득
		- 참가자는 지주회의 지분을 취득	배당소득

자료: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64) 소득세법 제35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35-1(7), 소득세법 제92조

65) 이때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은 신탁의 수탁자로서 배당금이 일정액(2006년 기준 연간 3만엔)을 초과하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신탁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持株制度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日本証券業協会, 2008, p. 17)

바.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출

- 신탁은행방식과 소수조합원방식은 별도의 인출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 신탁은행방식은 취득시부터 참가자의 주식이고 종업원지주회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출의 절차가 없음
 - 소수조합원방식은 참가자가 공유재산으로서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므로 인출의 절차가 없음

- 전조합원방식의 경우 종업원지주회에 참여했던 종업원이 종업원지주회를 탈퇴하면서 주식으로 인출하여 주식을 수령하거나 인출금을 받을 수 있음
 - 전조합원방식 중 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 탈퇴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평가이익부분에 대하여 일시소득으로 과세되고, 이는 인격이 없는 사단이 아닌 경우에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경우를 세법상 보다 우대한 조치로 봄⁶⁶⁾

- 신탁형 종업원지주 인센티브플랜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종업원지주회를 탈퇴하는 시점에 인출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과세는 발생하지 않음⁶⁷⁾
 - 신탁형 종업원지주 인센티브플랜은 주식을 취득한 종업원지주회의 지분을 갖는 형태로 종업원지주회에 참여한 종업원이 종업원지주회를 탈퇴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기도 하고, 지분의 정산에 따른 인출금을 수령하기도 함
 - 인출대상이 상장주식으로 매각단위가 되는 지분이라면 실질주주등록을 하고, 매각단위가 되지 못하는 지분이라면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매각단위 상당에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받은 후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음
 - 인출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종업원지주회가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명의개서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을 규약에 정할 수 있음
 - 이처럼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주회로부터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발생하지 않음⁶⁸⁾
 - 인출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과세함

66) 齊木秀憲, 「從業員持株会の課税関係に関する一考察」, 2015, p. 107

67) 『持株制度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日本証券業協会, 2008, p. 17

68) 『持株制度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日本証券業協会, 2008, p. 17

사. 우리사주의 양도

- 종업원이 소유한 우리사주의 양도차익은 신고분리과세가 적용됨⁶⁹⁾
 - 신고분리과세는 우리나라의 분류과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특별한 과세혜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함

- 우리사주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종업원지주회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을 종업원지주회가 취득했던 때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⁷⁰⁾
 - 양도가액에서 종업원지주회가 취득했던 때의 가액인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식 취득 후 평가이익 증가분은 양도시점에 과세됨
 - 다만, 일본 국세청은 종업원지주회로부터 인출했을 때의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해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도 인정함⁷¹⁾
 - 이 경우에는 종업원지주회가 취득했을 때부터 인출할 때까지의 차액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영국

- 영국은 종업원주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⁷²⁾
 - 영국은 자본이득세율에 비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회사

69) 『持株制度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日本証券業協会, 2008, p. 17

70) 일본증권업협회 www.jsda.or.jp/up_images/P_20111228121102_6.pdf

71) 일본 국세청 www.keisan.nta.go.jp/h26yokuaru/shotokuzei/shotokukingaku/kabushikijotoshotoku/seidogaiyo/jugyoimochikabukai.html

72) the promotion of employee ownership and participation(2014), EU, p.25 <표1> 중 독일, 프랑스, 영국을 발췌한 자료로 종업원의 재무적 참여제도를 이익배분제도(PS)와 주식소유제도(ESP)로 나누고 법적구조(-1~+3), 재무적 혜택(-2~+4), 정책적·사회적 지원(-1~+3)의 측면에서 제도를 살펴보고 점수를 부여함. 제도를 촉진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보다 높은 점수가 부여됨. 표에 따르면 영국이 종업원의 주식소유제도에 대한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영국은 전체 EU 국가 중 ESP의 제도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였음.

국가	법적구조		재무적 혜택		정책적·사회적지원		점수	
	PS	ESP	PS	ESP	PS	ESO	PS	ESP
독일	0	2	0	1	0	2	0	5
프랑스	3	2	4	3	3	2	10	7
영국	0	3	0	4	0	3	0	10

가 자본이득의 형태로 종업원에게 보상하면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이득세율로 과세되는 혜택이 있음

- 또한 영국은 개인에 대하여 연간 일정액의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 면제하며, 과세되어도 비례세율(flat rate)로 과세하고 있음⁷³⁾

□ 영국은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hare ownership)를 장려하기 위하여 종업원과 회사에 과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과세혜택을 주는 제도는 주식보상제도(Share Incentive Plan, 이하 SIP라 함), 스톡 옵션저축(Savings-Related Share Option, 이하 SAYE라 함), 회사주식옵션제도(Company Share Option Plans, 이하 CSOP라 함), 회사관리보상제도(Enterprise Management Incentive Plans, 이하 EMI라 함)가 있음⁷⁴⁾
- 이 중 SIP는 종업원에게 주식을 배분하기 위한 중간실체로 신탁을 이용하고 주식을 직접 구입하는 제도로 종업원에게 주식주를 배부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조합제도와 비교 가능성이 높음
- 이와 달리 SAYE, CSOP, EMI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제도로 종업원의 주식 소유를 촉진하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주식조합제도와 비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 SIP는 Finance Act 2000을 통하여 신설되었으며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소유주회사가 종업원에게 주식을 배분하기 위한 중간실체로서 신탁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업원에게 주식을 부여함
- 주식을 부여하는 방법은 회사가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거나(무상주) 종업원이 유상으로 매입하는 방법(파트너십주), 종업원이 유상으로 매입하면 이에 대응하여 회사가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방법(대응주), 기존에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배당주) 등 다양함
- 무상주는 연간 3,000파운드를 한도로 하며, 파트너십주는 종업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1,500파운드를 한도로 종업원의 소득에서 제외함

73) 영국에서 2013~2016년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개인의 과세소득에 따라 18%나 28%의 비례세율이고, 소득에 대한 세율은 0%~45%의 누진세율임

74) the promotion of employee ownership and participation(2014), EU, pp. 129~130

- 대응주는 종업원이 매입한 파트너십주에 대응하여 회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으로 파트너십주 한 주당 2주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배당주는 배당 중 1,500파운드를 한도로 함⁷⁵⁾⁷⁶⁾
- SAYE는 Finance Act 2000을 통하여 신설되어 영국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임
- SAYE는 종업원의 저축을 가지고 고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방법으로 모든 종업원이 제도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대적으로 운용기간이 짧다는 특징을 가짐
 - 종업원은 월 500파운드까지 저축을 할 수 있고, 해당 계약기간 말(3년이나 5년)에 주식을 구입하거나 옵션을 포기하고 저축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옵션 행사가격은 옵션부여일의 시장가치보다 20% 할인된 가격임
 - 종업원은 계약기간 말에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와 추가적인 이자⁷⁷⁾에 대해 과세되지 않고, 주식을 취득시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사회보장보험료도 과세하지 않음⁷⁸⁾
 - 종업원이 SAYE제도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며, 취득한 주식을 ISA나 연금에 넣게 되면 과세하지 않음
- CSOP는 1984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199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정되었으며 회사에 재량권을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회사는 적격한 임직원을 선택하여 해당 회사의 주식을 행사일에 행사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며(단, CSOP제도에 참가한 자의 지분이 회사 전체 지분의 30%를 넘지 못함), 이를 국세청이 승인한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⁷⁹⁾
 - 종업원에게 고정된 주식가치로 30,000파운드까지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주고, 옵션부여일 및 행사일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⁸⁰⁾

75) 영국 국세청 www.gov.uk/tax-employee-share-schemes/share-incentive-plans-sips

76) 한도부분은 최근 내용으로 반영

영국 국세청 www.gov.uk/hmrc-internal-manuals/shares-and-assets-valuation-manual/svm110040

77) 계약기간이 3년이 되는 경우 추가이자 없음, 5년이 되는 경우 연 0.39%의 추가이자를 지급한다.

영국 국세청 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87463/changes-to-saye-bonus-rates.pdf

78) 영국 국세청 www.gov.uk/tax-employee-share-schemes/save-as-you-earn-saye

79) ESSUM48200

- 옵션 부여일과 행사일 간에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자본이득은 옵션부여일(grant) 이후 최소 3년은 보유하고, 10년 안에는 행사하여야 하고, 행사시기에 영국 국세청이 승인했으며, 옵션이 규정에 따라 행사되었다면 과세되지 않음
 - 옵션 부여일로부터 행사일 간의 기간이 3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퇴사를 통해 행사된 경우라면 과세되지 않음
 - 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추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EMI는 Finance Act 2000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소규모회사에 적합한 종업원이 재직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임
- 총자산 3천만파운드 이하 회사는 EMI제도를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금융업, 농업, 자산개발업, 법률서비스업,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적용을 배제함
 - 제도 운용을 위하여 영국 국세청의 승인을 요하지 않지만 EMI에 의하여 옵션이 부여된 경우에는 92일 이내 국세청에 신고를 요함
 - 이 제도에 의하여 부여되는 옵션은 1인당 250,000파운드(이 한도에는 CSOP에 의해 승인된 금액을 포함함)나 회사당 3백만파운드를 한도로 함
 - 종업원이 회사주식을 구입한 가격과 그 주식의 시장가치의 차이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종업원이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세가 과세됨

<부표 1-2> 영국의 종업원지주제도의 종류 및 특징

<p>SAY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혜택을 제공 - 월 500파운드까지 저축 가능 - 옵션가격은 20% 할인 가능 -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함 - 저축기간말에 일반적인 행사가능기간은 6개월 	<p>CSO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혜택을 제공 - 인별 30,000파운드의 한도 - 재량적이고 광범위한 기준 - 3년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 과세혜택 - 조기행사의 경우 근로소득세 -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음
<p>S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혜택을 제공 - 신탁을 통해 외부에 주식소유 - 연간 1,500파운드까지 세전소득에서 파트너십 주식을 구입 - 개별 주식 구입에 대하여 2배까지 매칭 - 연간 3,000파운드까지 무상주 - 5년 이후에 조기인출은 급여소득세 면제 -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함 - 퇴직자는 이 제도에서 반드시 탈퇴해야 함 	<p>EM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혜택을 제공 - 소규모 트레이딩 회사와 그룹에 적용 - 3천만파운드의 총자산기준 - 250,000파운드의 인별 한도 - 옵션에 따른 이익이 과세되지 않음 - 해외거점활동을 할지라도 영국 회사는 자격이 있음

자료: 영국의 법률회사(www.uk.practicallaw.com)에서 정리한 ESS규정을 저자가 재정리

80) 옵션 부여일에 행사가격과 부여일의 시가, 옵션 행사일에 행사가격과 행사일의 시가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는 소득이며, CSOP에서는 과세하지 않음

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차입 및 대여

- SIP제도에서 주식의 취득자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출연을 통해 확보됨
 - SIP제도에서는 회사가 신탁을 설립하여 설립된 신탁에 자금을 출연하도록 함
 - 회사의 출연을 통해 취득자금이 확보되는 무상주, 대응주, 배당주와 달리 파트너십주의 재원은 종업원의 급여에서 일부를 적립한 것이지만⁸¹⁾ 외부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이나 보증비용이 발생할 여지는 없음
 - 다만, 차입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식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회사에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 회사가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신탁에 출연한 자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⁸²⁾
 - 회사출연금에 대한 공제는 출연한 회계기간에 가능함
 -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9개월 이상 지난 후에 SIP가 승인된 경우에는 SIP가 최종승인을 받은 시기에 공제할 수 있음⁸³⁾
- 파트너십주의 경우 종업원의 계산으로 보유주식의 배당을 주식매입에 사용할 수 있음⁸⁴⁾
 - 파트너십주 취득을 위해 종업원의 급여에서 적립한 금액은 종업원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 종업원이 파트너십주를 취득하기 위해 급여에서 적립한 금액이 회사로부터 신탁에 이전될 경우 SIP제도는 수탁자인 신탁이 신탁의 계산이 아닌 종업원의 계산으로 보유주식의 배당을 주식매입에 사용할 수 있음
 - 주식매입에 사용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세의 면제 외에 추가적인 소득공제는 없음⁸⁵⁾

81) 종업원의 급여에서 일부를 적립하는 것에 대한 과세혜택은 “다. 우리사주의 취득”에서 설명함

82) paragraph 7 Sch4AA ICTA88

83) TSEM5055, 영국 국세청 www.hmrc.gov.uk/manuals/tsemmanual/tsem5055.htm

84)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으로 매입하는 주식을 배당주라고 한다.

85) 영국 국세청 www.hmrc.gov.uk/manuals/cgmanual/cg56490.htm

다. 우리사주 취득

- 영국의 경우 우리사주 취득시점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 종업원의 입장에서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무상주와 대응주는 주식의 취득가치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종업원의 급여를 적립하였다가 그 자금으로 구입한 파트너십주에 대해서도 종업원이 파트너십주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위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파트너십주는 세전급여에서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주식의 매입자금을 제외하고 과세소득이 되므로 100% 소득공제의 효과가 있고, 한도 없이 과세 제외됨
 - 배당주는 SIP에 보유한 우리사주에 배당이 발생하면 이 배당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때 소요되었던 배당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우리사주의 배당수입이 우리사주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면 100% 소득공제를 하는 효과가 있고 한도 없이 과세 제외됨

라.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배정

- 종업원은 무상주, 대응주, 파트너십주가 종업원에게 부여된 날이나 배당주의 경우 신탁이 종업원을 대신하여 취득한 날에 신탁으로부터 해당 주식에 대해 완전하게 권리를 가진 것으로 취급
- 영국은 별도의 배정 절차 없이 우리사주가 취득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취득시점에 과세하지 않음
- 회사의 출연금으로 신탁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신탁의 입장에서 보면 신탁이 주식을 종업원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자본이득세가 발생해야 하지만 신탁이 주식을 취득했을 때부터 5년 내에 종업원이 취득한 것이라면 신탁의 자본이득세는 면제됨

마.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

- 회사는 신탁에 우리사주의 추가 구입을 목적으로 현금배당을 지급할 수 있고 3년 이상 보유한 배당주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신탁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취한 현금배당을 배당주 취득에 재투자할 경우 배당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⁸⁶⁾
 - 신탁이 배당을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데 재투자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주식을 구입하는 데 재투자하더라도 국세청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SIP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과세됨⁸⁷⁾

바.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 인출

- 종업원이 5년 이상 신탁에 보유한 주식을 신탁에서 인출하는 경우에 종업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는 않으며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를 달리함
 -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세되는 가액이 작아짐(<부표 I-3> 참조)
 - 무상주와 대응주의 경우 3년 내에 주식을 인출하면 인출시 주식의 시장가치로 과세하고, 3년부터 5년 내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무상주와 대응주를 종업원에게 배정시 시장가치와 인출시 시장가치 중 낮은 가액으로 과세함
 - 다만, 5년 내에 주식을 인출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종업원이 주식으로 인출하는 것 외에 주식을 평가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주식을 현금대체자산으로 전환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함

86) ITTOIA05/S770

87) ITTOIA05/S392-S396

〈부표 1-3〉 우리사주의 유형별 인출시 과세

주식의 종류	3년 내에 SIP로부터 주식인출	3년부터 5년 내에 SIP로부터 주식인출	5년 후에 SIP로부터 주식인출
무상주와 대응주	인출시 시장가치로 소득세 과세	종업원이 주식을 취득했을 때 시장가치와 인출시 시장가치 중 낮은 가액으로 소득세 과세	소득세 없음
파트너십 주식	인출시 시장가치로 소득세 과세	주식의 취득원가 인출시의 시장가치 중 낮은 가액으로 소득세 과세	소득세 없음
배당주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소요된 배당은 해당 주식을 인출한 연도에 배당으로 과세됨	소득세 없음	소득세 없음

자료: 영국 ESOP관련 비영리단체(ifs proshare)의 자료로 저자 재구성

사. 우리사주의 양도

- SIP의 보유주식은 5년 내(배당주는 3년 내)에 양도할 수 없으며, SIP제도에서 양도하기 전까지 보유된 주식은 자본이득세가 면제됨⁸⁸⁾
 - SIP에서 주식을 인출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본이득세가 과세됨⁸⁹⁾
 - 종업원이 구입한 주식을 개인자산관리계정(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라 함)이나 연금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ISA나 연금으로 이전한 부분에 대한 과세는 ISA나 연금에서 인출시 과세됨
 - 면제요건은 ISA를 제공하는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SIP에서 인출하여 90일 이내에 ISA로 이전하여야 하며 ISA의 한도인 15,250파운드 이내일 것임⁹⁰⁾

88) ESSUM20150

89) Section 515 ITEPA 2003

90) 영국 국세청 www.gov.uk/tax-employee-share-schemes/transferring-your-shares-to-an-isa

- 기존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SIP에 양도하고 이 자금으로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면 자본이득세를 이연하는 이연면세제도(roll-over relief)를 운영함⁹¹⁾
 - 기존 주주가 그들 회사의 모든 종업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비상장주식을 그들 회사의 SIP에 처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 종업원지주인 종업원이 원래 회사로부터 저가나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과세되어야 하지만 처음 2,000파운드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종업원지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 연계 되는 양도차익 중 50,000파운드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이는 SIP에 한정되는 면세조치는 아니며 회사 의결권의 25% 이상을 가지는 특수 관계인의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됨

4.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종업원이 지주가 되는 방법 중 하나로 주식구입제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주식구입제도는 다음과 같음
 - 종업원주식구입제도(Employee share purchase plan, ESPP), 무상주제도(Free share plan), 제한주식제도(Restricted share plan, RSP), 업적주식제도(Performance share plan, PSP), 이연주식제도(Deferred share plan, DSP) 등

- 종업원주식구입제도(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ESPP)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간격으로 공정시장가치나 공정시장가치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종업원이 고용주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ESPP는 일반적으로 주식옵션에 비하여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짧고, 참여할 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가 넓음
 - ESPP는 종업원이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거나 회사가 재무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회사주식을 사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사주를 종업원을 대신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제3의 관리자를 두는 방법이 있음⁹²⁾

91) 영국 국세청 www.gov.uk/tax-sell-shares/relief

92) www.cch.ca/newsletters/FinancialPlanning/november2008/article3.htm#Notes

- 무상주제도, RSP, PSP, DSP는 종업원에게 자금을 받지 않고 회사주식을 부여하는 제도로 회사의 확약이 필요함
 - 이러한 주식은 배당에 대한 자격이 없거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의결권이 없는 등 일정한 조건하에 부여되기도 함
 - PSP는 업적결과에 근거하여 수여된 주식의 조건이나 주식 수가 결정됨
 - DSP는 사망이나 은퇴시까지 지급이 지연됨

- 캐나다의 ESOP는 종업원이 회사의 소유주로부터 주식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임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을 하고 출연된 자금으로 고용주인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정하는 단계는 없음
 - 다만, 종업원은 우리주식을 취득한 후 보관계정에 넣어둘 수 있음
 - 고용주는 종업원의 주식구입과 관련하여 무상 혹은 저리의 차입금 제공, 무상주 제공, 대응주 지급과 같은 재무적인 보조나 다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캐나다는 종업원의 회사주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혜택을 제공함

- 캐나다의 ESOP를 우리나라의 거래흐름에 맞추어 검토함
 - 캐나다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우리사주의 배정,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 인출 단계를 거치지 않음

가. 우리사주의 취득을 위한 차입이나 대여

- 캐나다의 경우 주식을 구입하는 주체가 종업원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취득자금을 차입하지 않음
 - 다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종업원에게 무상주나 대응주 등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이 가능하고,⁹³⁾ 이러한 차입은 회사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도 회사가 공제함
 - 캐나다는 종업원의 주식취득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가 종업원에게 무상

93) www.ca.practicallaw.com/4-503-4465?source=relatedcontent#a186288

혹은 저리로 대출하며, 이는 종업원에게는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혜택이므로 이자의 차이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우리사주취득을 위한 자금차입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음

나. 우리사주 취득

- ESPP는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나 시장가치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임
 - 종업원이 아닌 임원 등도 ESPP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업원이 매입할 수 있는 한도나 회사가 제공하는 할인에 한도는 없음
 - 이 제도하에서 고용주가 종업원의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입할 수 있고 종업원이 지급하는 취득자금에 대응하여 회사가 지급을 하거나 추가적인 무상주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주로 종업원의 급여에서 차감됨
 - 이때 종업원이 공정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할인해서 구입한 것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됨⁹⁴⁾
- 무상주, RSP, PSP, DSP는 대가의 지불 없이 주식을 얻게 된 것이므로 취득했던 주식의 공정시장가치가 모두 과세됨
 - 다만 해당 주식이 신탁에 보관되었고 주식을 발행했던 회사가 신탁에서 해당 주식을 재매입한 경우라면 취득가액이 공제됨
 - 반면 주식이 직접 종업원에게 발행되었고 적용이 제한된 기간 중에 인출되었다면, 종업원은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⁹⁵⁾
- ESPP, 무상주제도, RSP, PSP, DSP에서 모두 소유자인 회사가 공제받는 부분은 없음

다.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

- 종업원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특별한 과세혜택은 없음

94) www.ca.practicallaw.com/5-509-6599?source=relatedcontent

95) www.ca.practicallaw.com/5-509-6599?source=relatedcontent

라. 우리사주의 양도

- 양도시 공정가치인 판매가와 취득원가인 취득시 공정가치의 차이가 자본이득으로 과세되며 주식구입제도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함
 - 예를 들어 ABC회사의 주식이 종업원에게 \$10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고, 당시 종가는 \$12일 때 종업원이 회사주식에 \$5,000를 출연하여 500주를 구입하였고 보관계정(brokerage account)에 해당 주식을 보유할 경우
 - 취득시 \$1,000의 이익(500주×\$2)은 근로소득이 되고 한계세율로 과세되며 이 후 종업원이 주식을 주당 \$15에 전부 매각하였다면 양도시 \$1,500(500주×\$3)이 자본이득세로 과세될 것임
 - 2011년 초부터 캐나다 국세청은 고용주가 우리사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ABC회사는 소득세 \$460을 원천징수하여 캐나다 국세청에 납부해야 함
 - 다만, 자본이득의 50%는 종업원의 소득에 포함되어 종업원의 한계세율로 과세되고 자본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본손실의 50%는 종업원의 자본이득을 차감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이때 자본이득은 직전, 직후 과세연도를 포함함⁹⁶⁾

마. 기타의 과세혜택⁹⁷⁾

- 캐나다의 지방세 중에는 우리사주에 대하여 거래단계에서의 과세이연이나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존재함⁹⁸⁾
 - 세액공제는 종업원이 구입한 주식 취득가액의 20%를 공제하며 2015년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hare ownership plan, ESOP)와 종업원벤처캐피탈(employee venture capital corporation, EVCC)의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2,000임⁹⁹⁾
 - 세액공제 한도초과는 환급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만약 종업원이 2016년의 최초 60일 이내에 ESOP와 EVCC의 주식을 구입했다면, 종업원은 소급하여 2015년의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2016년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2차년의 과세소득간에 세액공제를 나눌 수 있음

96) www.ca.practicallaw.com/5-509-6599?source=relatedcontent

97) 캐나다 국세청 www.cra-arc.gc.ca/E/pub/tg/5010-pc/5010-pc-15e.html#P154_17525

98)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미니토바주 등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음

99) www.mit.gov.bc.ca/icp/esop

5. 호주

- 호주의 회사는 종업원에게 종업원주식제도(Employee share schemes, ESS)에 의해 회사주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종업원주식신탁(employee share trust)을 이용함
 - 종업원주식신탁에서 종업원은 신탁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사는 종업원협회(신탁)에 의해 보유되지만 과세관청은 종업원이 해당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취급함
 - 따라서 신탁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차입을 하거나 종업원이 신탁에 출연하지 않으며,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의 주식을 저가취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절차가 없음
 - 신탁은 종업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보관하기 위해 이용됨
 - 따라서 호주에서는 종업원이 회사의 주식을 저가취득하거나 무상취득하고, 보유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받으며, 이후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만 존재함

- 호주에서 ESS가 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요건과 종업원 혜택을 위한 종업원요건, 혜택별 특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일반요건)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ESS의 지분은 회사나 그 회사의 지주 회사의 지분이어야 하고, 종업원이 해당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 이 제도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ESS 지분은 보통주와 관련되어야 하며, ESS 지분의 취득 후에 종업원과 그 특수관계자는 10% 미만 소유권 및 의결권 기준(2015년 6월 30일 후에 취득하는 경우)을 충족하여야 함¹⁰⁰⁾¹⁰¹⁾
 - (종업원요건) 종업원이 ESS 지분을 취득한 회사의 주된 사업이 인수, 주식·증권·다른 투자대상의 보유 및 판매를 하거나, 종업원이 해당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자회사나 지주회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고용되었다면 종업원은 과세혜택의 자격이 없음
 - 혜택별 특정요건은 혜택을 과정보로 정리하면서 조세혜택의 요건으로 설명함

100) 호주 국세청 www.ato.gov.au/General/Employee-share-schemes/Employers/Types-of-ESS

101)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 소유권 및 의결권의 기준은 5%였다.

가. 우리사주 취득

- 종업원이 회사의 소유주로부터 주식을 저가 혹은 무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저가 구입이나 무상 구입에 따른 이익이 있으며, ESS규정이 적용되면 과세혜택의 방식에 따라 이 이익에 대해 다른 방식의 혜택을 제공함
 - 과세혜택은 종업원이 주식을 저가 혹은 무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주식 혹은 주식인수권이 할인 없이 제공된다면 ESS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통상의 자본이득 과세규정이 적용됨

- ESS규정이 적용되면 우리사주의 저가 구입이나 무상 구입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과세혜택이 부여됨
 - 신설기업(start-up)혜택은 종업원에게 주식을 발행할 때 15%까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고, 해당 할인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자본이득세의 과세시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원가는 발행일의 시장가치로 함
 - 만약 15% 이상 할인 발행하여 한도를 초과할지라도 주식의 판매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됨¹⁰²⁾
 - 과세후 공제(taxed-upfront)혜택은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할인액은 공제없이 종업원의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정액으로 1,000호주달러까지 소득공제함¹⁰³⁾
 - 과세이연(taxed-deferred)혜택은 취득시 할인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시점까지 과세하지 않고 이연하는 방식임

(1) 신설기업(start-up)혜택의 요건

- 신설기업(start-up)혜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업원이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였을 때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과세함
 - 신설기업이란, 상장되지 않고 설립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로 전년도 매출액이 5천만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호주거주 납세자로 하며¹⁰⁴⁾ ESS 지분은 신설기업(start-up company)의 것이어야 함

102) 호주 공인회계사협회 www.cpaaustralia.com.au/

103) 예제를 참고. www.centricwealth.com.au/ArticleDocuments/201/Aspects_taxation_employee%20share%20schemesJuly2012.pdf.aspx?Embed=Y

104) 호주 국세청 www.ate.

- 주식할인은 주식을 제공받았던 당시 시장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ESS지분이 주식인수권이라면 권리를 행사하면서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은 주식인수권이 제공될 당시 보통주의 시장가치를 초과하여야 함
- ESS하에서 종업원은 ESS 지분을 3년 동안 보유(혹은 그 지분의 결과로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종업원이 근로계약을 종결할 때까지 보유해야 함(다만, 회사가 인수되었고 3년 동안 보유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3년 미만 보유가 가능하며 서면으로 국세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요함)
- 종업원은 신설기업(start-up)혜택으로 ESS 지분을 취득했다라도 회사가 요구하면 다른 혜택의 ESS를 취득하거나 혜택이 없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2) 과세후 공제(taxed-upfront)혜택의 요건

- 과세후 공제(taxed-upfront)혜택은 과세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정액으로 1,000호주달러를 소득공제하며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음
 - 호주 거주자인 3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 중 75% 이상의 종업원에게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함
 - 종업원이 ESS 지분(또는 그 지분의 결과로 취득한 주식)을 최소 3년 이상(3년 이내에 계약이 종결할 때는 그 때까지) 보유해야 하며,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때 과세함
 - 종업원은 이 제도의 조건에 따라 ESS 지분의 몰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야 함
 - 몰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은 실제로 지분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연하는 것이 타당함
 - 실질적인 위험은 사실판단을 통하여 판단하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정 업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든지 고용의 최소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몰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봄
 - 반면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나 종업원의 요구에 의한 몰수의 허용 등은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보지 않음¹⁰⁵⁾

105) 호주 국세청 www.ato.gov.au/general/employee-share-schemes/in-detail/restrictions-and-forfeiture/ess-real-risk-of-forfeiture/?page=3#Real_risk_of_forfeiture_test

- ESS지분이 제공된 과세연도에 종업원의 과세소득은 180,000호주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ESS지분은 종업원의 과세소득 범위 안에서 종업원이 결정할 수 있음

(3) 과세이연(taxed-deferred)혜택의 요건

- 과세이연(taxed-deferred)혜택은 무상 혹은 저가로 취득시 취득시점에 과세되지 않고 특정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특정시점은 취득대상이 주식인지, 주식인수권인지에 따라 달라짐
 - 취득대상이 주식인 경우에 특정시점은 취득대상이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에 제한이 없고 주식의 몰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이 없을 때, 종업원이 근로를 그만 둘 때, 종업원이 주식을 취득한 지 15년이 경과한 때 중 빠른 날로 함
 - 주식인수권의 경우에는 주식인수권의 처분에 제한이 없고 몰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때, 종업원이 근로를 그만 둘 때,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해당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몰수위험이 없고 해당 주식의 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때, 종업원이 주식인수권을 취득한 후 15년이 경과한 때 중 빠른 날로 함¹⁰⁶⁾
- 과세이연혜택을 위한 요건은 급여출연형(Salary sacrifice)와 몰수위험부담형(Real risk of forfeiture)에 따라 달라짐
 - 급여출연형은 ESS 지분을 그들의 고용주나 지주회사로부터 급여출연약정에 따라 취득하는 것으로 주식은 시장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이연과세한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3년 이상 근무한 호주거주자인 종업원의 75%가 ESS지분을 보유하고 이를 등록해야 하며, 일 년에 5,000호주달러 이상의 주식을 받아서는 안됨
 - 몰수위험부담형은 주식이 몰수될 실질위험을 가지면서, 3년 이상 근무한 호주거주자인 종업원의 75% 이상이 ESS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등록해야 함

106) 호주는 세법개정을 통하여 이연의 기간을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나.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

- 종업원이 취득한 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특별한 과세혜택은 없음

다. 우리사주의 양도

- 신설기업(start-up) 혜택은 종업원이 우리사주를 저가취득을 한 경우에 얻은 이익은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이연하여 취득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을 양도했을 때 자본이득으로 과세함
 - 자본이득이나 손실은 해당 ESS주식이나 주식인수권을 취득한 종업원이 지불한 비용에 따라 결정됨
 - 신설기업이 ESS에 할인제공한 지분은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업원이 3년 이상 보유시 과세하지 않음
- 과세후공제 혜택은 양도 이전 12개월 이상 보유시 자본이득세가 50% 면제됨
- 과세이연 혜택의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50%의 자본이득세가 면제됨¹⁰⁷⁾

107) www.centricwealth.com.au/ArticleDocuments/201/Aspects_taxation_employee%20share%20schemesJuly2012.pdf.aspx?Embed=Y

〈부표 I -4〉 우리사주제도 과세특례의 국가별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1. 취득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은 인정이자 아니고, 회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아님 - 이자비용은 조합의 비용 - 보증수수료는 발생할 여지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이 차입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무상 혹은 자가 차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이자비용뿐 아니라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회사출연금 소득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지신탁이 차입하는 경우 이자비용은 회사의 비용이고, 보증수수료는 회사의 수익과 비용으로 상쇄하여 과세소득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 혹은 저가차입이나 이자비용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은 회사가 직접함 - 종업원이 무상 혹은 저리로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요건: 신탁이 회사나 회사의 지주회사의 보통주 소유 및 지분율기준을 충족해야 함 - 종업원 요건: 종업원이 속한 회사의 임종 제한 - 혜택별 요건: 신설기업혜택, 과세 후 공제혜택, 과세 이연혜택별 요건이 별도로 규정됨
2.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 조합원소득에서 출연금 소득공제 (4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소득에서 공제하며 총급여액의 25%를 한도로 함 - 종업원 출연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출연하는 부분은 없음 - 종업원이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고, 회사가 보조하여 출연하는 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출연금은 손금산입 - 종업원은 신탁에 출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출연 없음 - 종업원 출연 없이 직접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출연 없음 - 종업원 출연 없이 직접구매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3. 우리사주 저가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 400만원 이하 과세없음 - 출연금 400만원 초과시 저가취득액(=시가의 70% - 취득가액)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시점에 취득가능하므로 과세혜택없고 저가취득은 인출에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취득에 대한 과세는 없음 - 종업원주주의 저가취득은 평가방식을 세법에서 배당환원방식으로 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주, 대용주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대가의 지급 없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만 과세하지 않음 - 파트타임주주의 취득가액은 급여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 배당주의 취득가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시의 공정시장가치와 부담액의 차이만큼 과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기업 혜택의 경우 과세없음 - 과세후 공제 혜택은 저가로 취득시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정액으로 1,000호주달러를 공제함 - 과세이연 혜택은 저가로 취득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시점까지 과세이연함 - 취득에 할인이 적용된 경우라면 자본이득과세규정을 적용
4. 우리사주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출연분 배정은 과세없음 - 회사출연분 배정은 일부과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도초과분 근로소득 ② 한도: Min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정시 과세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에게 우리사주가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정시 과세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이 주식의 취득시점부터 종업원에게 부여할 때까지 자본이득은 5년 내 배정하는 경우라면 과세하지 않음 - 신탁이 종업원에게 한 주식배정은 과세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과세혜택이 없음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5. 보유주식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 우리사주예탁, 소액주주, 보유주식액면 1천8백만원이하 - 예탁 후 1년 이내 인출시 인출일에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수취배당은 전체 과세 - C형 회사 수취배당은 합리적인 배당인 경우 전체 공제. - 합리적 배당은 ESOP의 차입금상환, 회사주식 채투자, 종업원에게 전달되는 배당임 - S형 회사 배당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종업원지주제도의 방식에 따라 다름 - 종업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현금배당 중 우리사주 추가구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시 과세하고 특별한 과세혜택은 없음 	
6. 우리사주 조합에서 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출금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다름 ① 2년 미만 근로소득 과세하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배정시점에 과세된 경우 및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제외 ② 2년 이상 기간따라 50%-100%까지 소득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출시 자본이득으로 과세 - 회사주식에 재투자하거나 IRA로 승계되는 경우 과세이연되며 이후 인출시 통상소득으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종업원방식은 인출시 과세 - 새로운 방식은 인출시 과세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으로 인출하면서 5년 이상 보유 후 인출하면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하지 않음. 단, 적격사유 있음 - 현금이나 현금대체자산으로 인출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7. 우리사주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시점 과세 제외하고 과세 - 우리사주조합에 퇴직으로 양도하는 일정요건의 우리사주는 과세 제외 ① 1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예탁, 보유 우리사주 액면가액 1천8백만원 이하 ② 양도차익이 3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과세혜택 없음 - 예외적으로 ESOP에 소유가 집중된 C형 소유주가 양도하는 일정요건 충족시 과세이연 ① 양도 후 ESOP가 30% 이상 소유 ② 양도자가 3년 이상 보유 ③ 양도자가 적격자산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을 보유한 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며 분리과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P의 보유주식 양도시 자본이득세 면제 - SIP에서 인출 후 양도시 자본이득세 과세하지만 ISA나 연금계정으로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음 - SIC에 한정되는 면세조치는 아니지만 종업원지주인 종업원은 2,000파운드까지의 주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익 중 50,000파운드까지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할 때 자본이득세 과세하고 자본이득은 양도가액과 취득시 공정시장가치와의 차이임 - 양도에 대한 과세혜택은 아니지만, ESOP와 EVCC를 함하여 주식취득가액의 20%(최대 \$2,000)를 세액공제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기업(start-up) 혜택의 경우 양도시점에 과세하나 3년 이상 보유시 과세하지 않음 - 그 외의 혜택의 경우 양도시점에서 과세하지만, 과세후 공제혜택의 경우 12개월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본이득세의 50% 감면함

부 록 II. 설문조사 개요 및 문항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우리사주조합 설립 경험이 있는 기업과 해당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상의 개선점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2016년 3월말 현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우리사주조합 설립 기업의 경영진 및 근로자
표본크기	경영진: 125명 / 근로자: 234명
표본추출방법	전수조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팩스이메일 조사
조사기간	2016년 4월 6일 ~ 4월 27일(22일간)

3. 조사내용

가. 경영진

구분	항목
기업 현황	· 회사 설립년도
	· 2015년 종업원 수
	· 2010년 대비 2015년 종업원 수 증감
	· 업종
	· 자본금 규모
	· 연간 매출액 규모
	· 주식의 상장·등록 유형

구분	항목
노사관계	· 법정 기업규모
	· 우리사주조합 결성 여부
	· 노동조합 설립 여부
	· 노동조합 결성년도
	· 소속 상급단체
	· 노사분규 발생 여부
	· 연도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 연도별 근로손실 일수
	· 연도별 참여 근로자 수
	· 2010년 이후 노사분규의 주요 원인
	· 노사분규 해결 방법
	·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 노력
	·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근로자 노력
·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경영자 노력	
우리사주제 운영실태 및 인식	· 우리사주제 도입년도
	· 우리사주제 도입목적
	· 우리사주조합원 수
	· 실제 주식보유 조합원 수
	· 조합 보유 주식 수
	· 조합 보유 주식 지분율
	· 조합 보유 주식 중 회사 출연 자사주 비중
	· 기업의 우리사주 무상출연 억제 요인
	· 우리사주제 도입 후 생산성 제고 여부
	· 우리사주제 도입 후 노사관계 개선 여부
	·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근로자 노력
	· 우리사주제 폐지년도
	· 우리사주제 폐지(미활동) 사유

나. 근로자

구분	항목
근로 회사 현황	· 업종
	· 회사 주식의 상장 여부
	· 기업 규모
우리사주제도 관련 인식	· 우리사주조합 설립 인지 여부
	· 우리사주조합 설립 목적 부합도
	· 우리사주조합 설립 목적 달성 효과

구분	항목
	· 우리사주 취득 경험
	· 우리사주 취득 방법
	· 우리사주 취득 목적
	· 우리사주 취득 후 보유기간
	· 우리사주 장기간 미보유 사유
	· 우리사주 총 투자금액
	· 우리사주를 통한 수익 여부
	· 우리사주의 재산형성 도움 정도
과세특례 관련 의견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인지 여부
	· 과세특례제도를 통한 세제혜택 경험
	· 과세특례제도의 우리사주제 도입 목적 달성도
	· 과세특례제도의 우리사주제 도입 목적 미달성 이유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개선점

4. 응답자 특성

가. 경영진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구성비
전체	125	100.0
업종별	1차산업	0.8
	제조업	68.8
	서비스업	30.4
상장유형별	상장	52.8
	비상장	47.2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57.6
	중견기업	30.4
	대기업	12.0
우리사주조합 유무별	설립	57.6
	폐지(미활동)	42.4
노동조합 유무별	있음	18.4
	없음	39.2

주: 1. 1차산업: 농·어업, 축산업, 광업

2.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나. 근로자

(단위: 건, %)

구분		사례수	구성비
전체		234	100.0
업종별	1차산업	3	1.3
	제조업	145	62.0
	서비스업	86	36.8
상장유형별	상장	124	53.0
	비상장	110	47.0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130	55.6
	중견기업	63	26.9
	대기업	41	17.5
성별	남성	172	73.5
	여성	62	26.5
연령별	20대	24	10.3
	30대	132	56.4
	40대	65	27.8
	50대 이상	13	5.6
직위별	직원	34	14.5
	대리	70	29.9
	과장	68	29.1
	차장 이상	62	26.5
연소득별	연 2천만원 미만	2	0.9
	연 2천~4천만원 미만	88	37.6
	연 4천~8천만원 미만	134	57.3
	연 8천~1억원 미만	9	3.8
	연 1억~2억원 미만	1	0.4
근로소득외 재산형성수단별	은행 적금 등 저축	151	64.5
	일반주식/채권 등 직접투자	36	15.4
	펀드 등 간접투자	18	7.7
	부동산 투자 등 기타	29	12.4

주: 1. 1차산업: 농·어업, 축산업, 광업

2.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본 설문에서 개인 또는 회사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경영자용)

안녕하십니까. 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월드리서치입니다.

저희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한 기업의 경영진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제도는 1968년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사주 제도는 근로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출연·출자부터 우리사주의 배정 및 인출, 배당 및 양도 등 각 단계에 걸쳐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귀하의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6일

연구기관



조사수행기관



문의처

(주)월드리서치

담당연구원 강상석 차장 (02-6188-6015)

조사감독원 김나연 과장 (02-6188-6054)

I. 회사 현황

1. 회사 설립년도	_____년	2. 2015년 종업원 수	_____명
3. 2010년 대비 2015년 종업원수 증감	① 증가 (_____명) ② 감소 (_____명)		※ 2011년 이후 설립 회사는 설립년도 기준 응답
4. 업종	① 농어업·축산업·광업 ② 제조업 ③ 전기·가스·수도·건설 ④ 도소매·음식·숙박 ⑤ 운수·통신 ⑥ 금융·보험 ⑦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⑧ 보건·오락·문화 ⑨ 기타 서비스		
5. 자본금 규모	_____억원	6. 연간 매출액 규모	_____억원
7. 주식의 상장·등록 유형	① 상장 기업(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② 비상장 기업		
8. 법정 기업규모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상호출자제한 대규모 기업		
9. 우리사주조합 결성 여부	① 설립 운영 중 ② 설립 후 폐지 또는 활동 없음 (☞문26으로 이동)		

II. 노사관계

10. 노동조합 여부	① 있다 (☞문10-1로 이동)		② 없다 (☞문11로 이동)			
10-1. 결성년도	_____년	10-2. 노조원 수	_____명			
10-3. 상급단체	① 한국노총 ② 민주노총 ③ 미가맹					
11. 노사분규 발생 (2010년 이후)	① 있다 (☞문11-1로 이동)		② 없다 (☞문15로 이동)			
※노사분규가 발생했다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1. 발생건수	_____회	_____회	_____회	_____회	_____회	_____회
11-2. 근로손실 일수	_____일	_____일	_____일	_____일	_____일	_____일
11-3. 참여근로자 수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해당년도에 발생하지 않았다면 체크	⑨ 없음	⑨ 없음	⑨ 없음	⑨ 없음	⑨ 없음	⑨ 없음
12. 2010년 이후 노사분규의 주요 원인 (쟁점)	① 임금관련 ② 휴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 ③ 직원 징계·인사·평가 관련 ④ 정규직전환 등 고용안정 ⑤ 기타(기재 : _____)					
13. 노사분규 해결 방법	① 대화와 협조를 통한 해결 ② 법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해결 ③ 기타(기재 : _____)					
14.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역할 (노력)	14-1. 노동조합	① 적극적 ② 보통 ③ 소극적				
	14-2. 근로자	① 적극적 ② 보통 ③ 소극적				
	14-3. 경영자	① 적극적 ② 보통 ③ 소극적				

III.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경우(문9에서 ①번 응답자)

※ 만약, 우리사주조합이 현재는 폐지되었거나, 활동이 없다면 '☒ IV(문26)'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15. 우리사주제 도입년도 (우리사주조합 설립년도)	_____ 년		
16. 우리사주제 도입목적 (3개까지 중복선택 가능)	① 기업공개(IPO) 또는 유상증자시 우선배정 ② 회사구조조정, 분사, 민영화, 적대적M&A방어 관련 고용안정 ③ 기업승계전략 ④ 회사 내부 운영자금 조달 ⑤ 회사 또는 대주주 무상출연, 대응출연 등을 통한 근로복지 ⑥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⑦ 근로자와의 노사관계 개선 ⑧ 기타(_____)		
17. 우리사주조합원 수 (2015년 기준)	_____ 명	18. 실제 주식보유 조합원 수	_____ 명
19. 조합이 보유한 주식 수	_____ 주	20. 조합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총 발행주식의 _____ %
21. 조합이 보유한 주식 중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의 비중	약 _____ % (* 문20의 '조합 보유지분율'보다 클 수 없습니다)		
22. 향후 무상으로 우리사주를 제공할 계획	① 있음 ② 없음 ③ 잘 모름		
23. 기업의 우리사주 무상출연을 억제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	① 기업의 자금부족 ② 근로자의 단기보유 행태 ③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담 ④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 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용부담 ⑥ 회사지원에 대한 세제혜택 미비 ⑦ 기타(기재 : _____)		
24.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 제고 여부	① 생산성 하락 ② 변화 없음 ③ 생산성 증가		
25. 우리사주제도 도입 이후 노사관계 개선 여부	① 노사관계 악화 ② 변화 없음 ③ 노사관계 개선		

IV.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폐지 또는 활동 없는 경우(문9에서 ②번 응답자)

26. 우리사주조합 설립년도	_____ 년	27. 폐지년도	_____ 년
28. 최초 도입목적 (3개까지 중복선택 가능)	① 기업공개(IPO)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 ② 회사구조조정, 분사, 민영화, 적대적M&A방어 관련 고용안정 ③ 기업승계전략 ④ 회사 내부 운영자금 조달 ⑤ 회사 또는 대주주 무상출연, 대응출연 등을 통한 근로복지 ⑥ 근로자의 주인의식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⑦ 근로자와의 노사관계 개선 ⑧ 기타(기재 : _____)		
29. 폐지·미활동 사유 (2개까지 중복선택 가능)	① 최초 도입 목적 달성 ② 최초 도입 목적과 달리 부정적 영향이 발생 ③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근로자의 무관심 ④ 기타 (기재 : _____)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본 설문에서 개인 또는 회사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근로자용)

안녕하십니까. 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월드리서치입니다.

저희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한 기업의 경영진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 제도는 1968년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이후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사주 제도는 근로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도록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출연·출자부터 우리사주의 배정 및 인출, 배당 및 양도 등 각 단계에 걸쳐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귀하의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6일

연구기관



조사수행기관



문의처

(주)월드리서치

담당연구원 강상석 차장 (02-6188-6015)

조사감독원 김나연 과장 (02-6188-6054)

3. 귀하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개인부담으로 취득
- ② 회사부담으로 취득
- ③ 개인과 회사부담 둘 다 해당(근로자, 회사의 공동출연 방식 포함)
- ④ 취득 경험 없음(☞문4로 이동)

3.1. 우리사주를 취득하신 방법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우선배정 ② 퇴직자 주식인수 ③ 회사의 무상출연
- ④ 시장매입 ⑤ 대주주로부터의 매입 ⑥ 회사로부터의 매입

<용어설명>

- ① **우선배정**: 유상증자시 일정 비율의 주식을 근로자에게 우선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
- ② **퇴직자 주식인수**: 퇴직하는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던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에 여전히 근무하는 근로자가 인수하는 형태
- ③ **회사의 무상출연**: 회사가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근로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 ④ **시장매입**: 근로자가 주식 거래시장에서 유상으로 시장가격에 매입하는 경우
- ⑤ **대주주로부터의 매입**: 근로자가 대주주보유 지분 중 일부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주당 가격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 ⑥ **회사로부터의 매입**: 근로자가 회사보유 지분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주당 가격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3.2. 우리사주를 취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순위응답)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재산형성 ② 경영참여 ③ 회사의 압력
- ④ 일자리 보전 ⑤ 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기업인수 ⑥ 절세(세제혜택)
- ⑦ 기타 (기재: _____)

3.3. (문3에서 ‘①’ 응답자만) 우리사주 취득 후 평균적인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년 미만 ② 1-2년 미만 ③ 2-4년 미만
- ④ 4-6년 미만 ⑤ 6년 이상

3.4. (문3에서 ‘②’ 응답자만) 우리사주 취득 후 평균적인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년 미만 ② 1-2년 미만 ③ 2-4년 미만
- ④ 4-6년 미만 ⑤ 6년 이상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중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출연시 소득공제(과세이연)	①	②	③	④	⑤
2) 인출시 비과세	①	②	③	④	⑤
3) 배당소득 비과세	①	②	③	④	⑤
4) 퇴직으로 양도시 비과세	①	②	③	④	⑤

4.2. 귀하는 이러한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과세특례제도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있다	없다
1) 출연시 소득공제(과세이연)	①	②
2) 인출시 비과세	①	②
3) 배당소득 비과세	①	②
4) 퇴직으로 양도시 비과세	①	②

4.3. 귀하는 이러한 과세특례제도의 세금 감면효과가 우리사주조합제도의 도입 목적 달성에 얼마나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제혜택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	중간	기여하는 편이다	매우 크게 기여한다
1) 출연시 소득공제(과세이연)	①	②	③	④	⑤
2) 인출시 비과세	①	②	③	④	⑤
3) 배당소득 비과세	①	②	③	④	⑤
4) 퇴직으로 양도시 비과세	①	②	③	④	⑤

4.4. (문4.3에서 하나라도 ‘①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또는 ‘② 기여하지 못하는 편이다’에 응답하신 경우) 과세특례제도가 우리사주조합 도입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작용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서
- ②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 ③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우리사주 투자수익률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해서 (세금감면 혜택이 유의미하지 않아서)
- ④ 기타 (기재: _____)

4-5.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연·출자 단계의 지원 강화
- ② 보유단계의 배당소득 비과세
- ③ 인출시 비과세
- ④ 퇴직 양도시 비과세
- ⑤ 비상장 기업의 우리사주 거래 활성화
- ⑥ 기타(기재:_____)

4-6. 그렇다면,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세특례제도 이외에 어떠한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회사 또는 대주주의 무상출연 확대
- ② 회사 또는 대주주의 대응출연 확대
- ③ 경영참여기회 확대
- ④ 노사협력 문화 개선
- ⑤ 기타 (기재:_____)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DQ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세 이상

DQ3. 귀하의 직무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생산직
- ② 사무직
- ③ 영업직
- ④ 연구직
- ⑤ 기타

DQ4. 귀하의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직원
- ② 대리
- ③ 과장
- ④ 부장
- ⑤ 임원

DQ5. 귀하의 소득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연 2천만원 미만
- ② 연 2천만원~4천만원 미만
- ③ 연 4천만원~8천만원 미만
- ④ 연 8천만원~1억원 미만
- ⑤ 연 1억원~2억원 미만
- ⑥ 연 2억원 이상

DQ6. 근로소득 이외에 귀하의 주된 재산형성 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은행 적금 등 저축
- ② 일반 주식·채권 등 직접투자
- ③ 펀드 등 간접투자
- ④ 부동산 투자
- ⑤ 기타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